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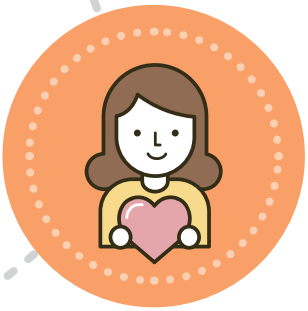
www.mohw.go.kr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차례

Contents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 3
   나. 기본원칙 ····· 4
   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도 ····· 5
2. 정신건강사업 연혁 ····· 6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 11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 13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 13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13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 15
   가. 사업 목적 ····· 15
   나. 법적근거 ····· 15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 15
   라. 직무범위 ····· 15
   마. 사업계획 ····· 16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 16
6.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17
   가. 사업 목적 ····· 17
   나. 추진체계 ····· 17
   다. 법적근거 ····· 18
   라. 직무범위 ····· 19
   마. 주요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 19
   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현황 ····· 20
   사. 온라인 플렛폼 ····· 20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2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 23
나. 행정사항 ····· 24
다. 주요사업 ····· 25
라. 업무실적 보고 ····· 25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7
[미션, 가치, 비전]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 28
1) 사업목적 ····· 28
2) 법적 근거 ····· 28
3) 설 치 ····· 28
4) 운영체계 ····· 29
5) 인력관리 ····· 35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 45
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 5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 54
나. 사업내용 ····· 54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 54
2)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 55
3) 교육사업 ····· 55
4) 네트워크 구축사업 ····· 56
5) 인식개선사업 ····· 56
6) 지역특성화사업 ····· 57

차례

7)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 57
다. 업무실적 보고 ····· 6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 65
1) 중증정신질환관리 ····· 65
2) 자살예방 ····· 72
3) 정신건강증진 ····· 74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75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 86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 86
나. 업무실적 보고 ····· 91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 91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 12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 147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 147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 149
나. 업무실적 보고 ····· 151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169

4. 코로나19 심리지원 ····· 187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 205
가. 사업목적 ····· 205
나. 법적근거 ····· 205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 205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 212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213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213
2) 인력관리 ····· 220
바. 회원관리 ····· 226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 226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229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 230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 230
사. 행정사항 ····· 231
1) 회계 및 물품관리 ····· 231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231
3) 후원금관리 ····· 233
4) 문서관리 ····· 233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233
6) 지도감독 ····· 234
7) 보고 ····· 234
8) 미인가시설 관리 ····· 234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 235
아.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 등 ····· 242
자.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243
1) 사업목적 ····· 243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 247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255

가. 사업 목적 ····· 255
나. 근거 법령 ····· 255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 255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 258
1) 운영목표 ····· 258
2) 입·퇴소 관리 ····· 258
3)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260

Contents

차례

4) 입소자 건강관리 ····· 261
5) 요양보호 ····· 262
6)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훈련 ····· 262
7) 시설 안전관리 ····· 262
8) 종사자 관리 ····· 264
9) 회계 및 물품관리 ····· 264
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 264
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 ····· 265
12) 시설의 개방 ····· 266
마. 행정사항 ····· 266
1) 지도·감독 ····· 266
2) 보고 ····· 267
3) 기타 ····· 267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 276
1) 지원 기준 ····· 276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286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 290

가. 사업 목적 ····· 290
나. 법적 근거 ····· 290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 290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 291
1) 목표 ····· 291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 ····· 291
3) 입·퇴원 관리 ····· 292
4) 기록의 보존 ····· 292
5) 환자권익 보호 ····· 294
6) 작업요법 실시 ····· 295
7) 시설 안전관리 ····· 296
8) 종사자 관리 ····· 296
마. 입·퇴원절차 ····· 297

1) 자의입원 ····· 297
2) 동의입원 ····· 298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299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306
5) 응급입원 ····· 309
6) 기타 ····· 310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 313
사. 외래치료 지원 ····· 321
아. 행정사항 ····· 322

Ⅳ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 339
가. 인권교육 ····· 339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 341
다. 인신보호법 안내 ····· 344
[격리 및 강박 지침] ····· 346
[작업요법지침] ····· 353
[인신보호제도 안내] ····· 360
2.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 364

Contents

차례

Contents

부 록 1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 367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 367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 368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 378
   라.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 ····· 381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 382
   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 394

2.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 396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404
   가. 추진 배경 ····· 404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 404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 404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405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 406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406

부 록 2

〈별표 제II-3-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 43

〈별표 제II-3-2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44

[별지 제II-3-0호] 사업실적 보고서 ····· 61

[별지 제II-3-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업무실적 ····· 92

[별지 제II-3-2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 101

[별지 제II-3-3호] 자살예방사업 인력현황 조사 ····· 109

[별지 제II-3-4호] 일반상담기록지(성인·아동 공통) ····· 110

[별지 제II-3-5호] 일반상담 접수대장 ····· 111

[별지 제II-3-6호] 지도점검결과(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공통) ····· 112
[별지 제II-3-7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 113
[별지 제II-3-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실적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상담 실적 보고 ····· 114
[별지 제II-3-9호]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 119
[별지 제II-3-10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보고 ····· 130
[별지 제II-3-11호]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 총계 ····· 138
[별지 제II-3-12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보고 ··· 139
[별지 제II-3-13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 144
[별지 제II-3-14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 145
[별지 제II-4-1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 152
[별지 제II-4-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조사표 ····· 163
〈별표 제II-4-3호〉 치료보호 프로그램신청서 양식 ····· 175
〈별표 제II-4-4호〉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양식 ····· 176
〈별표 제II-4-5호〉 치료보호 판정결과 회신서 양식 ····· 177
〈별표 제II-4-6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양식 ····· 178
〈별표 제II-4-7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 179
〈별표 제II-4-8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 180
〈별표 제II-4-9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 181
〈별표 제II-4-10호〉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 182
〈별표 제II-4-11호〉 검사의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184
〈별표 제II-4-12호〉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양식 ····· 186
[별지 제II-5-1호]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자 제출 명단 서식 ····· 197
[별지 제II-5-2호]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안내 실적(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용) ····· 198
[별지 제II-5-3호]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안내 실적(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용) ····· 199
[별지 제II-5-4호] 코로나19 대국민 심층상담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임시생활시설) ····· 201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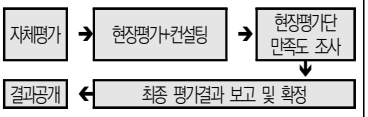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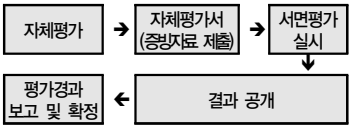
[별지 제Ⅲ-1-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 236
[별지 제Ⅲ-1-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 241
[별지 제Ⅲ-1-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248
[별지 제Ⅲ-1-4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 ····· 249
[별지 제Ⅲ-1-5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 251
[별지 제Ⅲ-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252
[별지 제Ⅲ-1-7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 253
[별지 제Ⅲ-1-8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 확충) ·· 254
[별지 제Ⅲ-2-1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270
[별지 제Ⅲ-2-2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 271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 274
[별지 제Ⅲ-2-4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 275
[별지 제Ⅲ-2-5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288
[별지 제Ⅲ-2-6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 289
[별지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 326
[별지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 ····· 328
[별지 제Ⅲ-3-3호]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329
〈별표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 331
〈별표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 333
〈별표 제Ⅲ-3-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 334
〈별표 제Ⅳ-4-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 346
[별지 제Ⅳ-4-1호] 격리·강박 기록지 ····· 352
〈별표 제Ⅳ-4-2호〉 작업요법지침 ····· 353
[별지 제Ⅳ-4-2호] 작업요법기록지 ····· 357
[별지 제Ⅳ-4-3호] 현금인출증 ····· 358
[별지 제Ⅳ-4-4호] 원내 작업요법 평가서 ····· 359
〈별표 제Ⅳ-4-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 360
[별지 제Ⅳ-4-5호] 구제청구서 ····· 363

Contents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1.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가. 비전과 정책목표	1.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가. 비전과 정책목표(내용 변경)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 반영	3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추가〉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3) 보수교육 위탁기관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토록 함 (지자체 요구)	14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내용 변경 및 추가〉	6.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목적 나. 추진체계 다. 법적 근거 라. 직무 범위 마. 연락처 바. 온라인 플랫폼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사항 및 법 개정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내용 추가	17~20
2.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추가〉	2.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명시	28
4) 운영체계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 사업위탁관련 표준계약서(협약서)양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 있음	〈삭 제〉	사업위탁관련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계약(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표준계약서(협약서) 양식 참고 문구 삭제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추가〉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 국립정신병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추가	36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마) 인건비 지급기준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마) 인건비 지급기준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기관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 공단 가능)	퇴직연금가입이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함에따라 퇴직금 적립 기관 완화	39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함 단, '변호사, 회계사 등 위 수당으로 지급이 곤란한 전문가의 자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당지급이 곤란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명시	42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 운영비 지원 다) 예산 편성·집행 기준 (2)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 운영비 지원 다) 예산 편성·집행 기준 (2)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 또는 기관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반영(지자체 요구)	46
라) 예산 사업별 편성·집행 기준 (3)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전담인력의 정신건강증진관련 워크숍, 세미나, 평가대회,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개인 역량강화 및 개별 욕구에 따른 보수교육은 지원 제외	라) 예산 사업별 편성·집행 기준 (3)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수행인력의 정신건강증진관련 워크숍, 세미나, 평가대회, 보수교육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개인 역량강화 및 개별 욕구에 따른 보수교육은 지원 제외	- 사업전담인력의 정의 불명확으로 사업수행인력으로 변경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비에서 사업수행인력의 보수교육비로 운영비지원 확대	48
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추가〉	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 서면평가 :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에 근거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시행	서면평가 방법 추가	51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4) 평가 절차 〈내용 수정〉	4) 평가 절차 〈현장평가형〉  〈서면평가형〉  	평가절차 명확화	5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7) 정신건강상담위기상담 운영 나)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1) 설치 및 운영개요 〈추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7) 정신건강상담위기상담 운영 나)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1) 설치 및 운영개요 〈라우팅서비스 이용〉	변경사항 추가	57
[별지 제II-3-2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내용 변경 및 추가〉	[별지 제II-3-2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 연고여부 • 교육현황 • 장애인등록현황 • 질환별 분포 • 이용기간 현황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 현황 • 거주현황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현행화	101~108
[별지 제II-3-9호] 작성요령 〈2020년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다. 생명사랑문화조성 3) 조사/연구 * 참조: 인증 프로그램('19.1월 기준)	[별지 제II-3-9호] 작성요령 〈2020년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다. 생명사랑문화조성 3) 조사/연구 * 참조: 인증 프로그램 87개('20.12월 기준)	자료 현행화	119~126
[별지 제II-3-10호] 작성요령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정의 가. 등퇴록 회원 현황 나) 퇴록 • 퇴록은 사망, 이사, 본인(또는 보호자) 희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별지 제II-3-10호] 작성요령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정의 가. 등퇴록 회원 현황 나) 퇴록 • 퇴록은 사망, 이사, 기능향상, 본인(또는 보호자) 희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현행화	131

<table>
<tr><th>현행(2020년도)</th><th>개정(2021년도)</th><th>개정사유</th><th>page</th></tr>
<tr><td>[별지 제Ⅰ-3-10호] 작성요령
라. 등록회원 사례관리
2) 사례관리 수행방법
마) 치료비 지원
• 임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를 ~ 〈중략〉 ~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실제 치료비를 질원한 실인원 수를 기재함</td><td>[별지 제Ⅰ-3-10호] 작성 요령
라. 등록회원 사례관리
2) 사례관리 수행방법
마) 치료비 지원
•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를~ 〈중략〉 ~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실제 치료비를 질원한 실인원 수를 기재함</td><td>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명확화</td><td>134</td></tr>
<tr><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table><tr><th>영 역</th><th>필수사업</th><th>선택사업</th></tr><tr><td>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td><td>▸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교육 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td><td>▸ 아동·청소년 예방 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 지원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 사업</td></tr></table></td><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table><tr><th>영 역</th><th>필수사업</th><th>선택사업</th></tr><tr><td>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td><td>▸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교육 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td><td>▸ 아동·청소년 예방 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 예방 지원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 사업</td></tr></table></td><td>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td><td>147</td></tr>
<tr><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가) 중독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사업
• 인접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1차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함</td><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가) 중독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사업
• 시·도(광역)의 중독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구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 (관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td><td>중독센터 전문성 강화 요구 수용 (인접지역 대상자 관리 내용 추가)</td><td>148</td></tr>
<tr><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 대상자 서비스 회의·연계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회의)에 참석요청시 협조
〈문구 변경 및 내용 추가〉</td><td>〈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 공공부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연계를 위한 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가능(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회의 등)
• 중독문제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회복자 자조모임 및 가족자조모임, 동기강화 프로그램(사업)등 운영 지원</td><td>중독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내용 추가</td><td>148</td></tr>
</table>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별지 제I-4-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조사표 〈내용 변경 및 추가〉	[별지 제I-4-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조사표 • 연고여부 • 교육현황 • 정신장애현황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 현황 • 거주 현황 • 입원자 현황	현황조사 내용 추가	163~168
3. 기타 중독사업 가. 음주폐해예방사업	〈삭제〉	건강증진과로 업무 이관	
〈추가〉	〈코로나19 심리지원〉 가.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나. 참여기관의 역할 다.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절차 라.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서비스 실적관리 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세부 내용 추가	187~196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의 사업목적 구체화(정신재활시설협회 요청)	205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3) 입소·이용대상 〈내용 추가〉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3) 입소·이용대상 ※ 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른다	아동청소년시설의 이용대상에 대해 규정 (아동보호법 18세미만, 청소년기본법 19세미만)	212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나) 입소·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1) 인건비 〈내용 추가〉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아래 표 참조)"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주 52시간제 시행* 및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개정('20.6.1.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213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적용과 관련하여 생활시설 교대인력 및 유일근로수당 확보 등**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종사자 50-299인 시설('20.1월~), 5-49인 시설('21.7월~)** **** 종사자 30-299인 시설('21.1월~), 5-29인 시설('22.1월~)**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 공통사항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인력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52시간제가 시행 관련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교대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인력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20.1.1.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217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용기준 등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함 〈내용 추가〉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정신재활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관리운영비 일부 지출항목 예시 추가	218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용기준 등 〈내용추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218
이용인원 산정기준 ·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 기록 〈내용 추가〉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의해 내소이용, 방문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SNS, 영상통화, 온라인 교육, 전화상담 등 원격통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시 원격통신도 인정하는 내용 추가	219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2) 인력관리 나)호봉관리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등(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단, 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근무경력 인정대상 확대	222, 279
바. 회원 관리 1)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무연고자가 3회를 초과하여...(중략)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받아야 함	* 무연고자가 3회(기본계약 2년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한 경우)를 초과하여...(중략)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받아야 함	보조설명 추가	226
사. 행정사항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내용 추가〉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 2 〈개정 2020.12.29.〉 개정내용 반영	235
[별지 제III-1-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 예산 및 결산 • 종사자 현황 • 장애등록현황 • 연령별 분류 • 질환별 분포		236~240
아. 사회복귀훈련 〈문구 변경〉	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등	문구 변경	242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자.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설〉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 지원불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철거비 지원 가능. 단, 지자체 등에서 철거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토지 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시 철거비 등 지원기준 추가	243
라.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 2) 입·퇴소 관리 ◉ 시설장은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2) 입·퇴소 관리 ◉ 시설장은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에 한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의무자 동의서에 대한 보조 설명 추가	258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마. 행정 사항 3) 기타 라.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내용 추가〉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 2 〈개정 2020.12.29.〉 개정내용 반영	269
[별지 제III-2-2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 예산 및 결산 • 장애등록현황 • 연령별 분류 • 질환별 분포		271~273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국고환원 ('15년~) 가) 인건비 지원 기준 (2) 종사자수 지원 기준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내용 추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교대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인력 기준 개정시 반영예정	안내문구 추가	277
(5) 수당지급 :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시간 명시 및 대상 추가(시설장)	282

현행(2020년도)	개정(2021년도)	개정사유	page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 월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 : 월 20시간까지 인정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직위내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시설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제외 〈내용 수정 및 문구 삭제〉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 월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 20시간까지 인정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자(조리원 포함)와 일반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5) 환자인권 보호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5) 환자권익 보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2019.4월): 문구변경	294
5) 환자인권 보호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법 제75조) -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안전과 편의가 보장된 보호실을 이용하되, 집중된 의료와 간호를 실시하여야 함	5) 환자권익 보호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법 제75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 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시설 안에서 하여야 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2019.4월): 문구변경	295
라)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내용 추가〉	라)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반영 (민원 요구)	302
사. 외래치료 명령 ◉ 청구대상 ◉ 명령절차 ◉ 불복 및 이의신청 〈내용 수정〉	사. 외래치료 지원 ◉ 청구대상 ◉ 지원 절차 ◉ 지원 관리 〈지원결정 중단 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2019.4월): 문구변경	321~322

<table>
<tr><th>현행(2020년도)</th><th>개정(2021년도)</th><th>개정사유</th><th>page</th></tr>
<tr><td>사. 외래치료 명령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시행일:2020.4.24.]</td><td>〈삭제〉</td><td>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2019.10월):
시행령 제31조 삭제</td><td></td></tr>
<tr><td>〈신설〉</td><td>[별지 III-3-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td><td>업무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반영
(기존 조사표 삽입)</td><td>326~
327</td></tr>
<tr><td>〈신설〉</td><td>[별지 III-3-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td><td>업무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반영
(기존 조사표 삽입)</td><td>328</td></tr>
<tr><td>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가. 인권교육
5) 교육 방법
<table><tr><th>구 분</th><th>의무교육대상</th><th>권장교육대상</th></tr><tr><td>정신의료기관</td><td>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행정·관리 전담 직원, 식당·청소, 작업 직원</td><td>용역 및
학생·실습생</td></tr><tr><td>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td><td>전체 시설직원</td><td>학생·실습생
·용역직원</td></tr></table></td><td>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가. 인권교육
5) 교육 방법
<table><tr><th>구 분</th><th>의무교육대상</th><th>권장교육대상</th></tr><tr><td>정신의료기관</td><td>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행정·관리 전담 직원, 식당·청소, 작업 직원</td><td>학생·실습생
·용역직원</td></tr><tr><td>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td><td>전체 시설직원</td><td>학생·실습생
·용역직원</td></tr></table></td><td>권장교육대상 순서 재배치</td><td>340</td></tr>
<tr><td>●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립정신건강센터, ③~⑥ 4개 국립정신병원, ⑦~⑩ 공립정신병원(서울·경기·전북·부산), ⑩~㉒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부산·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㉓~㉖ 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㉗천주의성요한병원, 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㉙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㉚ 대구정신병원</td><td>●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 4개 국립정신병원, ⑥~⑧공립정신병원(서울·전북·부산), ⑨~⑳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부산·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㉑~㉔ 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㉕천주의성요한병원, ㉖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㉗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㉘ 대구정신병원</td><td>전문교육기관의 현행화</td><td>340</td></tr>
</table>

I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2 정신건강사업 연혁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6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가 비전과 정책목표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정책목표	
정책목표	Ⅰ.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Ⅱ.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Ⅲ.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Ⅳ.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Ⅴ. 약물중독, 이용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Ⅵ.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책목표	전 략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2.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3.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정신의료 서비스 / 인프라 선진화	1.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2. 지역 기반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 3.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4.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1.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중독 및 디지털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1.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2. 마약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3.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1.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2.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3.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 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3. 공공자원 역량 강화 4. 통계 생산체계 정비 및 고도화 5. 정신건강분야 전략적 R&D 투자 강화

나 기본원칙

1)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을 강조한다.
2)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정보시스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다.
3) 국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4)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건강사업 연혁

-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 1987.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률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 1993. 정신질환자 치료유병률 제2차 조사
- 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 1995.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 1996.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안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정신재활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
  (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정신재활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정신재활시설 (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 1999.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

(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시작
정신재활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
정신질환 예방·홍보사업 실시

● 2000.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건강복지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정신재활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 2001.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정신재활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 2002.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정신재활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 200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지원
정신재활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 2004.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정신재활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적 기구화

● 200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 200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05개소(모델형 40,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강화
음주폐해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지도자 교육·훈련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200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51개소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07년 16세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포함)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상시 지도체계 마련

● 2008. 기본형과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형을 신설
(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사업 실시)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발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정신보건법 개정, '08.3.2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08.9.29., 식약청에서 업무이관)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 개편 계획수립·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금주구역 지정 등)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활성화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사업 종료

● 2009.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09.3.22.)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주류판매금지시설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56개소(표준형 153개소, 광역형 3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집단자살예방대책 수립)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부내 업무이관

● 201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0.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5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해정보 유통 및 동반자살 차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 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20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42개소)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실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11.3.30.)
검찰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20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74개소, 광역형 9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실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42개소)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12.6.)

● 201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기초 189개소, 광역 11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실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요원 배치(100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요원 배치(200명)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13.12.3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전국 25응급의료기관)
지역사회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2개소)
알코올 상담센터 50개소 운영('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개편)

● 201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195개소, 광역형 13개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15개 시·도)

국가 정신건강 증진 마스터 플랜(2016~2020) 계획수립 연구
중앙심리부검센터 운영 지원
복지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 201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09개소, 광역형 15개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15개 시·도)

- 2016.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 및 국립정신병원 내 정신건강사업과 신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발표('16.2.25.)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16.5.29.)

- 2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7.5.3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27개소 → 42개소)

- 2018. 자살예방정책과 신설('18.2.6)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시행('18.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18.5.)
  정신건강복지법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18.6.12., '18.12.13. 시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근거 신설
  ('18.12.11., '19.6.12. 시행)

- 2019.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신설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19. 5.)
  포항트라우마센터 개소('19. 11.)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보건수첩','퇴원등 사실의 통보'등 신설
  ('19.4.23., '19.10.24. 시행)

- 2020. 정신건강정책관 승격('20.9),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통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44개소, 광역형 16개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 및 응급개입팀 운영('20. 7.)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1,892개소 정신재활시설 348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시·도 단위로 보면 정신의료기관은 서울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또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기관수	주 요 기 능
계	2,607	
정신건강복지센터	260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 광역 16(국비 15, 지방비 1) 기초 244(국비 214, 지방비 25)
정신의료기관	1,892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59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재활시설	348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2020.12. 31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정신의료기관
	광역	기초	독립	부설				
계	16	244	6	44	50	59	348	1,892
서울	1	25	2		3	3	108	525
부산	1	16		1	3	3	18	163
대구	1	8		1	2	3	15	97
인천	1	11	1	2	5	2	12	79
광주	1	5		1	5	4	12	61
대전	1	5		1	3	4	29	79
울산	1	5			2	1	2	28
세종	–	1			0	1	3	10
경기	1	37	3	28	8	6	57	399
강원	1	18		5	3		4	44
충북	1	14			1	4	11	51
충남	1	16		3	2	10	22	55
전북	1	14			2	4	21	66
전남	1	22			2	4	3	50
경북	1	25		1	2	5	21	70
경남	1	20			5	4	5	91
제주	1	2		1	2	1	5	24

〈2020.12. 31 기준〉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2020. 6. 30.기준)
* 정신의료기관(2020. 7. 31.기준)
* 광역 · 기초 · 중독센터, 자살예방센터 (2020. 12. 31.기준)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현황〉

(2020. 12월 말 기준, 단위 : 개)

수련기관 수	수련과정 수			
	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87	396	36	212	148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위탁기관

공통과정 운영기관	개별과정 운영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관리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에서 확인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또한 지역단위 다양한 정신건강관련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누수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나 법적근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9조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 제4조

라 직무범위

1)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2)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보급
3) 국가 정신건강증진기관 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관련 총괄
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5)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
6)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훈련
8)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
9) 정신건강 연구·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10)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11) 국제교류 및 협력
1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
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사업계획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법령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장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예산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됨

6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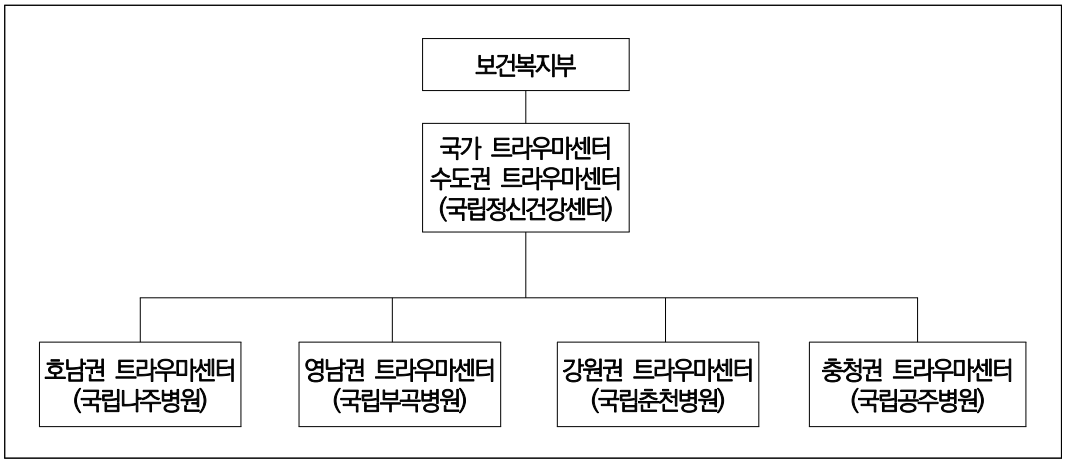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수도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충청권)는 해당 권역 내 재난 발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제공

나 추진체계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4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로 구성.

- 2018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2019년 5월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
-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 반영으로, 2021년 6월 3개 국립정신병원에 호남권(나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 충청권(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추가 개소 예정

〈 트라우마센터 심리 대응체계 〉



다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직무범위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마 주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직·간접 지원*

- 대규모 재난: 심리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등
- 중·소규모 재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상으로 심리지원 활동을 위한 교육, 자료, 물품 제공 등 기술 지원

  * 현장대응지침서, 마음건강안내서(한글, 영문,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심리안정용품 등

〈재난 규모별 범위〉
- 소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경미한 재난이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상적 사고(화재, 교통사고 등)
- 중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 대규모 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또는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체 심리회복 지원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2)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마음프로그램, 마음플러스프로그램, 허그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등

3)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버스'운행

4) 재난 정신건강 전문 인력 교육 및 강사 양성

5) 트라우마 경험자 연구 및 서비스 개선 연구

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현황

센터	전화번호
국가트라우마센터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02-2204-1442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061-330-7724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033-260-3205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041-850-5883

사 온라인 플랫폼

1)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https://nct.go.kr

2)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4 코로나19 심리지원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 사업목적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는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3)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및 단원구성

정신건복지법 시행령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름

4) 사무처·국 인력관리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인력기준과 자격요건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건에 준하되,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나) 인력관리

- 단장은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단장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 및 해당 전문분야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직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음
- 단장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임신, 육아, 출산,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수행 인력의 결원이 발생 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수탁기관의 복무규정에 준함

다) 인건비

- 인건비와 호봉산정 기준은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 보조 기준〉을 준용함

5) 사무처·국 위탁 사항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처·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예규 제28조에 따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처·국의 경우 자치법규를 따르거나,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예규를 준용할 수 있음
- 사무처·국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시 사무처·국의 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하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나 행정사항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 사업예산의 집행은 매년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된 예산집행계획에 맞춰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배정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 비목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에서 집행 가능('13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다 주요사업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국가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지원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 지역계획의 관할 시·군·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라 업무실적 보고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1.13)

나) 정례회의 운영 및 보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나) 정례회의 운영 및 보고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분기별로 시·도지사에 보고함

다) 행정사항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반기별(상반기 ~ 7.30까지, 하반기 ~ 익년 1.30까지)운영실적을 우리 부로 보고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미션, 가치, 비전

✥ 미션 (mission)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이다.

✥ 가치 (values)

리더십 (Leadership)	공공성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전문적 지도력
전문성, 역량 (Competence)	지식과 수행능력에서 역량 있는 정신건강전문가
서비스 통합 (Integration)	협력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분절 극복
지역사회 기반 (Community-based)	예방 증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지속성 (Continuity)	신뢰와 책임성에 기반한 지속적 사례 관리

✥ 비전 (vision)

1) 우리 지역 누구나 아는 오직 하나의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이 된다.
2)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여 정신건강 상태의 안녕을 돕는 기관이 된다.
3)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조기 개입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된다.
4)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기관이 된다.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 사업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3) 설치

가)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설치기준

- 〈광역〉 시·도별 1개소
- 〈기초〉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 명 당 1개소(적용예시 : 40만 명 2개소까지, 60만 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 〈중독〉 인구 20만 이상 시·구 설치

(1) 설치 장소

-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민간건물의 임대도 가능함
- 민간건물 임대 시 전·월세보증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기본 시설 (권고사항)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당직실 등의 시설요소를 포함하며,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33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화장실 공간은 공동 이용 가능)

4) 운영체계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 기본방향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공적기관으로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연계체계 구축

(2) 직영형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위탁형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음
- 수탁기관 당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2개소 이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각 센터별로 회계 및 인력관리는 별도로 하여야 함

(4) 사업추진체계

(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나) 시·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다)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을 가급적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하여야 함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됨

참고 임상자문의의 역할

-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및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정기적인 사례검토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자문
-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상담·진단적 평가 등 직접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입원 필요성,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퇴원 등 관련사항 자문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 시·도 자치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및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정신건강복지센터: 별지 제Ⅱ-3-1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별지 제Ⅱ-4-1호)을 시·군·구에 요청, 이를 취합하여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표(정신건강복지센터: 별지 제Ⅱ-3-2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별지 제Ⅱ-4-2호)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제출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사업계획을 추진 및 평가
- 관할 지역의 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대체인력 등 기간제 포함)에게도 지급함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를 권장하며 최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함
- 지도·감독
  - 시설운영의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
  -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음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출납서류 등 미작성·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관리 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 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Ⅱ-3-6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의 정신건강증진자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와 시·군·구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지원
- 시·도가 설치·운영 지원하는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 개발, 공동행사 추진 등의 사업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자에게 시·도지사 표창을 할 수 있음

(2)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을 위한 기획구조 조직운영
  기획구조는 국가 및 시·도의 정책방향성을 기초로 시·군·구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질 수 있음
  -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평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포괄적으로 위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포괄적으로 위탁
  - 지역정신건강증진 기획 및 평가구조 조직
  - 기타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운영(예 : 지역보건복지 협의체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반기별 사업추진실적(정신건강복지센터: 별지 제Ⅱ-3-1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별지 제Ⅱ-4-1호)를 이용하여 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조사표(별지 제Ⅱ-3-2호)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현황조사표(별지 제Ⅱ-4-2호)를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연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및 평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확보 지원
-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의뢰하는 환자의 신체질환에 대한 검진 및 진료 지원
- 모든 보건소는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을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수탁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운영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수행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대표 등 협력기관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가능)
-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파견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중독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하며, 비상근하는 경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수행인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함
- 반기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정신건강복지센터: 별지 제 II-3-1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별지 제Ⅱ-4-1호)을 익월 10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위탁 받은 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면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조사표(별지 제II-3-2호)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면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현황조사표(별지 제Ⅱ-4-2호)를 작성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

기 록 종 류	보관·비치기간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 재산목록관련 기록	영구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영구
• 등록자 등록카드, 등록환자 현황표, 등·퇴록대장, 병력조사/평가기록지,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 및 접수대장 등	10년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	5년
•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	3년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각종 회의 기록부	3년

- 등록자 등록카드, 등록환자 현황표, 등·퇴록 대장, 병력조사/평가 기록지, 경과 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 및 접수대장,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기록보관 할 수 있음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우선 준용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이 때,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의 장이 정함.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2019.5.1. 이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함)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허가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 변경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도록 함(사업수행 인력의 고용승계 여부 및 미승계시 그 구체적 사유 포함)
  -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 계하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함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분기의 사업실적과 차분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
- 구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시·군·구) 담당 공무원, (기초센터의 경우)보건소장,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상근 부센터장) 및 임상자문의, (상임)팀장,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장(기초의 경우, 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보건소장 및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담당공무원, 수탁기관담당자, 센터직원, 협력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함
-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 자문위원회는 관련 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의개최 시 수당 지급가능 (지급액은 해당 시·도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름)

5) 인력관리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table>
<tr><th>구 분</th><th>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th><th>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th></tr>
<tr><td>센 터 장</td><td>임면 : 수탁 기관장(시·도지사와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도지사
<table>
<tr><th>유형</th><th>자격조건</th><th>근무형태</th><th>비고</th></tr>
<tr><td>가형</td><td>정신과 전문의(정신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경력 1년 이상(공중보건의사 제외))</td><td>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능.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 단, 근무기간 준수 어려울 경우 부족시간 만큼을 수시 자문회의 또는 임상 자문가 근무</td><td>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음</td></tr>
<tr><td>나형</td><td>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10년 이상)</td><td>상근</td><td>임상자문의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td></tr>
</table></td><td>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1년 이상(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 보건소장(직영형)
임면 : 수탁 기관장(시·군·구청장과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 군·구청장
근무형태 :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td></tr>
<tr><td>부센터장</td><td colspan="2">자 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팀장 경력 4년 포함))
근무형태 : 상근(주5일)
임 면 :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음</td></tr>
<tr><td>상임팀장</td><td colspan="2">자 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5년 이상(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 센터 경력 2년 포함)
근무형태 : 상근(주5일)
임 면 : 팀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상임팀장 임면 가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비상근이면서 상임팀장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력규모에 상관없이 상임팀장을 임면할 수 있음)</td></tr>
<tr><td>팀 장</td><td colspan="2">자 격 : 정신건강전문요원(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 센터 경력 2년 이상)
근무형태 : 상근(주5일)
추가임면 : 상근 사업수행인력 매 4인마다 팀장 1인 임면 가능</td></tr>
<tr><td>팀 원 1</td><td colspan="2">자 격 : 정신건강전문요원</td></tr>
<tr><td>팀 원 2</td><td colspan="2">자 격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td></tr>
<tr><td>사업수행
지원인력</td><td colspan="2">업 무 :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 업무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포함</td></tr>
<tr><td>임 상
자 문 의</td><td colspan="2">자 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근무형태 : 수시자문</td></tr>
</table>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함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기본사업수행인력 중 비상근인력은 2인 이내만 활용할 수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사업수행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이라 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 트라우마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 경력, 정신의료기관 근무경력, 정신재활시설 근무 경력,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 경력을 포함(정신요양시설 근무 제외)
※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기준을 준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력은 법 개정 전의 정신건강증진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력으로 봄

나) 호봉관리

● 근무연수(호봉) 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 인정)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정범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정범위
10할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트라우마센터 근무경력(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근무 경력, 국립정신병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트라우마센터 근무(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근무경력, 국립정신병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8할 인정	–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노숙인·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에서 정신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관련기관에서 정신보건업무에 근무한 경력, 노숙인·부랑인시설,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관련 기관 근무경력
6할 인정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2) '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3) 상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업무', '중독관련 기관' 해당여부는 각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1) 센터장 및 상근 부센터장

(가) 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

-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재

(나) 교육 및 수퍼비전

- 센터 교육 체계 구축과 지도
- 월 1회 이상의 심층적 사례검토 및 수퍼비전 주관
- 팀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임상자문의가 대리 수행 할 수 있음)
- 팀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도

(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중심적 축으로서의 기능 수행

- 지역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 지역 중독관련기관 및 정신건강 네트워크
- 대외적 대표 업무 수행(회의 참석 등)

(2) 상임팀장

*조직의 규모에 따라 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가) 행정업무 조정

- 팀간 업무 및 역할 조정
- 팀간 사업계획 수립 조정
- 행정 및 회계 업무 조정 및 지도
- 업무 회의 총괄
- 센터 운영회의 주관

(나) 교육 및 수퍼비전

- 센터 교육 체계 수립 및 조정
- 수퍼비전 체계 운영

(다)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 수행

-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참여 등

(라)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조정

(3) 팀 장
- 팀 내의 행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 팀 내 교육 체계 구축 및 지도
- 팀 내 수퍼비전 체계 운영
- 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4) 팀 원
- 사례관리 업무 수행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지역사회 교육 등) 수행

(5) 임상자문의

(가) 사례 수퍼비전
- 주간 및 월간 사례회의 주관 업무를 센터장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수시 사례 수퍼비전 및 정기교육

(나) 전문의 상담 서비스 업무

(다)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또는 수퍼비전

* 행정업무 및 결재라인에서 제외

라) 종사자 근무기준

- 보건소 직원 혹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음 또한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직영인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위탁운영인 경우 수탁기관의 복무규정에 준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 가능)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 휴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 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인건비 지급기준

- 종사자가 보건소(시·도) 정규직인 경우 보건소(시·도) 인건비 지급규정에 준함
-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준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을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기관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 공단 가능)
  -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음.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 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함
- 퇴직금 관련 구체적 내용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인건비 지급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지급함

◉ 사업수행인력 세부 지급 기준

- 상근 인력 : 2021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기본급, 별표 II-3-1〉을 따르며,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II-3-2〉를 따름
- 비상근 인력 : 2021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기본급, 별표 II-3-1〉을 따르며, 수당〈별표 II-3-2〉은 지급하지 않음
- 산후대체인력 :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기본급, 별표 II-3-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별표 II-3-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 상근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타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143,0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 (단,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 기초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근 센터장/부센터장(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광역센터 상근 부센터장(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기본급은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기본급, 표 II-3-1 센터장(상근)〉을 따르며, 수당 지급기준 〈표 II-3-2〉를 따름
  (단, 부센터장 기본급·수당 지급 기준은 팀 규모, 예산,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상임팀장, 팀장 기준으로 조절하여 지급 가능)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비상근 센터장
  • 근무기준 :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퇴직금 없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상근 센터장
  - 근무기준 :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16시간 이상 근무(퇴직금 없음)
    * 단, 센터 여건상 주2회 이상(총 16시간 이상) 근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시 자문 회의 또는 임상 자문의 등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것

〈월지급액〉

- 월지급액 : 주 8시간 근무기준으로 A그룹은 매월 1,143,000원, B그룹은 매월 686,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A그룹의 60%)

* 고려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준용 하되,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

〈A그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건강증진기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일 8시간 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매월 2,28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매월 3,429,000원 범위 내에서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B그룹〉

→ A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1일 8시간 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 경우 매월 1,372,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058,000원 범위 내에서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의사인력산정기준〉

* 고려사항 :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차등수가제' 관련 의사인력 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비상근센터장(임상자문의 포함)으로 활동 시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력기준을 적용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산정 기준
o 주 8시간 - 1일 8시간 주 1회 - 1일 4시간 주 2회	의사인력 1인 인정
o 주 8시간 초과	의사인력 0.5인 인정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임상자문의에게는 매 사안별로 자문위원 수당체계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함 단, '변호사, 회계사 등 위 수당으로 지급이 곤란한 전문가의 자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행정보조원은 채용조건 등이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결정

〈별표 제Ⅱ-3-1호〉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단위 : 원/월)

직위 (호봉)	센터장 (상근)	사업수행인력		
		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2,614,000	2,343,700	2,138,300	2,009,900
2호봉	2,708,400	2,424,100	2,208,800	2,073,500
3호봉	2,811,400	2,517,400	2,280,900	2,145,000
4호봉	2,918,700	2,613,200	2,378,500	2,217,000
5호봉	3,047,600	2,716,300	2,481,900	2,290,300
6호봉	3,176,500	2,832,100	2,588,900	2,383,500
7호봉	3,305,400	2,948,100	2,700,700	2,478,800
8호봉	3,435,500	3,072,800	2,813,600	2,574,800
9호봉	3,566,600	3,201,700	2,929,500	2,675,600
10호봉	3,691,200	3,329,300	3,041,100	2,769,400
11호봉	3,815,700	3,448,500	3,144,200	2,863,500
12호봉	3,938,100	3,552,400	3,237,300	2,942,500
13호봉	4,043,200	3,643,600	3,318,700	3,018,400
14호봉	4,129,100	3,734,400	3,397,800	3,091,000
15호봉	4,215,700	3,825,500	3,473,500	3,160,500
16호봉	4,297,700	3,906,800	3,545,000	3,227,400
17호봉	4,374,400	3,977,200	3,613,300	3,290,300
18호봉	4,447,100	4,047,900	3,679,400	3,351,000
19호봉	4,515,000	4,110,800	3,737,900	3,407,200
20호봉	4,575,800	4,171,600	3,796,400	3,462,200
21호봉	4,635,400	4,231,300	3,850,400	3,513,200
22호봉	4,692,800	4,286,200	3,902,700	3,561,600
23호봉	4,746,200	4,338,600	3,952,300	3,608,000
24호봉	4,796,700	4,387,400	3,996,100	3,652,500
25호봉	4,845,800	4,436,200	4,039,600	3,695,200
26호봉	4,886,100	4,478,600	4,082,000	3,737,000
27호봉	4,927,200	4,518,800	4,117,800	3,771,100
28호봉	4,963,000	4,554,500	4,149,300	3,802,100
29호봉	4,990,400	4,584,800	4,178,700	3,830,800
30호봉	5,013,500	4,616,600	4,206,100	3,856,200
31호봉		4,636,500	4,233,200	3,885,700

〈별표 제II-3-2호〉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특수근무수당	팀장을 제외한 사업 수행인력[1] 팀장[2] 상임팀장[3]	50,000원 70,000원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수당)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와 센터의 예산여건 등에 따라 별도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동 지침의 직위별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4대 보험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1) 사업수행인력: 정신건강사업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말함

2) 팀장을 포함 팀원(센터장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팀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5만원/월 지급

3) 팀원이 10명 이상이 되어 임면된 상임팀장에게는 특수근무수당으로 정액 10만원/월 지급

※ 팀장의 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팀장업무 대행을 하는 사업수행인력의 경우에는 표 1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기준 호봉에 표 2의 특수근무수당 팀장(정액 7만원/월) 기준에 맞추어 지급

※ 가족수당 지급 기준

①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 할 수 있음

② 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③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 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 개소당 운영예산
  - (광역센터) 861,284천원
  - (기초센터) 196개소(인건비 포함) 184,224천원 / 18개소(사업비) 51,226천원
  - (중독센터) 45개소(인건비 포함) 163,000원
-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
  - (광역센터) 430,642천원
  - (기초센터) 196개소(인건비 포함) 92,112원 / 18개소(사업비) 25,613천원
  - (중독센터) 45개소(인건비 포함) 81,500원
-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의 기금보조 교부신청은 시·도지사가 1.20.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신청서](202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운용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관내 전체 센터의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다) 예산 편성·집행기준

(1) 예산의 편성

-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시·도가 지방비 부담액의 50% 이상 부담
- 건물의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편성

- 수탁기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비(예 : 회계관리, 운영관리 등)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총 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음(2020년 신규 위탁 계약 체결기관부터 적용)

(2)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 예산의 집행책임

-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예산집행 책임이 있음
-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도·감독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위탁 운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 또는 기관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 수탁기관 예산 배정·집행 등

-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군·구 보건소(광역센터의 경우 시·도)에 제출하며, 보건소(시·도)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매분기 시작 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 사업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함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수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추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광역센터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은 차기 년도 이월 사용 가능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회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사용 가능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정신건강증진시설 재무회계 운영 지침」혹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 회계구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 에 의함

•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전년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다음해 2월에 입금되었을 경우 전년도 회계로 구분

– 출납기한

•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결해야 함

◉ 예산의 전용

–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 항목간 합리적 전용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예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의 경우 인력채용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잔여분과 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간 전용(비목 변경 등)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필요함

– 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 내에서 인력채용이 안된 경우, 미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으며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관의 전용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여야 하며, 승인이 필요함

• 관간전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필요

• 동일관내 항간전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기관장이 전용가능

– e나라도움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시행 '18.1.2.)

◉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내에서 출력된 자료로 회계 장부를 갈음(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6조)

–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 : 5년간 보관

– 회계장부 : 5년간 보관

– 재무회계관련 공문 : 5년간 보관

라)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

(1) 건물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

- 부득이하게 일반건물을 임대할 경우 위치선정 및 임대계약은 시·도 및 시·군·구가 수행하고 전·월세보증금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함.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 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

(2)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 1차 사업년도에는 예산의 2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가능
- 2차 사업년도 이후에는 예산의 5%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 다만, 장소이전, 확장 시에는 예산의 1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가능
-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 있음
- 비품구입 시 구입비용이 단위당 30만원 미만일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를 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 이상일 때는 지출결의서, 견적 및 타 견적서(2곳 이상),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사업 운영비 지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준용하여 적용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비품목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 명시

(3)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집행
  - 비용산출 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일정소득 이하의 등록대상자에게는 주간보호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비용,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원 가능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 사업수행인력의 정신건강증진관련 워크숍, 세미나, 평가대회, 보수교육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개인 역량강화 및 개별 욕구에 따른 보수교육은 지원 제외
- 종사자의 국외연수 시 보건소장(혹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요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 연수보고서를 해당 보건소(혹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해서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4) 기타운영비

-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집행

(5) 물품 구입 시에는 품의서를 내부기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산 사용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를 하여, 관련서류를 함께 보관

(6) 행사 및 홍보비

- 정신건강증진 관련 행사
- 정신건강증진 관련 행사 홍보물(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 입금 활용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전용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10. 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사업유형에 따라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 가능(지자체가 결정)**

마) 정산보고

- 센터장은 1.15.까지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1.31.까지 [정산보고서](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운용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바) 지도감독

(1) 시설운영의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출납서류 등 미작성·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 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3) 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는 반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별지 제 Ⅱ-3-6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기타 행정사항

가)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

-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 명의의 통장을 통한 관리, 협력기관이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 보건소 직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 통한 관리하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 지원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실무 지원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거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전달된 후원금을 센터가 집행하는 경우는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사업예산 및 결산에 포함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위탁기관은 후원자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나) 이용료 및 수익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환자/가족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2호)」의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규정에 의한 보조시설 중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 기준으로 관할 시·도 및 시·군·구가 정한 비용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 가능
  - 차상위 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료 및 식대 감면가능
- 위탁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이용료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 가능
-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

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평가주기 : 2년(광역·중독 및 기초센터는 격년으로 평가 및 컨설팅 시행)

2) 평가유형

- 자체평가 :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진단하여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현장평가·컨설팅 : 현장 평가단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컨설팅
- 서면평가 :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에 근거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시행

3) 평가지표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통지표, 개별(사업)지표, 특별기획사업 등 총 16개 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는 추후 수정 예정임

평가영역		세부항목
공통 지표	1. 인적자원관리	1.1 목표하는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
		1.2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 도모
	2. 정보·문서관리	2.1 정보·문서의 체계적 관리
	3. 회계 관리	3.1 회계 관리의 투명성
	4. 계획수립 및 평가	4.1 국가 및 지역계획 수행
		4.2 사업평가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운영
	5. 시설관리	5.1 시설현황 조사
		5.2 화재 및 기타 응급상황 대비
개별 (사업) 지표	1. 진단 및 연구조사	1.1 지역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및 연구조사
	2. 교육	2.1 사업담당자의 업무 능력과 개발도모
	3. 네트워크	3.1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관리 실시
		3.2 지역사회 재해(재난) 발생시, 네트워크 구축 마련
	4. 인식개선	4.1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5. 위기대응	5.1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
특별 기획 사업	1. 기관사업과의 연관성 지역적 특성	
	2. 사업성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영역(8) 클라이언트영역(4), 사업영역(10), 지역적 특성화 영역(정성지표) 등 4개 평가영역 22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영역	세부항목	지표수
A. 행정영역	A.1 인력 관리	6개
	A.2 운영위원회	1개
	A.3 회계 관리	1개
B. 클라이언트영역	B.1 서비스 환경 및 시설	2개
	B.2 이용자의 권리	2개
C. 사업영역	C.1 응급대응체계	1개
	C.2 중증정신질환	3개
	C.3 자살예방	2개
	C.4 정신건강증진	2개
	C.5 아동청소년	2개
D. 지역적 특성화 영역	D.1 정신건강종합대책 목표와의 연관성	-
	D.2 지역적 특성의 타당성	-
	D.3 성과 및 함의의 적절성	-
		22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행정영역(6) 클라이언트영역(3), 사업영역(6), 지역적 특성화 영역(정성지표) 등 4개 평가영역 15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는 추후 수정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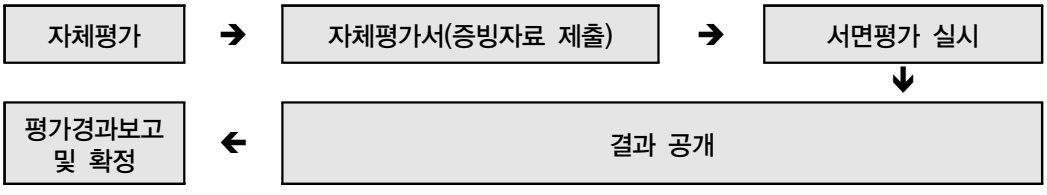
평가영역	세부항목	지표수
A. 행정영역	A.1 인력 관리	4개
	A.2 운영위원회	1개
	A.3 회계 관리	1개
B. 클라이언트영역	B.1 서비스 환경 및 시설	1개
	B.2 이용자의 권리	2개
C. 사업영역	C.1 중독관리사업	4개
	C.2 중독폐해예방 사업	1개
	C.3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사업	1개
D. 지역적 특성화 영역	D.1 정신건강종합대책 목표와의 연관성	–
	D.2 지역적 특성의 타당성	–
	D.3 성과 및 함의의 적절성	–
		15개

4) 평가절차

(현장평가형)



(서면평가형)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1) 지역사회 내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및 자살예방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체계마련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시·도 정신건강사업을 자문하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및 자살예방사업 미충족 계층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제공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도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 제공
- 자문 및 지원의 내용

  :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 정신응급대응체계 운영(예:1577-0199), 중독관련 사업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등

나 사업내용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 광역단위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 국가정책사업을 반영한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2)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 및 자살예방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업내용

- 지역사회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및 연구조사
  -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현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현황, 중독문제, 자살통계, 해당지역 재난 정신건강 관련 현황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현황 또는 국가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 및 대책 연구(예 :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살실태조사, 사망원인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현황 및 자료 분석 내용 사업계획서 적용
  - 현황 조사사업 결과의 지역사회 공유
  - 기초 단위 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및 특성화된 지역사회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예 지역특화적 주거서비스 체계 모형 개발 연구 등
  -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3) 교육사업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인력 및 자살예방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유지

나) 사업내용

- 지역사회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 지역사회종사자를 대상(기초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사업별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내용은 사업별로 계획 운영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자살(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중독, 응급 및 위기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재난 등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대상자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4)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관련기관의 자원 발굴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밀접한 대응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나) 사업내용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관리
  - 지역사회 새로운 자원 발굴 및 파악
  - 사업에 따른 연계망 구축 및 자원 조정
  -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기획 및 수행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획 및 운영
- 지역사회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구축

※ 재해(재난) 발생시 직접서비스 수행지원

① 정보수집 : 재난 발생정보 접수 및 모니터링
②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 대응체계 구축 및 심리지원팀 구성
③ 재난 현장대응 지원
④ 24시간 핫라인 상담

5) 인식개선사업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예방·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향상

나) 사업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사업 수행
  - 컨텐츠 개발, 캠페인 및 홍보 행사
  - 광고 및 홍보자료(미디어, 홍보물, 교육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6) 지역특성화사업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 및 운영

나) 사업내용

- 지역특성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조사 실시
  - 사업담당인력, 예산, 평가방법, 효과성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7)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가) 사업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통한 출동서비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조정

나)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1) 설치 및 운영개요

- 전화번호 : 전국 동일번호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살예방 전문상담전화(1393)와의 협조체계 구축 운영
  -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전문상담을 위해 1393을 개통('18.12.27)하여 운영 중,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살예방 전문상담전화(1393)에서는 자살,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이관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미설치 지역은 보건소로 연계)
  - 응급사례의 경우 실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처리
- 역할 :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위기상담 발신 시 휴대전화 이용자 기준 기지국을 경유해 가까운 기관으로 전화연결되며,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됨
- 수신지 :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또는 기초)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된 시·군·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연결되도록 함
- 비용 : 1577 전화 사용료 월 8천원(전화 이용자는 시내전화요금만 부담), 착신전환서비스는 월 1천원(시·군·구청의 내선으로 연결된 전화는 착신전환 무료), 위치기반 라우팅서비스 회선당 10,000원, 건당 25원(일괄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부담)
- 설치·변경 : 1577-0199 전화 설치 및 변경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정신건강사업과 문의

(가) 운영원칙

-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야간 전화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지정
  - 인력의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정된 상담요원 등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의 응급기관 등 관련 협력기관의 연락망을 숙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기타 상담된 내역과 실적(상담의뢰자·조치사항 등)은 관할구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요청한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상담내용에 따른 업무 분석 협조

다) 행정사항

(1) 기록관리

- 수신 전화상담기록뿐 아니라 발신하여 재상담한 경우도 기록관리 함. 단,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등록하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서비스가 시작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회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1577-0199 이외의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보건복지콜센터 전화로 상담요청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 기록유지·분석
  - 관련서식 참고(별지 제II-3-4호, 별지 제II-3-5호 서식)

(2) 실적보고

- 정기보고 :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II-3—0호]의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야간 및 휴일 전화수신기관은 시·도별로 실적 정리하여 시·도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과 같이 제출(시·군·구별 및 야간실적 분리하여 제출)
- 수시보고 :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라)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위기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과적 평가수행 및 위험성이 있을시 경찰 및 소방에 협조를 요청

(2) 현장출동이 불가한 경우, 현장 대응인력(소방관, 경찰관 등)에 대한 유선 지원 제공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복지부-경찰청-소방청-국립정신건강센터 공동발간)참조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수록)

(3) 원활한 정신질환자 이송을 위해 시·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송가능 정보 공유

* 야간·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간 정신질환자 진료의뢰·이송 체계 마련 등

마) 응급개입팀 운영

(1) 사업목적

-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등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으로는 정신질환자에 적절한 현장 응급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거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 대응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하여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출동 및 대응
  *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자살시도자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 자·타해 위험환자의 정신질환 의심 여부, 정신적인 위기 평가 등으로 경찰 및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지원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진료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연계

(3) 운영인력기준(안)

-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되 인구수, 관할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 팀 개수, 설치 지역을 조정
  - 기본적으로 1개 팀(6명)을 배치하고 2인 1조 기준 3개 조 편성
  - 야간·휴일 대응을 위해 1팀 당 6명 신규인력을 배치하여 전담팀으로 또는 기존 인력과 융합하여 응급개입팀 구성·운영

〈 응급개입팀 운영 예시 〉

- (1안) 1팀 6명을 2인 1조, 3개조를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서 응급출동을 전담하고, 평일주간에는 기존 직원이 대응
- (2안) 중원된 인력을 센터의 상시 업무를 분장하여 일반 직원으로 흡수하고 전체 직원으로 2인 1조 야간, 휴일 당직체계 운용
- (3안) 전담팀을 구성하되 인력을 고정하지 않고 인사배치를 통해 일정기간 단위로 순환하여 전담팀에 근무(1, 2안 절충)
- (기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용

※ '응급개입팀 운영 안내(안) 참고

다 업무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보고하되, 익년 1월 20일 까지 [별지 제 II-3-0] 서식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II-3-0호]

_____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 작성관련 기준**

기준 1. 국가정신건강 목표 달성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식개선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함.

기준 2. 사업실적보고는 매 회계연도 1월 말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

기준 3. 자체수행도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도하고 수행한 경우는 5, 해당기관과 타 기관 간 협력한 경우 3, 해당기관에서 연계하고 외부기관에서 수행한 경우는 1로 표기함.

1. 사업개요

<table>
<tr><td>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 rowspan="2">총 원</td><td>기본예산 원</td></tr>
<tr><td>추가예산 원</td></tr>
<tr><td rowspan="6">사업인력</td><td colspan="3">총 명</td></tr>
<tr><td>사업팀명</td><td colspan="2">인력 수</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r>
</table>

2. 사업내용 및 결과

1) 조사 연구

예) 지역사회 진단조사, 소비자만족도 조사, 자살실태조사, 초발정신질환 관련 연구 등의 연구사업과 광역단위 정신건강 인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

조사기간	조사 결과(요약)	자체수행도	관계기관 제공실적(건)
	○ ○	○ ○	○ ○

※ 조사 결과보고서 : 별도 제출

2) 프로그램 개발

예) 자살예방위기대응매뉴얼, 학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인권강사양성프로그램, 중독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개발기간	개발 주요 내용	자체수행도	보급실적(건)
	○ ○	○ ○	○ ○

※ 프로그램 근거 자료 및 매뉴얼 : 별도 제출

3) 교육

가) 정신건강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의미함.

나) 준전문가 및 일반인 교육 지원 : 조기발견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예) 게이트키퍼교육, 학부모대상 교육 운영 등

(단위 : 회/명)

월	교육대상	교육내용	자체수행도	횟수/인원
월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월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월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건강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합계				

4) 네트워크 구축

가) 중앙/권역 업무 협의 : 중앙 및 기초 레벨 간 정신보건이슈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운영, 각 기관의 사업 책임자 간 업무협의회 등을 의미함.

예) 광역센터장 – 국립병원장 간담회, 복지부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광역센터장 간담회

나)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의 발굴과 연계, 지원체계 개발, 협력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의를 의미함.

예)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경찰 – 소방 연계체계, 정신의료기관–광역센터 연계체계, 지역아동센터 – 광역센터 연계체계 등

다) 기타는 광역/권역 업무협의,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외 수행한 경우에 작성

협력대상	횟수	협력 내용
□ 중앙/권역 정신건강증진기관		○ ○
□ 지역 정신건강증진기관		
□ 유관기관		○ ○
□ 기타		○ ○
합계		

5) 인식개선사업

가) 광역단위 홍보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목적의 캠페인, 세미나,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을 의미함.

예) 자살예방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 및 홍보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활동 등

※ 실적 작성 예시: 언론홍보 : 발행건수 / 게재건수, 캠페인, 세미나 등 : 횟수 / 명수
홍 보 물 : 배포기관(대상) 수 / 배포횟수

	구 분	내 용	실 적
월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월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월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세미나 □기타		
합계			

나) 기초단위 홍보 지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홍보사업을 지원하거나 홍보매체 개발 및 보급, 협력홍보활동 등을 의미함.

	지원내용	관계기관 지원실적(건)
상반기		
하반기		
합계		

6) 기타 사업실적(지역특성화 사업 및 직접서비스 등)

※ 핫라인과 관련된 자살예방실적은 별지 제 II-3-9호로 갈음함

※ 이 외 기타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요망

사업기간	내용	관련 실적

3.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

○

○

○

4. 건의사항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

가) 시·군·구 차원

-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등) 과의 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신규 발견 체계 활성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수퍼비전 체계 운영
-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성 구현 : 광역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역 자원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요구(need)를 외면하기 보다는 필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기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서비스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도모
-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역유관기관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 임상적 고위험군에 대한 일차적 평가 체계 구비
- 임상적 고위험군의 평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체계 운영
- 미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서비스 등록 촉진을 위한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가동
- 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
- 공공 사례관리에서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된 대상자에 한하여 공동 방문상담을 실시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기반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요구도 평가 및 개별 서비스 계획을 초기평가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수립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은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입·퇴원, 증상 및 기능의 변화 시점에 수립하되 6개월에 1회 이상 수립
  - 개별서비스 계획의 수립에는 증상 및 기능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여 권장
- 사례관리 등록, 퇴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구비
  - 사례관리 매뉴얼은 자체개발 또는 광역 단위에서 개발하여 공통 적용함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의뢰된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자 미동의로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뢰 기관에 알림

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 중증정신질환자 위기개입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 구비
  - 중증정신질환 위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경찰 및 소방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사례관리 중 위기개입으로 입원 연계된 대상자의 재원관리와 퇴원계획 수립에 참여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중, 위기, 응급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평가한다.

  ※ 의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도 충족을 위하여 사례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영역별 지역사회 자원기관 현황 목록화
- 정신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연계 촉진을 위한 정기적 활동 수행
- 대상자 서비스 회의·연계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회의)에 참석요청 시 협조
-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 등록 회원의 직업재활 욕구, 신체건강관리, 독립적 생활(주거 훈련 등)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가동

-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지원

◉ 입원연장 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상기 업무는 시·도와 시·군·구의 업무 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

◉ 시·도는 [별지 제II-3-7호]의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기 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제출 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함

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센터 이용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참고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에게 맞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서비스의 홍보 및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폰), 주소, 주거지, 학력, 결혼여부
– 기타정보 : 의뢰경로, 의료보장유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0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건강정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장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 규정 또는 법령 상 의무 준수), 제3호(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및 제5호(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이익)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법인·단체·시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에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변경 및 실시하기 위함**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폰), 주소, 주거지, 학력, 종교, 결혼여부
– 기타정보 : 의뢰경로, 진단명, 의료보장유형, 장애여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병력정보 : 발달력, 병력, 자살시도력, 가족력, 장애여부**
– **치료정보 : 진단력, 치료력, 치료약물, 신체질환, 입원력, 중독문제, 중독문제 중단경험**
– **임상정보 : 정신건강상태평가(외관, 태도, 행동, 언어, 기분, 정서, 사고, 인지, 판단력, 통찰력)**
– **재활 및 기타정보 : 정신보건서비스 이용경험, 직업력, 종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0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필요시) : (서명 또는 인)

000(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참고2〉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 개요

1 지역 내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수행현황 파악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수행여부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연계

2 연계방법

1) 대상자 선정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본인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시·군·구별 이용자 모집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전확인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자 중 그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이 판단)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의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 : 전국가구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 ➢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비용 부담이 가능한 자
  *제공비용 : 월 20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 본인 2만원) / 12개월(재판정 2회, 최대 36개월)
-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2) 사례관리 수행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담당자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제공자간 사례관리 공동 수행

- 토탈케어서비스로 연계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의 직접 사례관리는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주기적 회의를 통해 대상자 상태 점검
- 토탈케어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로 등록 유지

〈참고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작성 제출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대상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
통 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 확인 가능

2) 자살예방

가) 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함

나) 사업 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자살 고위험군(자해 및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다) 추진체계

- 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 및 자살예방센터
  -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교육·홍보·자문, 지역 내 자원 파악 및 활용

라) 사업 수행 인력

-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
- 인력기준 : 상근 2인, 예산 가능범위에 따라 조정(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 추가) 가능
- 종사자 근무 기준은 2장[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과 동일

마) 사업 내용

(1) 인식개선 사업

- 선택적(selective)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학생, 직장인, 노인 등)
  -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 및 기타 보건복지부인증 프로그램 등)
- 지식수준(knowledge)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및 홍보실시 등

* 시·군·구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지역풀뿌리 조직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협조요청을 통한 의뢰체계 구축

• 주민센터 및 경찰서·소방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보건의료 기관 등을 통한 발굴 및 의뢰·연계체계 구축

* 경찰·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자살예방법 제12조의2)

•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 가구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관의 장에게 연계(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

* 자살자가 주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 유족 지원체계 마련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심리부검 의뢰 및 협조

• 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유족 모임지원, 기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직접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2018. 12. 11. 공포)되어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법률구조, 생계비 등 지원 근거 마련(제20조)

(3)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전화상담으로 연계된 자살위험군 사후관리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지자체 및 경찰서·소방서,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의뢰 및 연계체계 구축

• 방문 및 전화 사례관리, 심리상담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의료비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시·군·구청 : 각지역 시·군·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 담당과(복지행정,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등)

* 주민센터: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포함

(4) 자살수단 접근차단

-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사업

* 지역의 번개탄 판매점, 숙박업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추진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모니터링

3) 정신건강증진

가) 인식개선 사업

(1) 시·군·구 차원
- 선택적(selective)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 지식수준(knowledge)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

  * 시·군·구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서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1)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의뢰체계 구축
- 고위험군 및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사정평가 수행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고위험군) 대상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검사비) 지원
- 준 임상군 및 임상군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2)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 홍보를 위한 자료 배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체계 구축
- 우울, 불안 등의 다빈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 특히, 노인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

  * 노인돌보미, 맞춤형방문간호사를 통해 의뢰된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별검사 실시 및 필요 시 사례관리와 정신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
- 심층사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사정평가 수행
-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 임상군에 대한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3) 중 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서 발견 및 의뢰연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으면서 추가적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시·도 혹은 시·군·구 차원의 추가적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사례관리 서비스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운영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가) 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나) 사업 대상

-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다) 추진체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
  - 사업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등
  -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교육·홍보·자문, 지역 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및 활용 등(인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 지역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혹은 보건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미지원 되는 경우
  -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선택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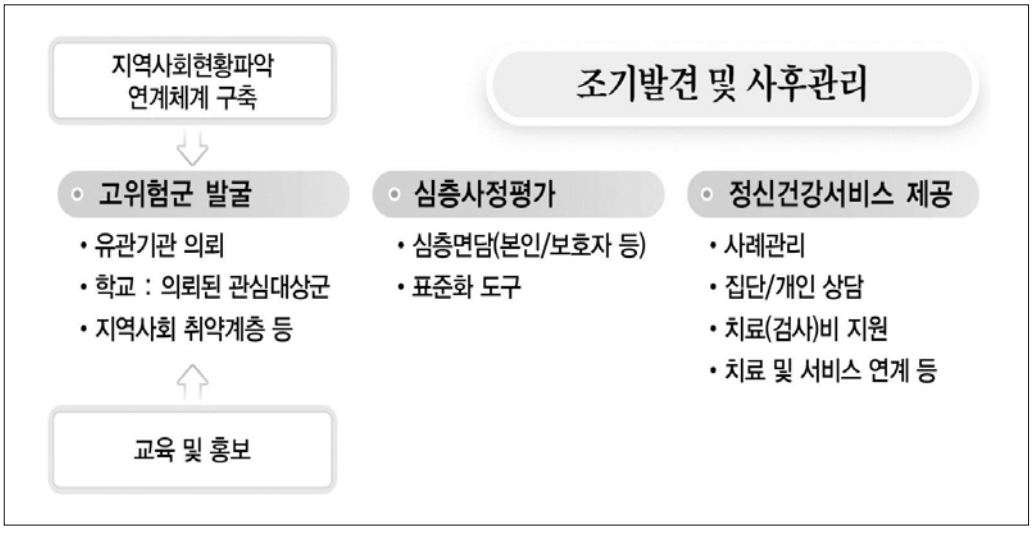
라) 사업 수행인력

-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정신건강영역의 심리검사 및 평가가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 인력기준 : 상근 1인, 예산 가능범위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 추가 가능

- 종사자 근무 기준은 2장[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과 동일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아동·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 수행

마) 사업 내용

(1) 사업 추진 체계도



(2)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 내 교육관련 부서(교육청, 학교 등)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 지역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아동·청소년 복지담당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
  - 지역내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연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 관내 및 인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중·고등·직업·특수학교 현황 파악
-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 장소 파악
- 기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 자원 현황 파악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 협조 요청에 따른 사업량이 과도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우선순위 고려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 인력 파견이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3) 교육 및 홍보

◉ 아동·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이해를 돕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선별검사 관련 안내 교육 및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 기술,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등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단위에서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임을 교사 및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동안내문을 작성·홍보·협의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장소에서 교육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
- 위험군 발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4)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기본원칙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로 지역사회 주민이 정신건강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 대상자[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 선별검사는 학교,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
  - 학교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교육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학교 선별검사 후 학부모 동의하에 센터로 통보되는 위험군 이상 학생에 대해 사후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별검사결과는 철저히 관리하고, 상담·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가)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 조기발견 체계 및 대상

- 지역사회 취약 계층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청소년쉼터·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유관기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의뢰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선별된 위험군(관심대상군)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된 아동청소년
- 지역주민 의뢰 : 지역주민 대상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한 아동청소년

(나) 심층사정평가

◉ 심층사정평가 기본 원칙

- 조기발견체계를 통해 발굴된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시행(단, 아동청소년의 경우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동의에 관련된 서류 비치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심층사정평가는 필요한 경우 대상자 가정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층사정평가를 수행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심층사정평가 내용 및 방법

- 심층사정평가 내용
  - 심층면담과 사정평가도구(부록 참조) 등을 참조하여 실시
- 심층사정평가 방법
  - 심층면담은 보호자의 동의절차를 밟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진행함. 단,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
  - 사정평가는 심층면담 결과(혹은 의뢰서에 내용을 참조하여)를 토대로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보조 도구로 사용함. (부록 2)에 제시한 도구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심층사정평가는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함

• 표준화된 사정평가도구는 현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로 나뉨.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도구(K-CBCL, K-PCI, MMPI, K-WISC, K-YSR, SCL-95-R 등)를 이용하여 심층사정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센터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사례관리(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 사례관리 대상 및 기본 원칙

- 대상 :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대상자
- 해당 시설(학교) 및 부모의 요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 서비스 결정
- 증상이나 어려움의 악화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증상 악화 시에는 적절한 치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학교) 간 연계를 통해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는 아동·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시설 교사 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
- 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전과 등록이후 6개월 마다 SDQ-Kr[별지 제 II-3-14호] 점수 변화를 측정

◉ 사례관리 수행 방법 및 내용

- 사업요원이 시설(학교)을 방문하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내소시켜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 방문 등도 실시(단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제공 여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개입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자체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라)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 기본 원칙

-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임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역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개입치료 혹은 약물치료 등) 서비스를 받게 함
-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약물 복용의 순응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 치료비 지원 방법

-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내용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지원 금액 및 지급대상 결정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접수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포함)에 대해 해당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위의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과의 연계

1 지역 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수행현황 파악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지역 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수행여부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연계

2 연계방법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본인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판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인 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비용 부담이 가능한 자

* 제공비용/지원기간 : 월 16만원 내외 / 12개월

〈서비스 비용 부담 현황〉

구분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 ~100%	평균소득 100%초과 ~120%	비고
정부지원금	90%	80%	70%	서비스 가격대비
본인부담금	10%	20%	30%	

○ 연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추천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의로 발급하고, 서비스 신청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 아동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 확인 가능

(바) 사업 예산 및 집행기준

-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비) 총예산 4,392백만원
- 개소당 운영예산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 169개소 51,970천원
-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 : 25,785천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예산 편성 항목
  -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교육·홍보, 인건비, 치료비 지원 등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집행. 단,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산정 기준, 기타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세부 항목	비 고
심층사정평가	- 검사지 구입 등	
사례관리 운영비용	-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및 홍보비용	- 외부강사료(교사교육, 부모교육, 학생교육 등)	
	- 교육자료	
	-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행사	
인건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에 준함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 심층사정평가 결과, 정신의료기관 확진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지원(세부기준 참조)	

- 치료비 지원 기준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붙임 1〉

심층사정평가 관리 대장(예시)

연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의뢰 기관	심층사정 평가 결과 (문제유형)	사후관리 현황	비고
1	000	00.00.00.	000-0000	00 학교	ADHD	- 개인상담 00회 - 00병원 연계	
2	000	00.00.00.	000-0000	00 학교	우울	- 개인상담 00회 - 집단프로그램 0회	

※ 첨부 : 학부모 동의서(각 기관 별도 양식 사용)
심층사정평가관리대장 양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www.ncmh.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붙임 2〉

진료비(검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환아성명	(남, 여)	생년월일		
진 단 명		병원명		병 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환아와의 관 계		의료보장 상태(✓)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본인은 귀 기관에 (진료비/검사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본인의 허위나 실수가 판명될 때는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신청인) (인)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작성양식 : 별첨 참조)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 **기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4가지 사본(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 급식감면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중 택1**
-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 **센터장 추천서 1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만 해당)**

〈붙임 3〉

〈보건복지부 교육부 합동 관리방안〉

◇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사업 진행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를 위해 협력 추진

○ 학교의 선별검사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Wee센터에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인 Wee센터에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실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과 요구도 증가

○ 교육부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은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안내

○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부 의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층 사정평가를 실시하고, 교과부 의뢰 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사례관리를 실시

◇ 부처 간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 학생정신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한 업무협조 협의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가) 사업 목적

재난 발생시 지역사회 내 또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고 표준화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나) 사업 내용

①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계획 및 심리지원 체계 구축, 교육 지원
② 재난 정신건강 현황 등 자료 협조
③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④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관리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가) 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증진

나) 사업 대상

구분	사업대상
정신보건기관 → 지자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생계/임대주택/집수리/의료/교육/양육 지원 등) 제공 필요한 자
지자체 →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필요한 자

다) 추진체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행복e음 연계 매뉴단을 활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의뢰신청 및 수신

라) 보건-복지 서비스 의뢰 업무 처리 안내

(1)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지자체 보건복지서비스의뢰

● 서비스의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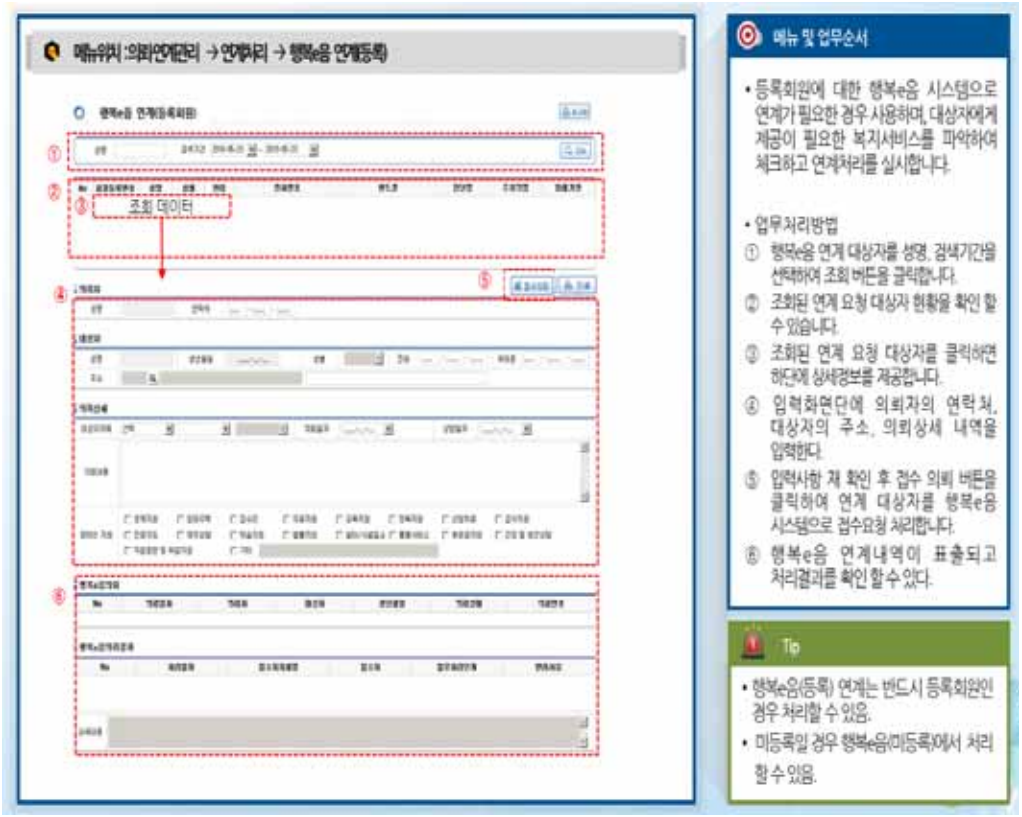


* 보장기관
: 고용복지+센터, LH공사, 지방의료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암센터, 병무청, 국가보훈처, 근로복지재단, 독거노인, 국민연금,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보건소 등

● 서비스의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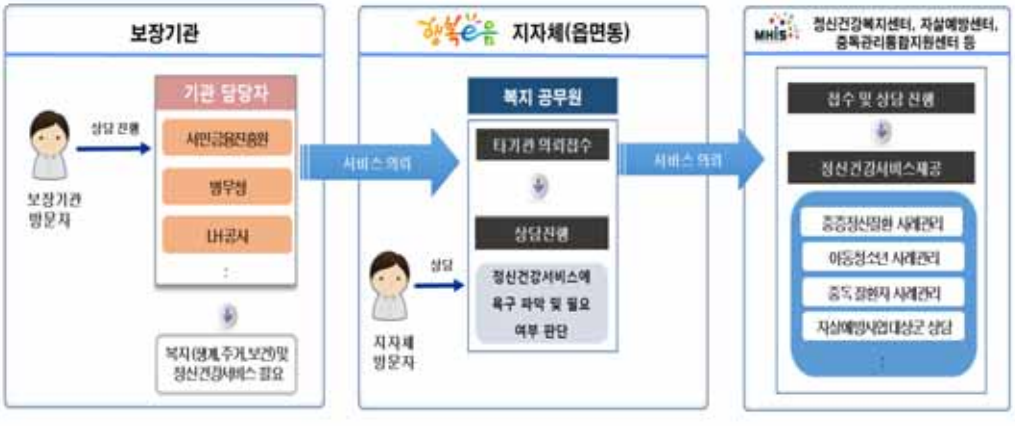
(의뢰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제공기관) 지자체(읍.면.동)		
대상자 발굴	▶ 상담진행	▶ 의뢰실시	⇨ 서비스의뢰	의뢰 접수	▶ 상담 진행	▶ · 서비스제공 · 타 보장기관 서비스 의뢰
◦ 민원인 복지욕구를 파악 ◦ 서비스의뢰 안내 및 희망의사 확인 ◦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 ◦ 원하는 지원, 서비스 의뢰내용 입력 후 지자체로 서비스 상담 의뢰 실시				◦ 행복e음 서비스의뢰 목록 확인 ◦ 유선 연락 후 의뢰 접수 또는 반려 ◦ 대상자 상담내용을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 대상자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공적급여, 긴급복지, 민간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 ◦ 타 보장기관의 서비스 필요 시 대상자 의뢰		

● 서비스의뢰 신청방법: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 지자체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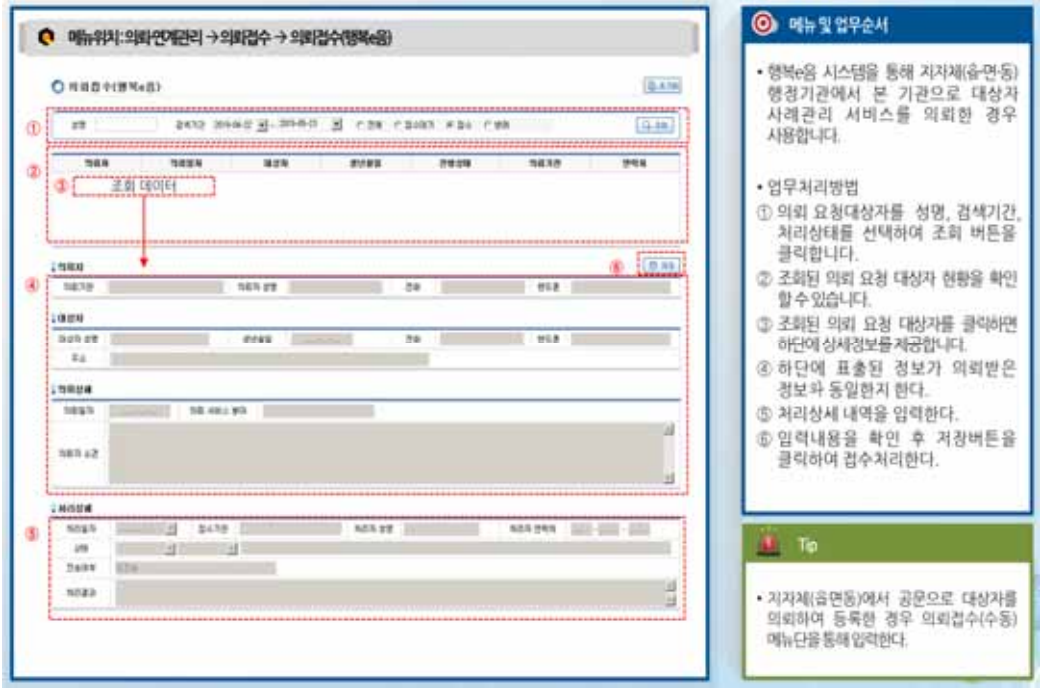
● 서비스의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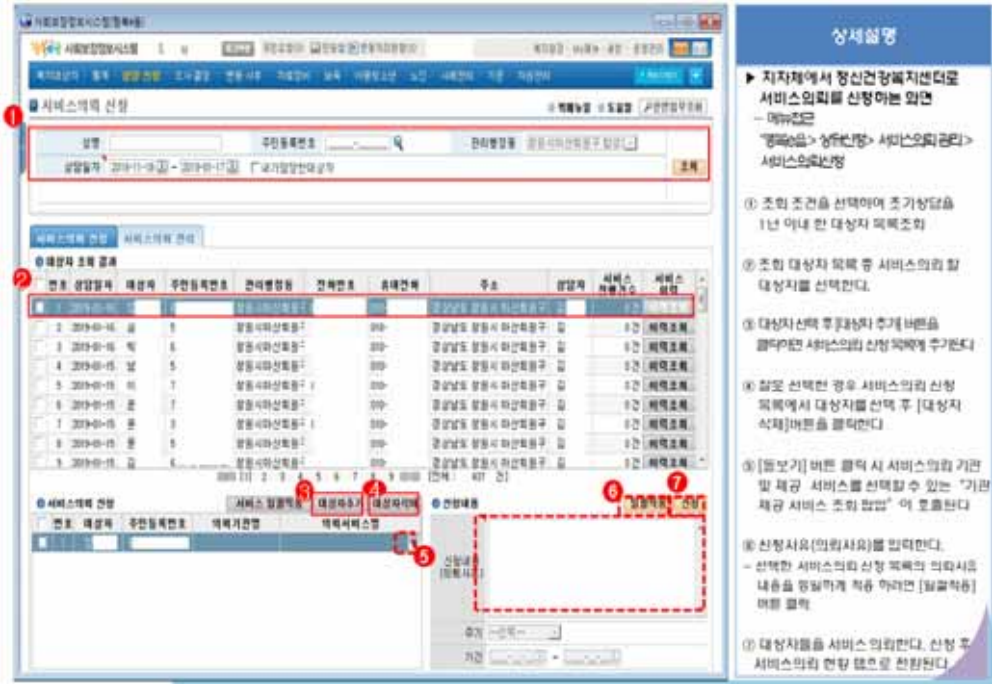
◉ 서비스의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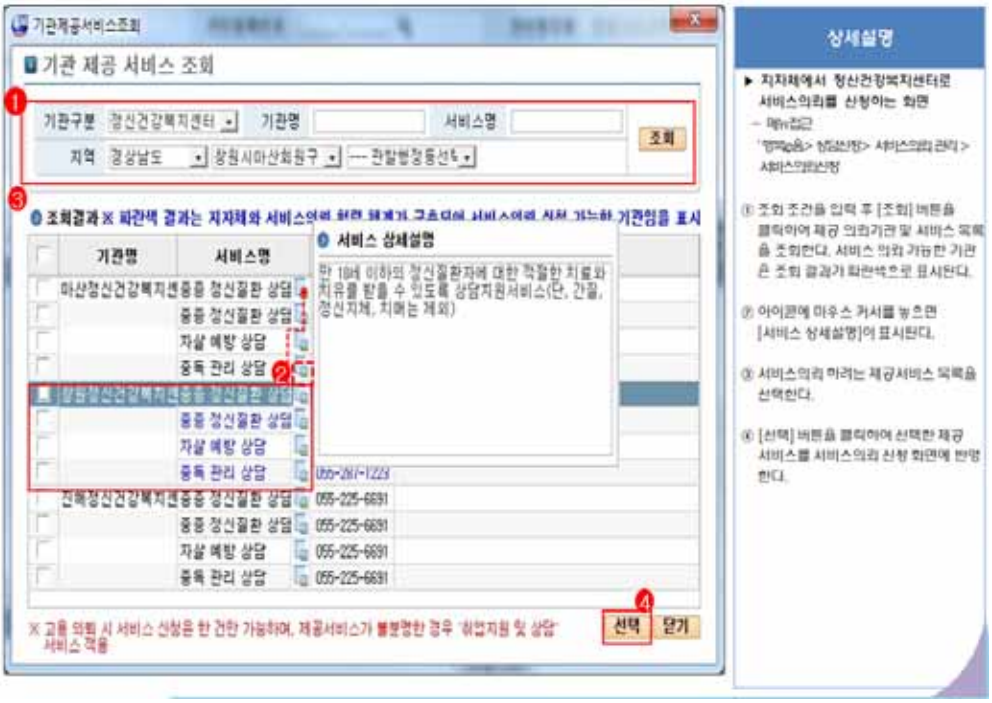
(의뢰 기관) 지자체(읍.면.동)				(제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대상자 발굴	▶ 상담진행	▶ **의뢰 실시** *보장 기관 및 서비스 지정	⇨ 서비스의뢰	의뢰접수	▶ 상담진행	▶ 서비스 제공
◦ 민원인 복지욕구를 파악 초기상담 등록 ◦ 서비스의뢰 안내 및 희망의사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 확인 ◦ 행복e음 화면에서 센터 선택 및 제공서비스 선택 후 의뢰 실시 ◦ 행복e음 화면에서 서비스의뢰 결과 확인				◦ 지자체 서비스의뢰 목록 확인 ◦ 의뢰 접수 또는 반려 ◦ 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초기상담 진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서비스제공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뢰 접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 (참고) 지자체 행복e음 → MHIS 서비스 신청 화면





나 업무실적 보고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 정기보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고하되, 매 반기 마감 후 다음달 20일 이내 보고 (별지 제Ⅱ-3-1호 서식)
  - 야간 및 휴일 전화수신기관은 시·도별로 실적 정리하여 시·도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과 같이 제출(시·군·구별 및 야간실적 분리하여 제출)
- 수시보고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별지 Ⅱ-3-1호]

2021년도 (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업무실적

시도명	등 퇴록 호원 현황											의롸연계 현황													
	등록관리									사정평가		의뢰좉수							연계처리						
	등록			퇴록			등년개발 회원수			실의원	연인원	소처	행정기관	로건소	의료기관		정신로건기관	지뜨사회/학교	기타	소처	행정기관	로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학교	기타
	소계	남자	여자	스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회원통로(별52즈1)	일반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등록회원 사려관리														등록회원 자활서비스											
	음금개입				사례관리 수행										주간재활				작업재활				기타지활			
	연인원		실의원		합계	개별상담						자원조정				등록 실인원	주간재활운영		가족교육		내부		외부		실인원	연인원
	개별	자원	개별	자원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기타	심층면담	소계	전화/사이버	방둔	내소	기타		참석 연의원	장형 날수	프로그램수	참석 연인원	진행 날수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증진																										자원관리(건)						
	교육									홍보								행사		캠페인		세미나									조사/연구(건)
	소계		관련교원		지역주민					홍보물		대중매체			견학									탐석	자문	유지	VOJ 체결	기타	
					교사		희생		기타					사이버																
	횟수	명	횟스	명	횟수	경	횟수	명	횟수	명	횟스	쿠수	전파매치	인쇄미체	발행건수	게재건수	횟수	명수	횟수	명	횟수	경	횟수	명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Ⅱ-3-1호] 작성요령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 취합 원칙

원칙 1 [별지 제Ⅱ-3-1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실적

원칙 2 등록관리 대상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기관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동의한 자

(정신지연, 간질, 치매의 경우에는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

원칙 3 만 18세 이하('02. 1.1.이후 출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Ⅱ-3-10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적보고 양식에 취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비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원칙 4 취합된 업무실적 결과가 과잉 또는 과소 추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이 함께 지도·감독(현장방문)을 할 수 있음

2. [별지 제Ⅱ-3-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 작성 기준

기준 1 [별지 제Ⅱ-3-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당해 연도를 기준함. 단, 당반기 말 회원 수는 반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일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를 말함. 예를 들어 2021년 상반기 당반기 말 회원 수는 2021. 6.30. 해당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수

기준 2 당반기는 상반기(1월~6월까지)와 하반기(7월~12월까지)를 의미함

3.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가. 등퇴록 회원현황

- 사례관리 : 등록회원(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등록부터 퇴록하기까지 제공된 모든 서비스. 사정평가를 통해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 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수립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 통칭.
  - 제공 서비스: 개별상담,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의뢰 및 연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
  - 수행방법: 등록회원 개별상담(가정방문, 전화관리/사이버상담, 내소상담, 기타상담), 가족상담, 자원조정(기관)
  - 실적: 의뢰, 연계현황, 응급개입, 사례관리 수행, 등록회원 재활서비스(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가족교육, 기타재활)에는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만 실적화

1) 등록관리

가) 등록

- 등록대상자는 만19세 이상('01.12.31.이전 출생)의 정신질환자(단, 정신지체, 간질, 치매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로, 다음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등록 관리에 대한 회원(등록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둘째, 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는 대상자 병력, 증상 등에 대한 사정(assessment) 수행. 등록 후 4주 이내 정신과의사(정신과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정신의학적 진단 및 소견, 사례관리자 심층사정평가(assessment) 토대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등록대상자가 현재 입원을 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자 가족과 정기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등록대상자의 입원 경과 파악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재원관리)를 하는 경우 등록회원으로의 상태(자격)를 유지 할 수 있음
- 등록회원 수는 당반기 말 기준 현재 등록 관리를 받고 있는 실 인원이며 남녀로 구분

나) 퇴록

- 퇴록자는 사망자, 타 지역으로 전출자, 퇴록 요구 대상자 등을 말함. 실적표에는 남녀 구분하여 표출
- 특히,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퇴록 될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당반기 말 회원

- 당반기 기준 일에 해당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의 실 인원을 의미함. 따라서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되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회원 전체 수임
-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해당센터에서 당반기 말(예: 6.30./12.31.) 퇴록 회원 수 제외

2) 사정평가

- 사정평가는 신규 등록회원과 기존회원의 병력 및 기능, 증상과 관련한 상태를 사정(assessment)하고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을 포함,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을 수립하는 것.
-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제시한 평가도구 센터에서 자율선택 및 활용 가능

☞ 표준화된 평가도구: 현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평가도구 메뉴단 활용, 정신건강 검진 도구 및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 책자 참조

* 예시 : GAF, BPRS, HONOS 등

- 실적 기록은 실인원(명)과 연인원(명) 으로 기록함
- 실적기준 : ISP 수립과 평가도구 1개 이상 진행한 경우
- 예시

– 등록 시 회원 A씨를 대상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 GAF, HONOS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1명, 연인원 1명 표출

– 3개월 후에 해당 A씨에게 GAF, HONOS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미 실적, 연인원 1명 추가

– 상하반기 실적 취합(최종): 실인원1명, 연인원 2명 표출

나. 의뢰·연계 현황

- 의뢰는 타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는 것을 의미
- 연계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타 기관 연계를 실시한 경우를 의미함

1) 의뢰접수

-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부터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의뢰서 또는 공문)으로 의뢰 받는 경우,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학교, 기타로 나누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되어 신규 등록한 경우를 구분하여 취합됨
  - 지역사회주민, 가족으로부터 권유받거나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 등록 시 해당 실적 미적용, 신규 등록자의 등록 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의뢰접수 실적과 신규 등록자 실적 비 일치.
  - 행정기관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을 의미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취합.
  - 병의원의 경우는 퇴원통보,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 퇴원통보: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 통지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
    * 정신의료기관의 외래로부터 의뢰된 경우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표준매뉴얼' 참조(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2) 연계처리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과 전출로 인해 타 기관에 사례관리를 이관할 경우
- 서비스의뢰의 예시)
  - 정신질환 이외의 신체질환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연계
  - 취미여가활동을 증진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관(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 연계
    * 신체건강관리를 위한 혈압이나 체중 체크 등 일회성 서비스 이용은 본 실적과 무관
- 실적은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기타로 분류, 건수 표출
- 행정기관은 구청, 동사무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을 의미함
-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 한의원 등을 의미함
- 정신보건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자살예방센터, 기타 관련기관 등을 의미함
-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복지관, 복지시설과 같은 유관기관을 의미하며 학교도 포함.
- 그 외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건수로 기록함.

다. 등록회원 사례관리

1) 응급개입

- 등록회원 사례관리 중에 자살 및 자해, 타해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및 학대 (가학 또는 피학), 방치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개입한 것을 말함
- 실적기록은 사례관리 수행을 진행한 상황별로 개별상담(대상자 및 보호자)과 자원조정(기관상담)으로 구분하여 기록

• 실적기준은 개별상담과 자원조정에서 응급성을 표기한 상담 건의 실인원, 연인원 표출
* 본 실적은 등록 대상자의 응급 개입 건수를 파악, 개별상담, 자원조정 건수와 중복 집계

2) 사례관리 수행방법
• 등록 회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상담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개별상담]란에 입력 함
• 등록 회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 내용은 상담 방법(전화, 방문, 내소, 기타)을 구분하여 [자원조정]란에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 개별상담, 자원조정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가) 전화(비대면 상담: 사이버 상담 포함)
• 개별상담 전화상담: 등록회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전화상담: 등록 회원의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한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 등 비대면 상태에서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나) 방문
• 개별상담 방문: 등록 회원의 가정(혹은 거주 및 생활지역) 혹은 거주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방문: 등록회원을 위해 센터 사례관리담당자가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시설, 상담센터 등을 방문

다) 내소
• 개별상담 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회원 및 가족이 내소하여 상담 진행
• 자원조정 내소: 등록 회원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실무자가 본 센터에 내소하여 상담한 경우

라) 심층면담
• 주간재활서비스이용 등록회원이 개별 서비스 계획 ISP(ISP : 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따라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한 당일에 20분 이상 심층면담(내소) 실시
• 실적기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이력 존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개별상담] 메뉴단에 내소로 입력

  * 심층면담 제외 프로그램: 자조모임, 직업재활, 행사참여, 자치운영활동

• 단,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자라 할지라도 상담일에 그룹프로그램 진행 이력이 없는 경우는 업무실적표에 '사례관리 수행방법 -내소' 의 실적으로 표출

마) 기타
• 전화, 방문, 내소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경우
• 등록회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개별상담]란에 상담방법(전화, 방문, 내소)에 따라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 등록 회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 내용은 [자원조정]란에 상담 방법(전화, 방문, 내소, 기타)에 따른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라. 등록회원 재활서비스

•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주간재활이나 직업재활 및 기타 정신건강서비스(그룹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의미

1) 주간재활

•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치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주간 재활프로그램 이용 회원은 따로 등록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 시작일, 간단한 신상기록 및 정보, 주간 재활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등이 근거자료로 구비

가) 등록 실인원

• 주간재활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인원 수. 실인원 누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상반기), 7월~12월 (하반기)의 실인원의 합계로 표출.

나) 주간재활 운영

•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의 연인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 수, 그리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진행한 날에 실시한 프로그램 수를 기록함

• 주간재활 프로그램 기록은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평가, 참여한 등록회원 대한 치료적인 개입 내용과 과정, 개별평가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약물증상관리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 신문읽기, 차 모임, 대청소 등과 같은 단순한 모임은 제외함.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 및 효과 등 운영의 근거 자료 필요.

• 참석연인원: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 일수의 합

• 진행날 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 일수

• 프로그램 수: 주간재활 운영 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전체 수

〈산출예시〉
20.1.1 ~ 20.1.5 (5일 동안) 매일 A프로그램 2회, B프로그램 1회씩 실시한 경우 → 3회×5일=15

다) 가족교육

•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의 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진행한 경우를 의미함. 참여자 입력은 대상자 중심으로 기록, 예를 들어 대상자 한명에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였을 시 참여자 입력은 대상자명으로 하고 상세내용에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

2) 직업재활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내부, 외부로 구분

가) 내부 직업재활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진행된 직업재활로 취업 전 프로그램 및 보호 작업장을 의미함

(단, 보호 작업장은 필요할 경우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센터가 보호 작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진행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을 포함

나) 외부 직업재활

• 외부에서 진행된 직업재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지속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는 등록회원이 외부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연계되어 훈련을 수행하고 유지할 경우를 말하며 직업훈련, 취업 적응 훈련 등이 해당됨. 단, 대상자가 독립 취업하여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

다) 실적 기준

• 입력기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그룹프로그램–직업재활(대분류) 입력

• 실인원: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의 실인원

• 참석연인원: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대상자의 참석일 수의 총합

3) 기 타

• 등록회원(재가회원도 포함)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이벤트 프로그램, 체육행사, 캠프, 송년회 또는 자치운영활동,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 경우를 말함

• 주간재활프로그램 실적과 중복되지 않으며 실인원과 참석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실적 표출됨

– 실인원: 기타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한 실인원

– 참석연인원: 기타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총합

마. 정신건강증진

● 예방 및 증진영역

1) 교육

•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행한 횟수와 참석자 명수에 대해 교육 대상(관련요원,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기록

가) 관련요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되는 대상을 의미함. 예를 들면, 경찰, 소방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직원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보건지소 방문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말함

나) 지역주민

•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민 대상 교육이나 훈련을 포함

2) 홍보

•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시(도)민에게 실시했던 홍보와 관련한 부분을 기록

가) 홍보물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 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포한 것

•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소책자, 보고서, 홍보물 등이 해당

• 실적 기준

횟수: 배포한 기관 수

부수: 배포 총 수량

나) 대중매체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중매체를 활용해 발행하거나 게재한 것

• 대중매체의 종류

– 전파매체: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 등이 해당

– 인쇄매체: 신문, 발간지 등이 해당

– 사이버: 인터넷사이트(기관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해당

• 실적기준

– 전파매체/인쇄매체: 건수(매체를 활용해 홍보내용을 개제한 건을 의미)

– 사이버

발행건수: 홍보내용 제작 건수

게재건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건수

다) 견학

•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본 기관에 방문하여 견학한 건수

3) 행사

• 기관에서 주최하여 진행한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함

4) 캠페인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함

5) 세미나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토론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기록함

6) 자원관리 영역

• 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실시한 건수를 기록

가) 탐색

• 탐색은 신규 자원(기관)을 탐색하는 건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미등록 대상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규자원 탐색을 포함)

나) 자문

• 지역자문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건강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실적 제외사항: 본기관이 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제외)

-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실적은 건수로 작성함

다) 유지

- 기존 네트워킹을 실시하였던 자원과의 접촉 건수를 의미함

(* 단, 간담회 등 회의 이후 참석한 기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만 기록할 것)

라) MOU 체결

-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건수

마) 기타

- 탐색 및 유지 외 다른 자원관리 건수를 의미함

7) 조사/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지역단위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욕구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같이 일정한 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그룹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 일회성 조사, 단발성 선별검사 검사결과는 실적제외
- 실적기록은 '명'으로 기재함
- 단, 지역조사 결과는 반드시 효율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조사결과를 이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함

[별지서식 제Ⅱ-3-2호]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1 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명	기관명	개소연도	인력정원(TO)	인력 중 정신질환 회복한 당사자 포함 여부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fax	홈페이지 주소	주소(도로명주소)	우편번호	면적(평)	면적(제곱미터)	설치장소구분	자살예방사업 운영 형태	운영 구분	운영주체	수탁기관명	수탁기관종류	예산집행현황
																1.보건소내 2.수탁기관내 3.기타공공기관 4.민간시설임대 5.전용공간없음	1.없음 2.자살예방팀 3.자살예방센터(부설) 4.자살예방센터(독립)	1.직영형 2.위탁형	1.국가,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인 3.학교법인 4.종교법인 5.사회복지법인 6.사단법인 7.재단법인 8.비영리정신의료기관 9.개인 10.기타		1.국공립정신병원 2.사립정신병원 3.(종합)병원정신과 4.정신과의원 5.사회복지관 6.보건대학원/예방의학교실/간호대학등	1.보건소직접집행 2.협력기관부분집행 3.협력기관전액집행 4.센터전액집행

2 예산 현황

___년	___년 집행액 기준 재원 출처별 현황								___년 집행액 기준 세목별 예산 현황										외부재원 (예산미포함)		세부 수행사업 현황 (수행하는 경우 '1' 기입, 중복선택가능)									
당초 예산액 (천원/연)	집행액 (천원/연)	합계 A+B+C+D (천원/연)	국비 A	광역시도비 B	시군구비 C	기타D (국비 매칭 지방비외 추가 재원비가 있는 경우)			합계 E+F+G (천원/연)	인건비 총액 (E) (복지수당 포함)	관리비등 기타 총액 (F)	사업비 총액(G)							2020년 집행액 외부 재원 (천원/연)	복지수당 (저우개선) 총액	중증정신질환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 중진 사업	알코올/중독 사업	재난관리 사업	자활사업	노숙자 정신건강 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기타 (사업명 기입)
						시군구비	광역시도비	소계 D				소계 (G)	중증정신질환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 중진	중독	기타											

[3] ____년 12월 31일 기준 전연령 모든 등록자 현황

| 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 | | |

4 ____년 12월 31일 기준 아동청소년 등록자 현황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록자수	성별분포	의료보장분포	학년별 분포													주요문제별 분포										
소계	소계	소계	소계	미취학	학년통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소계	발달문제	AD HD 등 행동문제	우울등 정서문제	물질남용문제	인터넷중독문제	식사문제	정신병적문제	기타
	남성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여성	소계																								

아동청소년 등록자수	질환별분포 (만 19세 이상 성인)																질환별분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이용기간 현황									
	소계	중증정신질환					중독질환						기타	자살 (정신과적 단일 원자 살론 제표 등록)	뇌전증	정신지체	신경증	우울증	소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병적도박	인터넷/게임중독	기타중독질환	기타	자살 (정신과적 단일 원자 살론 제표 등록)	뇌전증	정신지체	신경증	우울증	소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병적도박	인터넷/게임중독	기타중독질환	기타	소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병적도박	인터넷/게임중독	기타중독질환	기타
		소계	조현병 F20-209	정신병적장애(조현병 제외) F21-29	조증 삼환 F30-309	양극성 장애 F31-319	우울증상 확반 복성 우울장애 F321-323, F331-333																																

장애등록현황(중복장애포함①,②번모두입력)							수급자현황								이용기간 현황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정신장애없음	소계	지적장애(1,2,3급)	그 외 장애(지체,시각,청각 등)	해당사항없음	소계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특례수급자(의료,자활,교육 등)	시설수급	기타	해당사항없음	미파악	소계	1개월미만	1-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5 ___년 등록 전연령 모든 대상, 연간 신규 등록자 사정평가

2020년등록전연령모든대상										2020년 연간 신규 등록자 사정평가(BPRS, HoNOS)						ISP 수립 인원 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2020년신규등록자		사정평가수행현황				
운영여부	주당운영일수(주0일)	운영기간(단위: 주)	이용자실인원(2020.12.31.기준)	일평균이용자실인원	운영여부	주당운영일수(주0일)	운영기간(단위:주)	이용자실인원(2020.12.31.기준)	일평균이용자실인원	2020년연간신규등록자실인원	2020년연간신규등록자 중 사정평가 2차례 모두 시행한 실인원	평가도구명	평가결과호전or유지실인원*	평가도구명	평가결과호전or유지실인원*	
												BPRS		HoNOS		

6 ___년 12월 31일 기준 15세 이상 등록자의 취업 및 전연령 모든 등록자의 거주 현황

취업자 현황 (만 15세 이상)				주거복지서비스이용자현황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제외)									거주 현황										
소계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미파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수	소계	성인			아동청소년	소계	서비스 형태		소계	거주 형태					소계	성인			아동청소년
						중증정신질환	중독질환	기타			주택	기타		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임시거주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기타		중증정신질환	중독질환	기타	

7 ___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전연령 모든 대상자

2020년 연간 등록 + 퇴록 전연령 모든 대상자 중 2020년 사망자 현황				응급개입실인원	치료비지원실인원	입원자 현황 (2020.12.31.기준 등록자 중 한 해 동안 1회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실인원)																			
소계	사망유형		자살자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소계	중증정신질환				중독질환					우울증	신경증	정신지체	뇌전증	기타	자살 (정신과 진단없이 자살 문제로 등록한 경우)	아동청소년질환	입원경험없음	미파악
	자살	자살 외 사망 (질병, 사고 등)					조현병 F20-20.9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 제외) F21-29	조증삽화 F30-30.9	양극성 정동장애 F31-31.9	우울증삽화, 반복성 우울장애 F32.1-32.3,F33.1-33.3	알코올 사용장애	도박장애	약물사용장애	인터넷/게임중독	기타 중독질환								

8 ___년 연간 일반상담 현황 (실인원)

2020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2020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성인(만19세-64세)										2020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노인(만65세 이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의뢰 실인원	(실제) 개입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SBIRT 3회 이상 제공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 연계 실인원	치료 연계 실인원

9 ___년 연간 퇴원한 전연령 모든 대상

퇴록자 실인원	퇴록형태										퇴록 후 거처					
	소계	자살	자살 외 사망 (질병, 사고 등)	전출	서비스 종결					기타	소계	주거 시설	가정(집) 복귀		재입원	기타
					증상 호전 또는 목표 달성	계약 (기간) 만료	증상 악화	부적응	본인 또는 가족 희망				보호자 동거	독립		

시도	시(시)군구	기관명	기관구분	운영구분	직원(인명)	성별	만나이(세)	공무원여부	직급	근무형태			
												하루 근무 시간	
			1.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3.광역자살예방센터 4.기초자살예방센터 5.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6.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직영형 2.위탁형		1.남성 2.여성		1.공무원 2.비공무원	1.센터장/보건소장 2.임상자문의 3.부센터장 4.상임팀장 5.팀장 6.팀원 7.행정요원 8.기타	1.상근 2.비상근	1.주1회근무 2.주2회근무 3.주3회근무 4.주4회근무 5.주5회근무	1.시간제근로 2.전일제근로	

1.무기계약직 2.기간제근로 3.단기근로	계약개월수 (기간제및단기근로해당)

10 ___년 종사자 현황

| 소계 | 질환별 분포 (전연령) | | | | | | | | | | | | |

담당사업별	사례관리	직역	전문요원	호봉 (__년12월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정신건강증진관련기관경력 (~___.12.31)		현재기관 근속년수 (입사~ ___.12.31)	종사자 근무상태	센터장근무형태 (센터장만작성)			
1.총괄 2.중증정신질환사업 3.자살사업 4.아동청소년사업 5.정신건강증진사업 6.중독사업 7.재난관리사업 8.회계행정 9.기타	담당 사례 관리 회원 수	1.정신과전문의 2.간호 3.사회복지 4.임상심리 5.작업치료 6. 기타	1.유 2.무	실제 호봉	인정된 호봉	1.2020 정신건강 사업안내 2.2019 정신건강 사업안내 3.공무원지침 4.기타	전문요원 자격과 상관없이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개월)	전문요원 자격 취득 이후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개월)	현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1.재직_정규인력 2.재직_대체인력 3.육아휴직 4.퇴직자 5.기타	이름	1.주1회 2.주2회 3.주3회 4.주4회 5.주5회 6.직영센터	근무요일 (월화수목금)	중복센터기관명 (센터장이 2개의 센터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11 ___년 재난 정신건강 관련 현황

재난정신건강담당자 (해당 지역에 재난상황 발생 시 연락 할 수 있는 담당자 기록)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팀	기관 내 재난 정신건강 관련 보유자원									기관 내 재난 정신건강 관련 필요 자원 우선순위 (1위~4위 까지 순서대로 기입)			
								재난정신건강관련 매뉴얼	재난정신건강관련 홍보물	재난정신건강관련 설문척도	재난 또는 트라우마 프로그램 (개인 또는 집단)	재난 현장 활동 경험	재난정신건강관련 교육이수현황 (단위: 명)				인력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재난 정신건강 관련 매뉴얼, 홍보물)	재난 정신건강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재난정신건강관련척도, 개인 또는 집단 프로그램)	교육 (재난 정신건강 관련교육)
시도	(시)	시군구명	기관명	기관 구분 1.광역 2.기초	이름	전화번호	1.유 2.무	1.유 2.무	1.유 2.무	1.유 2.무	1.유 2.무	1.유 2.무	심리적 응급처치 (PFA)	문제관리 플러스 (PM+)	마음건강 회복 기술훈련 (SPR)	마음 프로그램				

[별지 제II-3-3호]

2021년 자살예방사업 인력현황 조사

시도명	구분 (광역/기초)	센터(기관명)	총 자살예방사업수행인력 *전문요원+비전문요원+의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비전문요원	의사	자살예방 전담인력 (명)	겸임인력 (명)	겸임인력 자살업무평균투입율(%)
합계			27	17	9	1	19	8	50%
△△	광역	○○시 자살예방센터	9	4	4	1	9	0	0%
△△	기초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10	8	2	0	8	2	80%
△△	기초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8	5	3	0	2	6	40%
			0						
			0						

<작성요령>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기준으로 작성

① 자살예방전담인력 : 자살예빵사업 업무만을 '100%' 수행하는 인력

② 겸임인력 : 자살예방사업 업무 외 기타 업무를 함께 수행, 평균투입율(%)은 '10' 단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작성(최대 90% ~ 최대10%)

③ 총 자살예방사업수행인력의 합계는 자살예방전담인력+겸임인력의 합계와 동일

[별지 제II-3-4호]

※ 일반상담 기록지(성인·아동 공통)

<table>
<tr><th colspan="6">일반상담 기록지</th></tr>
<tr><td rowspan="6">대상자</td><td>성명</td><td></td><td>성별/나이</td><td colspan="2"></td></tr>
<tr><td>정보제공자</td><td colspan="4">☐ 본인 ☐ 가족 ☐ 친구/이웃 ☐ 기관종사자 ☐ 기타(　　)</td></tr>
<tr><td>의료보장</td><td></td><td>장애등록</td><td colspan="2"></td></tr>
<tr><td>진단명</td><td></td><td>치료병원/주치의</td><td colspan="2"></td></tr>
<tr><td>내과 및 기타질환</td><td></td><td>의뢰경로</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td><td>전화</td><td colspan="2"></td></tr>
<tr><td>상담유형</td><td colspan="5">☐ 전화 ☐ 방문 ☐내소 ☐ 온라인 ☐ 이동상담 ☐ 기타</td></tr>
<tr><td rowspan="2">상담
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5">※ 기타상담유형(☐ 자살관련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전 후 우울증 상담 ☐재난관련)</td></tr>
<tr><td rowspan="5">자살
세부
항목</td><td>치료력</td><td>☐있음 ☐없음</td><td>음주여부</td><td colspan="2">☐있음 ☐없음</td></tr>
<tr><td>과거자살시도력</td><td>☐있음 ☐없음</td><td>시도 횟수</td><td colspan="2">(　　) 회</td></tr>
<tr><td>자살계획</td><td>☐있음 ☐없음</td><td>주변인 자살</td><td colspan="2">없음</td></tr>
<tr><td>(과거)시도방법</td><td colspan="4">☐ 음독(농약, 청산가리, 수면제) ☐질식(목맴, 가스) ☐추락(건물, 강등)
☐ 운수사고(자동차, 기차 등) ☐흉기(칼 등) ☐화상 ☐기타 ☐미상 ☐없음</td></tr>
<tr><td>시도계획방법</td><td colspan="4">☐ 음독(농약, 청산가리, 수면제) ☐질식(목맴, 가스) ☐추락(건물, 강등)
☐ 운수사고(자동차, 기차 등) ☐흉기(칼 등) ☐화상 ☐기타 ☐미상 ☐없음</td></tr>
<tr><td>주요조치</td><td colspan="5">☐ 등록관리 ☐ 지속상담 ☐ 치료연계 ☐ 기관연계(☐112,119 / ☐서비스연계)
☐ 응급출동 ☐ 정보제공 ☐ 기타조치(　　)</td></tr>
<tr><td>상담
결과</td><td colspan="5">상담자:</td></tr>
</table>

[별지 제 II-3-5호]

일 반 상 담 접 수 대 장

구분	이름	성별	연령	상담 수행 방법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주요 조치	기타상담					
							자살 관련	다문화 가정	실종 아동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산전후 우울증 상담	재난 관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일반상담접수대장 양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Ⅲ-3-6호]

20 년도 ( )시도 지도점검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통)

센터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비고
	계	인·퇴록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장부관리	기타	계	가선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지 제 II-3-7호]

20 년 ( )분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시·군·구명	심사위원회 개최건수	심사대상자 수		계속입원 판정 수		퇴원 판정 수		퇴원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타	
OO시	1	10	5	7	4	3	1	26.7

* 퇴원율 : 퇴원 판정 수 / 심사대상자 수 × 100%

[별지 II-3-8호]

2021년도 (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실적보고

시도명	피상담자 수(실인원)	피상담자 구분										정보취득 경로(연인원)							상담이력(연인원)				
		성별 구분(연인원)			연령 구분(연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만19~28세	만29~38세	만39~48세	만49~58세	만59~64세	만65세 이상	소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	소계	최초상담	동일주제 재상담	타주제 재상담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상담수행방법(연인원)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연인원)									주요 조치(연인원)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이동상담	내소	기타	소계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물질중독	행위중독	치매	미구로	기타	소계	응급콜	지속상담	치료연계	기관 연계		응급출동	정보제공	기타조치
																				112, 119	서비스 연계			
상반기																								
하반기																								
누계																								

2021년도 (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상담 실적보고

시도명	소계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전 후 우울증 상담		재난관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 II-3-8호] 작성요령

1. 일반상담 업무실적 및 기타상담 실적 작성 원칙

원칙 1 [별지 제II-3-8호]는 미등록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작성

원칙 2 미등록 대상자는 정신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기관문의 등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자

원칙 3 만 18세 이하('02. 1.1.이후 출생) 대상자에 서비스 실적은 [별지 제II-3-12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적보고 양식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과 상관없이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

2. [별지 제II-3-8호]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실적보고 작성기준

기준 1 [별지 제II-3-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당해 연도 기준

기준 2 당반기 기준: 상반기(1월~6월까지), 하반기(7월~12월까지)

기준 3 누계는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를 의미. 피상담자 인원수, 기타상담 실적 보고를 제외한 일반상담은 연인원으로 작성하고 각 소계 값은 모두 동일

기준 4 일반상담 실적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3.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정의(definition)

※ 피 상담자란 만 19세(20세) 이상의 당사자를 의미, 당사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을 구분함. 예를 들면, 여성 A씨(54세)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 B씨(29세)에 대해 상담을 받기위해 센터에 전화한 경우

예시)

- 피상담자: 아들 B씨
- 연령구분: 29세
- 상담수행방법: 전화
- 정신건강문제유형: 조현병

가. 피상담자 실인원

- 해당년도에 최초상담 대상자 수

나. 피상담자 구분

1) 성별 구분

- 피상담자의 성별을 남, 여로 구분, 소계는 구분의 합

2) 연령 구분

- 대상자에게 질의하여 만 나이로 기록, 만19~28세, 만29세~38세, 만39~48세, 만49~58세, 만59~64세,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다. 정보취득 경로

• 정보제공자(본인, 가족, 지인, 기관종사자 등)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 행정 기관, 의료 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로 나누어 기록
(예) 홍보물을 통해 A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대상자 의뢰를 위하여 A기관에 대상자가 서비스 문의를 하는 경우, 정보 취득경로를 [홍보물]로 기록

라. 상담이력

* 상담을 받은 인원의 연인원 수 기록

1) 최초상담
• 기관에 처음으로 상담을 받는 자의 수

2) 동일주제 재상담
• 기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 상담과 동일한 목적(주제)으로 재상담 받은 자의 수

3) 타주제 재상담
• 기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으로 과거 상담과 다른 목적(주제)으로 재상담 받은 자 수

4) 기타
• 위 상담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상담 유형에 기타로 체크한 경우

마. 상담수행방법

•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이동상담,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함

바.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 원칙

•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은 중복기재가 불가, 대상자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제를 한 가지 선택하여 기록
• 상담 시 정신건강문제유형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가 판단하여 선택
• 실적은 연인원으로 기록

1) 조현병
• 조현병, 망상장애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

2) 우울증
• 우울증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

3) 조울증
• 조울증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

4) 불안장애
• 불안, 공포증,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

5) 물질중독
- 알코올 중독,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의미

6) 행위중독
- 인터넷 중독, 게임, 쇼핑, 일, 성 등의 문제를 의미

7) 미구분
- 정신건강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경우를 의미

8) 기타
-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와 중독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의미함

사. 주요 조치

주요조치는 우선순위를 따라 1,2순위를 모두 기록 할 수 있음. 단, 2순위는 실적집계 되지 않음
* 1순위 주요조치에 대해 연인원으로 기록

1) 등록관리
- 상담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중증정신질환 또는 일반정신질환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동의한 경우

2) 지속상담
-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 가정방문 등의 재상담 계획이 있고 지속관리 받기를 동의한 경우

3) 치료연계
- 외래 진료 및 입원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4) 기관 연계
-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연계하는 것,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 제외
- 구분
  - 112, 119: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2, 119로 연계한 경우
  - 서비스연계: 112, 119를 제외한 기관에 연계한 경우

5) 응급출동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기관 직원이 응급출동을 한 경우

6) 정보제공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 없이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한 경우

7) 기타조치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

4. 기타상담실적 항목별 정의

※ 기타상담실적은 일반상담을 진행했던 피상담자 중에서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 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따로 구분해서 각각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 일반상담 실적과는 중복 카운트, 기타 상담실적과는 중복카운트 되지 않음

가. 자살관련상담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다. 실종아동가족
만 19세 이상('01.12.31. 이전 출생)의 실종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이 진행된 경우

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마. 산전·후 우울증 상담
출산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바. 재난관련상담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별지 제II-3-9호]

2021년도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자살관련 상담 현황(연인원)																														
시도명	고상담자 실인원	성별구분 (연인원)			연령 구분(연인원)							상담시간대(시)					상담수행방법(연인원)					정보취득경로(연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만 18세 이하	만 19~28세	만 29~38세	만 39~48세	만 49~58세	만 59~65세	소계	00~06	06~12	12~18	18~24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이동상담	너소	기타	소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피상담자 자살관련 문제 유형 (연인원)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자살충동원인 항목										주요조치 (연인원)								
	소계	경제적 문제	이성 문제	신체/정신적질환	직장문제	외로움/고독	가정불화	학교 성적/진로	친구/동료 문제	기타	소계	등록 관리	지속 상담	치료 연계	기관 연계		응급 출동	정보 제공	기타 조치
															112,119	서비스 연계			
상반기																			
하반기																			
누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구분	등록현황(실인원)										당반기 말 관리인원			의뢰경로							탈록현황											
	소계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유족						소계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학교	기타	탈록인원			탈록사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의료기관(법52조1,2항)	일반				소계	남	여	소계	사망		전출	서비스 종결	자살 위험 감소	기타
																										자살	그외				
상반기																																	
하반기																																	
누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생명사랑문화조성																													
구분	사례관리 수행방법(건)										재활서비스					예방 및 증진																													
	합계	개별상담						자원조정			그룹드로그램					교육					교육 프로그램 종류				행사 캠페인				기타			심리부검				자원관리							조사/연구(경)
																소계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	인증		자체								의뢰		사후									
		스처	정화/사이버	방문	내소	기타	심층면담	소계	정화/사이버	방로	내소	프그램수	정형횟수	실인원	현역면인원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탐색	자로	유지	연계	기타	
상반기																																										
하반기																																										
계																																										

[별지 제 II-3-9호] 작성요령

1.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작성 기준

기준 1 [별지 제Ⅱ-3-9호]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은 당해연도 실적에 한하여 작성함.

기준 2 당반기는 상반기(1월~6월까지)와 하반기(7월~12월까지)를 의미함.

기준 3 누계는 상반기보고는 6개월(1~6월), 하반기보고는 6개월(7~12월) 간 실적의 총계로 작성

2.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가. 자살관련 상담 현황

1년 동안 기관에서 수행한 일반상담의 총량.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유족으로 기관에서 미등록으로 상담 받은 대상자의 현황

1) 피상담자 실인원
- 해당년도에 최초상담 대상자 수

2) 성별구분
- 피상담자의 성별을 남, 여로 구분, 소계는 구분의 합

3) 연령구분
- 대상자에게 질의하여 만 나이로 기록, 만 18세 이하, 만19~28세, 만29~38세, 만39~48세, 만49~58세, 만59세~64세,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4) 상담시간대(시)
- 자살 상담을 진행한 시간대를 파악하여 기록

5) 상담수행방법
-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상담, 기타(팩스 또는 우편 등)로 구분하여 기록
- 일반상담 건 중 부재는 실적에 미포함

6) 정보취득경로
- 정보제공자(본인, 가족, 지인, 기관종사자 등)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로 나누어 기록
  (예) 의료기관 종사자가 홍보물을 통해 A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대상자 의뢰를 위하여 A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문의를 하는 경우, 정보 취득경로를 [홍보물]로 기록

7) 피상담자 자살관련 문제 유형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자살충동 원인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기록 시 문제종류에서 자살상담을 지정하고 소분류 값을 입력
- 자살상담을 경제적 문제, 이성문제, 신체/정신적 질환, 직장문제, 외로움/고독, 가정불화, 학교성적/진로, 친구/동료문제,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

8) 주요조치

- 주요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1,2순위를 모두 기록 할 수 있음. 단, 2순위는 실적집계 되지 않음. 1순위 주요조치에 대해 연인원으로 기록
- 등록관리: 상담 이후에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회원으로 등록(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하고 ISP 수립을 통한 개입)
- 지속상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 등의 지속적인 상담 유지 계획 및 서비스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
- 치료연계: 외래 진료 및 입원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 기관 연계: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 등을 통해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말함.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연계한 경우 제외

– 112,119: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2,119로 연계한 경우

– 서비스연계: 112,119를 제외한 그 외 기관에 연계한 경우

- 응급출동: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기관 직원이 응급출동 한 경우
- 정보제공: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및 기타 조치 없이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한 경우
- 기타조치: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

나.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1) 등록현황

항목	의 미
자살 고위험군	자살 취약계층 중에서 기관 자체의 자살위험도 평가를 거쳐(평가근거보관)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자.
등록관리	등록관리 실인원이란 다음 세부 기준을 충족
	1) 등록관리에 대한 동의
	2) 센터의 사례관리자가 대상자 병력, 증상 등을 사정하고 ISP 수립
	3) 대상자가 현재 입원을 하였더라도 대상자 가족과 정기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등록 대상자의 입원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포함.

- 등록대상자 전체를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유족으로 유형을 나누고 등록현황에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

2) 당반기 말 회원

- 당반기 기준일에 해당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의 실인원을 의미함. 따라서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되어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
-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해당센터에서 당반기 말(예: 6.30./12.31.) 퇴록 회원 수 제외

3) 의뢰접수

-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부터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또는 서면 (의뢰서 또는 공문)으로 의뢰 받는 경우,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학교, 기타로 나누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되어 신규 등록한 경우를 구분하여 취합됨.

* 지역사회주민, 가족으로부터 권유받거나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 등록 시 해당 실적 미적용, 신규 등록자의 등록 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의뢰접수 실적과 신규 등록자 실적 비 일치

- 행정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이 해당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의뢰된 건수를 포함하여 건수 기록함
- 병의원의 경우는 퇴원통보,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 퇴원통보: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1, 2항에 의거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 통지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
  - 정신의료기관의 외래로부터 의뢰된 경우

4) 퇴록현황

- 퇴록 인원은 해당 반기동안 퇴록 한 회원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기록
- 퇴록자의 퇴록 사유를 사망(자살, 그 외), 전출, 서비스거부, 자살위험감소,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

5) 사례관리 수행방법

- 등록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개별상담]란에 입력함.
- 등록 대상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자원조정]란에 입력함.
- 개별상담, 자원조정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가) 전화(비대면 상담 : 사이버 상담 포함)

- 개별상담 전화상담: 등록대상자(또는 가족)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전화상담: 등록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한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 전화 등 비대면 상태에서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나) 방문

- 개별상담 방문상담: 등록대상자의 가정(혹은 거주 및 생활지역) 혹은 거주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방문상담: 등록대상자를 위해 센터 사례관리담당자가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시설, 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다) 내소

- 개별상담 내소상담: 센터에 등록대상자 및 가족이 내소하여 상담진행
- 자원조정 내소상담: 등록대상자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실무자가 본 센터에 내소하여 상담을 한 경우

라) 기타

- 전화, 방문, 내소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경우
- 등록회원 및 가족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개별상담]란에 상담방법(전화, 방문, 내소)에 따라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 등록 회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 내용은 [자원조정]란에 상담 방법(전화, 방문, 내소, 기타)에 따른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마) 심층면담

- 그룹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록회원이 개별 서비스 계획 ISP(ISP : 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따라 그룹프로그램 참여한 당일에 20분 이상 심층면담(내소) 실시
- 실적기준: 그룹프로그램 참석이력 존재. [개별상담] 메뉴단에 내소로 입력
  * 심층면담 제외 프로그램: 유족자조모임, 행사참여
- 단, 그룹프로그램 이용자라 할지라도 상담일에 그룹프로그램 진행 이력이 없는 경우는 업무실적표 상 '사례관리 수행방법 – 내소' 의 실적으로 표출.

6) 재활서비스(그룹프로그램)

-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그룹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 그룹 프로그램 대상은 등록회원으로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임. 프로그램 수, 진행횟수를 기록하고 실인원, 참석연인원에 대한 기재

- 프로그램 수, 진행횟수: 그룹 프로그램 운영 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전체 수
- 실인원: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제 인원수
- 참석연인원: 그룹 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합

다. 생명사랑문화조성

1) 예방 및 증진

• 교육, 교육 프로그램 종류, 행사, 캠페인, 세미나 항목에 대한 설명

항목			의 미
교육/훈련	교육목적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목적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인 경우
		자살예방교육	교육 목적이 '생명의 소중함 교육' 등 일반적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인 경우
	프로그램 종류	인증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한 경우
		자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한 경우
행 사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 횟수, 참여인원수로 나누어 기록 예) 자살예방주간 학술대회 등 기타 행사
캠페인			무작위적 대상층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한 횟수와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 기록 예)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 등 캠페인 진행
세미나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토론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기록
심리부검			지역의 자살사망자, 자살유족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 의뢰하는 경우 기록

2) 자원관리 영역

• 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실시한 건수를 기록

가) 탐색

• 탐색은 신규 자원(기관)을 탐색하는 건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미등록 대상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규자원 탐색을 포함)

나) 자문

• 지역자문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건강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센터가 효율적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님.

•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자살예방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실적은 건수로 작성함.

다) 유지

• 기존 네트워킹을 실시하였던 자원과의 접촉 건수를 의미함.
(* 단, 간담회 등 회의 이후 참석한 기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만 기록할 것)

라) MOU 체결

•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자살예방사업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건수

마) 기타

• 탐색 및 유지 외 다른 자원관리 건수를 의미함

3) 조사/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지역단위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욕구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같이 일정한 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 일회성 조사, 단발성 선별검사 검사 결과는 실적제외

• 실적기록은 '명'으로 기재함

• 단, 지역조사 결과는 반드시 효율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조사결과를 이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함

* 참조 : 인증 프로그램('20.12월 기준, 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인증 게시판)
※ " * " 표시 된 프로그램은 생명지킴이(게이트 키퍼) 프로그램에 해당됨

연번	프로그램 명	기 관
1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중앙자살예방센터
2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3	TLC아카데미 '생명사랑'*	나사렛대학교
4	LifeSaver	(사)생명존중교육협의회
5	보고듣고말하기 1.6 버전*	한국자살예방협회
6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6A 버전*	한국자살예방협회
7	자살성선별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8	광주형 위기대응 프로그램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9	생명지킴이 전문강사과정*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10	노인 자살 위기관리 매뉴얼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	보고듣고말하기 직장인Ver*	한국자살예방협회
12	MI 공감프로그램 KIT 2.0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3	아이러브유	한국생명의전화
14	인지행동공감Ⅲ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5	동기증진인지행동프로그램 공감1 2.0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번	프로그램 명	기 관
16	생명보듬이(Gatekeeper) 기초교육 '무지개'*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17	자살유족 모임(자작나무)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8	교사 및 실무자를 위한 청소년 자살위기관리 매뉴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19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8AF*	한국자살예방협회, 공군본부
20	노인자살예방교육'희자씨와 친구들을 위하여'	한국자살예방협회
21	충북 SOS(Stop Of Suicide) 지킴이 프로젝트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2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수원시자살예방센터
23	생명사랑 틴틴교실 3.0	경기도자살예방센터
24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5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6	학생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M-love	경기도자살예방센터
27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8	금메달 사례관리 프로그램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
29	노인 우울 및 자살사고 경계선 프로그램 마음지팡이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30	응급의료종사자대상 자살 관련 교육*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31	토닥 토닥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32	생명사랑지킴이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3	대상자 자살을 경험한 실무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심리정서지원 권고안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4	경찰동료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A police officer gatekeeper training program)*	경찰청, 한국EAP협회
35	생명지구대*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36	경찰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생명배달'*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7	소방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생명배달'*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8	교사를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서울시자살예방센터
39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프로그램 이어줌人*	중앙자살예방센터
40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人 노인용*	중앙자살예방센터
41	요즘 어때?*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42	자살위기개입핸드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3	자살 및 정신질환 위기관리 프로토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4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중앙자살예방센터
45	생명존중매뉴얼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46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키움 Thank You 프로그램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47	생명사랑 틴틴교실 게이트키퍼 버전*	경기도자살예방센터
48	마인드프렌즈*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49	노인생명존중교육 생명충전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연번	프로그램 명	기 관
50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51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52	응급키트 응급상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53	생명존중그린마을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54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서울시자살예방센터
55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56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A*	한국자살예방협회, 육군본부
57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N*	한국자살예방협회, 해군본부
58	생명사랑 틴틴교실 자해 예방 버전*	경기도자살예방센터
59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 봄!봄!봄!*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60	(노인대상) 생명지킴이양성교육 이심전심*	수원시자살예방센터
61	Ver. 청소년 전담인력 생명지킴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62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 강사양성교육*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63	또래생명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나?! 우리학교 게이트키퍼야!'*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64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소중한 '숨'*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65	생명이어달리기*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66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빛을 찾아서.. "반딧불이"	안산시자살예방센터
67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I MY ME MINE'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68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WHAT'S UP'*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69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70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중앙자살예방센터
71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앙자살예방센터
72	정신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중앙자살예방센터
73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74	112·119·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보는 실무자용 「자살위기 대응매뉴얼」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75	학교기반 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희망의토닥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76	자살예방 실무자를 위한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매뉴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77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조모임 매뉴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78	자살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매뉴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79	자살 유가족지원사업 가이드북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80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중앙자살예방센터
81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ROKMC*	한국자살예방협회, 해병대사령부
82	이·통장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세상살이」*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임상역학연구소
83	청소년 생명존중 부모교육 :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연번	프로그램 명	기 관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84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人 직장인용*	중앙자살예방센터
85	자살시도 중재협상 프로그램*	(주)CNS
86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기본편)*	중앙자살예방센터
87	자살시도자를 위한 인지행동프로그램 '동행'	중앙자살예방센터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가) 행정사항

- 시·군·구청장은 모든 보건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II-3-10호] [별지 제II-3-12호]에 기록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단, [별지 제II-3-11호] [별지 제II-3-4호] [별지 제II-3-13호]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별 보관), [별지 제II-3-14호], 〈붙임 1〉은 익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단, [별지 제II-3-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실적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
  - 모든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실적을 모두 받고, 기록함(시·군·구별 개별 실적을 시트에 첨부하고, 실적이 없는 해당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실적 없음을 필히 기재)
- 시·도지사는 시·군·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한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II-3-10호][별지 제II-3-12호, 14호] 서식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별지 Ⅱ-3-10호]

2021년도 (　　)시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시도명	등 퇴록 회원 현황										의뢰연계 현황																	
	등록관리								사정평가		의뢰접수								연계처리									
	신규등록			퇴록			당반기말 회원수				소계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학교	기타	소계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학교	기타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실인원	연인원				회원등록(법52조1,2항)	일반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신규 등록회원 세부현황														등록회원 사례관리												
	연령별 현황						주요문제별 신규 등록 회원수								응급개입		사례관리 수행										
	소계	만 3세 미만	만 3세 ~5세	만 6세 ~12세	만 13세 ~15세	만 16세 ~18세	소계	놀이 및 언어	ADHD등 행동문제	우울증등 정서문제	물질 남용 문제	인터넷 중독문제	기타 행위 중독	식사 장애 등	정신병적 문제	기타	연인원	실인원	합계	거별상담				자원조정				치료비 지원 (명)
																				소계	정신과 서비스	방문	내소	기타	소계	정신과 서비스	방문	내소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등록회원 서비스제공					정신건강증진																														
	집단 프로그램					예방 및 증진																													자원관리					조사/연구
						교육								홍보									행사		컴페인		세미나										
	등록 실인원	프로그램		가족교육		소계	관련요원		지역주민					홍보물	대중매체			간학																			
		참석 연인원	프로그램수	참석 연인원	진행 날수	횟수	명	횟수	명	교사		학생		기타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부수	전파 매체	인쇄 매체	사이버		호수	명수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단체	지든	유지	MOU 체결	기타	
																				발행 건수	게재 건수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Ⅱ-3-10호] 작성 요령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작성 기준

원칙 1 :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및 기초)는 만 18세 이하('02.1.1이후 출생) 대상자에게 제공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별지 제Ⅱ-3-1호]** 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칙 2 : **[별지 제Ⅱ-3-10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칙 3 : 당반기는 상반기(1월~6월까지)와 하반기(7월~12월까지)를 의미함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가. 등퇴록 회원 현황

1) 등록관리

가) 등록

- 등록회원 수는 당반기에 등록된 실 인원을 기록함. 신규 등록 인원수는 신규 등록자 세부 현황의 연령별 소계 및 주요문제별 등록 회원 수 소계와 같아야 함
- 등록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반드시 대상 아동, 보호자가 등록 관리에 대한 동의
  둘째, 등록회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나) 퇴록

- 퇴록은 사망, 이사, 기능향상, 본인(또는 보호자) 희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다) 당반기 말 등록 회원 수

- 당반기 기준 일에 해당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의 실 인원을 의미함. 따라서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되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회원 전체 수임.
  예를 들어 2021년 상반기 당반기 말 회원 수는 2021년 6월 30일 해당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아동·청소년 대상자 수를 의미함

2) 사정평가

- 사정평가는 신규 아동청소년 회원과 기존 아동청소년 등록자를 대상으로 병력 및 기능, 증상과 관련된 상태를 사정하고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을 포함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제시한 평가도구는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활용 가능함

☞ 표준화된 평가도구: 현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평가도구 매뉴단을 활용, 정신건강검진도구 및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 책자 참조

* 예시: C-GAS, SDQ-kr등

- 실적 기록은 실인원(명)과 연인원(명)으로 기록함
- 실적기준 : ISP 수립과 평가도구 1개 이상 진행한 경우
- 예시)

– 등록된 아동청소년 A군을 대상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 C-GAS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1명, 연인원 1명 표출

– 3개월 후 해당 A군에게 SDQ-kr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미 실적, 연인원 1명 표출

– 상하반기 실적 취합(최종): 실인원 1명, 연인원 2명 표출

나. 의뢰·연계 현황

- 의뢰 및 연계는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를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타 기관에 연계를 실시하였을 경우를 의미함

1) 의뢰접수

-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부터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의뢰서 또는 공문)으로 의뢰 받는 경우,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학교, 기타로 나누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되어 신규 등록한 경우를 구분하여 취합됨

* 지역사회주민, 가족으로부터 권유받거나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 등록 시 해당 실적 미적용, 신규 등록자의 등록 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의뢰접수 실적과 신규 등록 실적은 비 일치 함

가) 행정기관

- 관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관공서)으로부터 의뢰된 경우 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취합

나) 의료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경우. 의료기관의 경우 퇴원통보,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1항,2항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 통지의 형태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
  – 정신의료기관의 외래를 통해 의뢰된 경우를 의미함

다) 정신보건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

라) 지역사회
-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등)으로부터 의뢰된 경우

마) 학교
-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뢰된 경우

바) 기타
- 위에 제시된 학교,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로로 의뢰된 경우

2) 연계처리
- 아동·청소년 등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과 전출로 인해 타 기관에 사례관리를 이관할 경우
- 실적기록은 의뢰접수 경로와 동일하며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학교 기타로 분류하여 건수를 기재함
- 서비스의뢰의 예시)
  - 정신질환외의 신체질환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연계
  - 복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연계
  - 취미·여가활동 등 증진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관(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 연계

  * 신체건강관리를 위해 혈압, 체중을 체크하는 등 일회성 서비스 이거나 단순 정보제공은 본 실적과 무관함

다. 신규 등록회원 세부현황

1) 연령별 현황
- 신규 아동청소년 대상자의 연령별 회원 수를 기록함
- 만6세 이하, 만7세–9세, 만10–12세, 만13–15세, 만16–18세로 나누어 신규 등록 회원 수를 기록함

2) 주요문제별 신규 등록 회원 수
- 신규 아동청소년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유형별 회원 수를 기록함
- 중복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가장 주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함(신규 아동청소년 등록자의 수와 주요문제별 신규 등록 회원 수는 일치)

라. 등록회원 사례관리

1) 응급개입
- 등록 아동청소년 중에서 자살 및 자·타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학대 및 방치상황에 있는 등록 아동청소년을 개입한 것을 의미함
- 실적기록은 사례관리 수행을 진행한 상황별로 개별상담과 자원조정(기관상담)을 나누어 기록

• 실적기준은 개별상담과 자원조정에서 응급성을 표기한 상담건의 실인원, 연인원 표출
* 본 실적은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자의 응급개입 건수를 파악하는 것, 개별상담, 자원조정의 실적 건수와 중복 집계

2) 사례관리 수행방법
• 등록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개별상담]란에 입력함
• 등록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자원조정]란에 입력함
• 개별상담, 자원조정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가) 전화(비대면 상담 : 사이버 상담 포함)
• 개별상담 전화상담: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전화상담: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조적을 위한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 등 비대면 상태에서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나) 방문
• 개별상담 방문상담: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의 가정(혹은 거주 및 생활지역) 혹은 거주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방문상담: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를 위해 센터 사례관리담당자가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시설, 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다) 내소
• 개별상담 내소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 및 가족이 내소하여 상담진행
• 자원조정 내소상담: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실무자가 본 센터에 내소하여 상담을 한 경우

라) 기타
• 전화, 방문, 내소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경우

마) 치료비 지원
•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등록대상자를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하여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개입 치료 혹은 약물치료, 특별치료 등)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실제 치료비를 지원한 실인원 수를 기재함

마. 등록회원 서비스제공

1) 집단 프로그램
• 등록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 프로그램을 의미함
• 그룹프로그램은 1회성 대규모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 진행의 목적 및 계획이 있고 회기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recording)과 참석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comment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참석연인원: 집단 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 일수의 합
- 진행날 수: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수
- 프로그램 수: 집단 프로그램 운영 일에 진행된 그룹 프로그램 전체 수

2) 가족교육

- 등록된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가족구성원을 위한 교육을 의미함. 참여자의 입력은 아동·청소년 대상자 중심으로 기록함. 예를 들어 대상자 1명에 다양한 가족이 참여 하였더라도 참여자는 대상자 명으로 지정하고 상세 내용에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
- 실적기준
  - 참석연인원: 집단 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 일수의 합
  - 진행날 수: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수

바. 정신건강증진

● **예방 및 증진영역**

1) 교육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 횟수와 참석자 명수에 대해 교육 대상 (관련요원, 지역주민 – 교사, 학생, 기타)을 구분하여 기록함

가) 관련요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형성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되는 대상을 의미함.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및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을 말함

나) 지역주민

-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지역주민을 의미함
- 교사, 학생, 기타로 나누어 구분함
  - 교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의미함
  - 학생: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을 의미함
  - 기타: 교사, 학생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지역주민을 의미함

2) 홍보

-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시(도)민에게 실시했던 홍보와 관련한 부분을 기록

가) 홍보물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포한 것
-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소책자, 보고서, 홍보물 등이 해당

• 실적 기준
횟수: 배포한 기관 수
부수: 배포 총 수량

나) 대중매체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중매체를 활용해 발행하거나 게재한 것
• 전파매체: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 등이 해당
• 인쇄매체: 신문, 발간지 등이 해당
• 사이버: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을 경우 발행건수와 게재건수를 나누어 입력
• 실적기준
– 전파매체/인쇄매체: 건수(매체를 활용해 홍보내용을 게제한 건을 의미)
– 사이버: 발행건수(홍보내용 제작 건), 게재건수(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건수)
(예: 기관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해당

다) 견학

•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실제로 방문하여 본 기관에 대해 알린 것을 기록함

3) 행사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한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

4) 캠페인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

5) 세미나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토론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기록함

● **자원관리 영역**

• 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실시한 건수를 기록

가) 탐색

• 탐색은 신규 자원을 탐색하는 건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미등록 대상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규자원 탐색도 포함)

나) 자문

• 지역자문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건강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실적 제외사항: 본기관이 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제외)

-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포함
- 실적은 건수로 작성함

다) 유지

- 기존 네트워킹을 실시하였던 자원과의 접촉 건수를 의미함
  (* 단, 간담회 등 회의 이후 참석한 기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만 기록할 것)

라) MOU 체결

-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건수

마) 기타

- 탐색 및 유지 외 다른 자원관리 건수를 의미함

● **조사/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역 주민 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지역단위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욕구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같이 일정한 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집단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 일회성 조사, 단발성 선별검사 결과는 실적에서 제외
- 실적기록은 '명'으로 기재함
- 단, 지역조사 결과는 반드시 효율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조사 결과를 이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활용 가능함

[별지 제Ⅱ-3-11호]

20 년도 시·도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총계

(단위:원)

번호	시군구명	성별			의료보장상태					지원금액	지원내용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건강보험	기타		
총계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0		0			0						

[별지 Ⅱ-3-12호]

2021년도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보고

1.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실적 보고

시도명	피상담자 실인원	피상담자 구분							정보취득 경로(연인원)							상담이력(연인원)				
		성별 구분(연인원)			연령 구분(연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만 6세 이하	만 7세 -9세	만 10세 -12세	만 13세 -15세	만 16세 -18세	소계	학교 기관	의료 기관	정신보건 기관	지역사회 기관	홍보물 (대중매체)	기타	소계	초초 상담	동일주제 재상담	타주제 상담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상담수행방법(연인원)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연인원)											주요 조치(연인원)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이동상담	내소	기타	소계	발달문제	ADHD 등 행동문제	우울 등 정서문제	물질/중독문제	인터넷 중독 문제	기타 행위중독	식사장애 문제	정신병적 문제	기타 문제	소계	응급관리	지속 상담	치료 연계	기관 연계 112, 119	기관 연계 서비스 연계	응급통출	정보제공	기타조치
상반기																								
하반기																								
누계																								

2. 아동청소년 기타상담실적보고

시도명	소계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전 후 우울증 상담		자닌관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Ⅱ-3-12호] 작성요령

1.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작성 원칙

원칙 1 [별지 제Ⅱ-3-12호]는 미등록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작성

원칙 2 미등록대상자들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기관에 연락하여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기관문의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자

2. [별지 제Ⅱ-3-12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 상담 실적 작성 기준

기준 1 [별지 제Ⅱ-3-12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당해연도를 기준함

기준 2 당반기는 상반기(1월~6월까지)와 하반기(7월~12월까지)를 의미함

기준 3 누계는 당해연도 1월~12월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를 의미함. 피상담자 인원수, 기타상담 실적보고를 제외한 일반상담은 연인원으로 작성하고 각 소계 값은 모두 동일

기준 4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실적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3. 일반상담실적 항목별 정의(definition)

※ 피 상담자라 함은 만 18세 (19세) 이하의 당사자를 의미, 당사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을 구분함. 예를 들면, 4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17살 된 본인의 아들 B에 대한 상담 전화를 한 경우

- 피상담자: 아들 B씨
- 연령구분: 17세
- 상담수행방법: 전화
- 정신건강문제 유형: 인터넷 중독문제

가. 피상담자 실인원

- 해당년도 최초상담 대상자수

나. 피상담자 구분

1) 성별 구분

- 피상담자의 성별을 남, 여로 구분, 소계는 구분의 합

2) 연령 구분

- 대상자에게 질의하거나 추정하여 만 나이로 기록, 만 6세 이하, 만7세~9세, 만10세~12세, 만13세~15세, 만16세~18세로 구분

다. 정보취득 경로

- 정보제공자(본인, 가족, 지인, 기관종사자 등)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로 나누어 기록
  (예) 의료기관 종사자가 홍보물을 통해 A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대상자 의뢰를 위해 A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문의를 하는 경우, 정보 취득경로를 [홍보물]로 기록

라. 상담이력

* 상담을 받은 인원의 연인원 수를 기록

1) 최초상담
- 해당년도에 최초상담 대상자 수

2) 동일주제 재상담
- 기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 상담과 동일한 목적(주제)으로 재상담 받은 자의 수

3) 타주제 재상담
- 기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 상담과 다른 목적(주제)으로 재상담 받은 자의 수

4) 기타
- 위 상담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상담 유형에 기타로 체크한 경우

마. 상담수행방법
-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이동상담, 기타(팩스 또는 우편 등)로 구분하여 기록함

바.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 원칙
-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은 중복기재가 불가, 대상자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제를 한 가지 선택하여 기록
- 상담 시 정신건강문제유형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가 판단하여 선택
- 상담시마다 정신건강문제유형을 확인하여 연인원으로 기록하도록 함

1) 발달문제
자폐 등 발달상의 문제를 의미함

2) ADHD 등 행동문제
충동성이나 폭력,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등의 외현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3) 우울증 등 정서문제
자살에 대한 사고나 우울감 등 내재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4) 물질남용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각성제 등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의미함

5) 인터넷 중독문제
인터넷 과다사용이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6) 기타 행위중독
게임, 쇼핑, 일, 성 등의 문제를 의미함

7) 식사장애 문제
부적절한 다이어트 등 식사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8) 정신병적 문제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분열의 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psychotic symptom)을 보이는 경우

9) 기타
앞에서 제시한 범주에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사. 주요 조치

- 주요조치는 우선순위를 따라 1,2순위를 모두 기록할 수 있음. 단, 2순위는 실적 집계되지 않음
- 1순위 주요조치에 대해 연인원으로 기록

1) 등록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대상자로 등록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동의한 경우

2) 지속상담
전화나 내소, 가정방문 등의 재 상담 계획이 있고 지속관리 받기를 동의한 경우

3) 치료연계
외래 진료 및 입원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4) 기관 연계
-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 등을 통해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말함.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연계한 경우 제외
- 구분
  – 112, 119: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2, 119로 연계한 경우
  – 서비스 연계: 112, 119를 제외한 그 외 기관에서 연계한 경우

5) 응급출동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기관 직원이 응급출동을 한 경우

6) 정보제공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 없이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한 경우

7) 기타조치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

4. 기타 상담실적 항목별 정의

※ 기타상담실적은 일반상담을 진행했던 아동청소년 피상담자 중에서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 일반상담 실적과는 중복카운트, 기타 상담실적과는 중복카운트 되지 않음

(1) 자살관련상담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2)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3) 실종아동가족
만 18세 이하의 실종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5) 재난관련상담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별지 제 II-3-13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이름	성별	연령	상담 수행방법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주요 조치	기타상담				
							자살 관련	다문화 가정	실종 아동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재난 관련
(예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반상담접수대장 양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로 참조

[별지 제 II-3-14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작성함

※ 참여대상: 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이름	정신건강서비스 참여 여부[1]		SDQ-Kr[2]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4]		
					점수			점수			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서비스	정신의료기관 치료서비스 연계	도구 종류[3]	난점	강점	시행일	난점	강점	시행일	난점	강점	시행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여부는 참여한 경우 "1"로 기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비워두면 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서비스 : 매뉴얼에 의한 집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것을 의미함
   - 정신의료기관 치료서비스 :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연계한 경우를 의미함
2) SDQ-Kr (강점 난점 설문지)는 1차(초기)검사 이후 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 마다 재평가하여 기입함.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록할 시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2차 검사란에 기록함
3) 부모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1", 교사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2"로 기재하고,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으로 기재함. 또한 1차(초기)검사에서 사용한 도구유형을 계속 사용하도록 함
4) 3차까지 진행된 경우 작성

[별지 제 II-3-14호] 작성원칙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 현황 작성원칙

- [별지 제Ⅱ-3-14호]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효과', '서비스 참여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이에 당해 연도 1월 ~12월까지 발생한 내역을 작성하여, 하반기에 한번 보고함. 센터 자체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으로 인위적인 점수 조작은 지양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성 방법은 심층사정평가 진행시 SDQ-Kr를 함께 이용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6개월마다 SDQ-Kr로 재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함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퇴록할 경우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2차 혹은 3차 검사란에 기재하도록 함. 정신건강서비스 참여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매뉴얼에 의한 집단프로그램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를 "1"로 기재함
- SDQ는 부모보고형, 교사보고형, 자기보고형 세가지 종류로 구별됨. 종류별로 규준 및 사용된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보고형을 부모는 부모보고형을 교사는 교사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해야 함. 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간 지각의 차이를 비교, 아동의 행동유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차, 2차, (3차)검사의 응답주체는 동일해야함. 즉, 아동이 1차검사에서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기록하였으면 2차 검사에도 그 아동이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완성해야함. 또는 1차검사에서 아동의 아버지가 부모형 설문지를 기록하였다면 2차검사에서도 아버지(어머니가 아님)가 부모형 설문지를 가지고 기록해야 함. 1차검사와 2차검사의 응답주체가 달라지면 반복검사를 통해 보고자한 효과의 의미가 없어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영 역	필수사업	선택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알코올문제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음주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 서비스	▸ 기타중독(도박, 인터넷, 마약)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기타중독(도박, 인터넷, 마약)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 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 – 재활 프로그램	▸ 알코올중독자 위기관리 서비스 ▸ 알코올중독자 직업재활 서비스 ▸ 기타중독 관리체계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 – 재활프로그램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알코올중독자 가족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 –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 알코올중독자 및 기타중독자 가족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취약계층 알코올문제 교육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아동 ·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 예방지원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인프라 구축	▸ 지역 법무 연계 ·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 · 운영체계 구축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크워크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 자원조정 및 중재

가) 중독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사업

- 조기선별 및 단기치료(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 발견된 고위험군 및 의뢰접수된 대상 심층 사정평가 수행
- 지역내 고위험군 대상 교육 및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시·도(광역)의 중독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구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관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찾아가는복지 전담팀) 드림스타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보건팀, 의료급여팀, 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신규발견 체계 활성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수퍼비전 체계 운영
-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성 구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역자원이 없는 경우는 질환자와 가족의 요구(need)를 외면하기 보다는 필요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기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서비스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연계를 위한 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회의 등)
-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 중독문제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회복자 자조모임 및 가족자조모임, 동기강화 프로그램(사업)등 운영 지원

다)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신규 발견된 고위험군, 이용하고 있는 회원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모임 지원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의 야외행사, 캠프, 송년모임 등을 지원

라) 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

- 선택적(selective)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사업
- 지식수준(knowledge)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마)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중독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
- 보건복지, 법무체계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계체계 활성화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및 참여
- 지역사회 내 중독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과 대상자 서비스 연계관리
- 중독관련 전문상담기관과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의뢰

바)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시, 군, 구)정신보건계획 수립에 참여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 지역사회 자원조정 및 중재
-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도조사와 우선순위 선정

* 지역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이차적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한 질적인 연구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지역사회 기본적 중독관리 사업 확충을 위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추가지원 가능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가) 운영비 지원

(1) 지원기준

- 재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300,000천원 및 지방비
- 예산규모 : 센터당 100,000천원(6개소)
-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2)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편성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중독자 관리 '사업예산은 통장, 회계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별도 관리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및 예산 적용 규정 등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준용

나) 인력관리

- 2인 이상
- 자격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 기타 전문인력 1인 이상

다) 운영체계

(1) 사업수행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사업내용

(1)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 지원 또는 연계할 기관 및 자원 현황 파악
  - 지원대상기관 :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연계기관과 MOU 등 공식적 협력체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마련
  - 연계기관과의 정기적 업무회의, 통합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기관 및 종사자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유관기관 역량 지원

-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중독문제 선별 및 기본적 예방교육 등을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
  - 정기 워크샵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연계, 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유관기관 내 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유관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중독 관련 예방교육 개발 및 운영지원

(3)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유관기관의 대상자의 중독문제 선별 지원
  -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중독문제 선별과 피드백 및 단기개입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지원
- 선별된 대상자의 중독문제 진단적 평가
  - 대상자 중 중독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 중독문제의 중증도와 동반정신질환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
-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목표 수립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 평가에 따라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치료 내용 및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서비스는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례관리 과정은 중독통합관리센터장이 관리·감독 하며, 지원대상기관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4)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별 집단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상담·교육 프로그램 구성
- 집단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 개발

나 업무실적 보고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업무실적 보고

● 정기보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고하되, 매 반기 마감 후 다음달 20일 이내 보고 (별지 제Ⅱ-4-1호 서식)
- 야간 및 휴일 전화수신기관은 시·도별로 실적 정리하여 시·도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과 같이 제출(시·군·구별 및 야간실적 분리하여 제출)

● 수시보고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별지 제Ⅱ-4-1호]

2021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시도명	피상담자·실인원	미등록 피상담자 구분										미등록 상담 접수 및 조치																					
		성별 구분(연인원)			연령 구분(연인원)							정보취득 경로(연인원)							상담수행방법(연인원)					주요 조치(연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만 16세 이하	만 19~28세	만 29~38세	만 39~48세	만 49~58세	만 59~64세	만 65세 이상	소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이동상담	내소	기타	소계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연계	기관 연계 112, 119	기관 연계 서비스 연계	응급출동	정보제공	기타조치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중독상담 및 단기개입			등록회원 사례관리																													
	조기선별 건수	상담 및 단기개입		등록관리 (명)												사정평가	의뢰접수(건)								연계처리(건)								
		실인원	연인원	등록				퇴록				당반기 말 등록회원수				실인원	연인원	소계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학교	기타	소계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학교	기타		
				소계	남자	여자	가족	소계	남자	여자	가족	소계	남자	여자	가족							일반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등록회원 사례관리																																
	응급가입				사례관리 수행방법 (건)													재활서비스																
	연인원		실인원		합계	개별상담						자원조정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직업재활		기타재활								
	개별	자원	개별	자원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기타	실층면담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기타		프로그램 수	진행 횟수	실인원	참석 연인원	참석 연인원	진행 날수	실인원	참석 연인원	실인원	참석 연인원							
상반기																																	
하반기																																	
누계																																	

시도명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증진																												자원관리(건)					조사/연구(종)
	교육				홍보													행사		캠페인		세미나										
	소계		관련요원		지역주민						홍보물		대중매체			간학																	
					교사		학생		기타						사이버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부수	전파매체	인쇄매체	발행건수	게재건수	횟수	명수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탐색	자문	유지	MOU 체결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II-4-1호] 작성요령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작성 기준

기준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의 작성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함

기준 2 당반기는 상반기(1월~6월까지)와 하반기(7월~12월까지)를 의미함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 피상담자란 상담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당사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을 구분함
예를 들면 여성 A씨가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은 남편 B씨(42세)에 대해 상담을 받기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화한 경우

- 피상담자: 남편 B씨
- 연령구분: 42세
- 상담수행방법: 전화
- 정신건강문제 유형: 알코올 사용장애

가. 피상담자 실인원

• 해당년도에 최초상담 대상자 수

나. 미등록 피상담자 구분

1) 성별 구분

• 피상담자의 성별을 남, 여로 구분, 소계는 구분의 합

2) 연령 구분

• 대상자에게 질의하여 만나이로 기록, 만 18세 이하, 만19~28세, 만29~38세, 만39~48세, 만49~58세, 만59세~64세,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다. 미등록 상담 접수 및 조치

1) 정보취득 경로

• 정보제공자(본인, 가족, 지인, 기관종사자 등)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홍보물(대중매체), 기타로 나누어 기록
(예) 의료기관 종사자가 홍보물을 통해 A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대상자 의뢰를 위하여 A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문의를 하는 경우, 정보 취득경로를 [홍보물]로 기록

2) 상담수행방법

• 전화/사이버, 방문, 내소, 이동상담, 기타(팩스 또는 우편 등)로 구분하여 기록함
• 일반상담 건수 중 부재는 실적에 미포함

3) 주요조치

• 주요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1,2순위를 모두 기록 할 수 있음. 단, 2순위는 실적집계 되지 않음
 * 1순위 주요조치에 대해 연인원으로 기록

○ 등록관리
  • 상담 이후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한 경우

○ 지속상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 가정방문 등의 재 상담 계획이 있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받기를 동의한 경우

○ 치료연계
  • 외래 진료 및 입원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 기관 연계
  •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 등을 통해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말함.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연계한 경우 제외
  • 구분
  – 112, 119: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2, 119로 연계한 경우
  – 서비스연계: 112, 119를 제외한 그 외 기관에 연계한 경우

○ 응급출동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기관 직원이 응급출동한 경우

○ 정보제공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및 기타 조치 없이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한 경우

○ 기타조치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

라. 중독상담 및 단기개입

1) 조기선별 건수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선별 및 단기치료를 위해 척도(AUDIT-K, 인터넷 중독 관련 척도 등)를 사용하여 사정평가를 시행한 경우를 의미함. 단순 선별검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Screening 등)가 아닌, SBIRT 기준 척도에 따라 조기선별을 위한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중독 상담을 진행한 경우 해당함

• 중독예방교육 과정 중에 이루어진 평가도 조기선별에 포함 할 수 있음. 참여자의 인적정보 파악하고 선별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기록한 경우 실적화 함

2) 상담 및 단기개입

- 등록회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독문제별로 SBIRT단계에 따라 교육 및 개입 등을 최소 3회 이상하도록 권장하며 대면상담으로 진행된 건수를 실적화 함. 단, 단순문의는 상담실적에서 제외, SBIRT에 따른 상담 및 교육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함. 실적기록은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기재함
- 중독예방교육 과정 중 조기선별 이후 이뤄진 평가에 대해 SBIRT 단계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 진행되어야 함. 교육 이후의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대상은 추가 개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마. 등록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 : 등록회원(남자, 여자, 가족)을 대상으로 등록부터 퇴록하기까지 제공된 모든 서비스. 사정평가를 통해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수립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 통칭

- 제공서비스: 개별상담, 자원조정,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의뢰 및 연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
- 수행방법: 등록회원 개별상담 및 자원조정가정방문, 전화관리, 사이버상담, 내소상담, 기타 상담), 가족상담
- 실적: 의뢰 및 연계 현황, 응급개입, 사례관리 수행, 등록회원 재활서비스(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기타재활프로그램)에는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만 실적화

1) 등록관리

가) 등록

- 등록 관리에 대한 대상자 또는 가족(보호자)의 동의
- 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는 대상자 병력, 증상 등에 대상 사정(assessment)수행, 등록 후 4주 이내 정신과 의사(정신과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정신의학적 진단 및 소견, 사례관리자의 심층사정평가를 토대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등록대상자가 현재 입원을 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자 가족과 정기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등록 대상자의 입원 경과 파악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재원관리)를 하는 경우 등록회원으로의 상태(자격)를 유지 할 수 있음
- 등록대상은 고위험대상군 이상을 등록군으로 하고 중독대상자, 가족으로 구분함.
- 중독 등록대상자는 해당반기동안 신규 등록한 대상자의 실인원을 남녀로 구분하여 기록함

나) 퇴록

- 퇴록자는 사망자, 타 지역으로 전출자, 퇴록 요구 대상자 등을 말함. 해당 반기동안 퇴록 한 대상자 수(남, 여), 가족 수를 실인원수로 기재함
-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퇴록 될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계 처리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하도록 함

다) 당반기 말 회원

- 당반기 기준 일에 해당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의 실인원을 의미함. 따라서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되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회원 전체 수임
- 당반기 말 회원 수는 해당센터에서 당반기 말(예: 6.30/12.31)에 퇴록한 회원 수는 제외

2) 사정평가

- 사정평가는 신규등록회원과 기존회원의 병력 및 기능, 증상과 관련된 상태를 사정(assessment)하고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을 포함.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
- 표준화 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시한 평가도구는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
- 실적 기록은 실인원(명)과 연인원(명) 으로 기록함
- 실적기준: ISP 수립과 평가도구 1개 이상 진행한 경우

☞ 표준화된 평가도구: 현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평가도구 메뉴단 활용. 정신건강검진도구 및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 책자 참조

* 예시 : AUDIT-K, RCQ, HAIS 등

- 예시
  - 등록 시 회원 A씨를 대상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ISP) AUDIT-K, CES-D 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1명, 연인원 1명 표출
  - 3개월 후에 해당 A씨에게 HAIS를 실시하였을 경우 : 실인원 미 실적, 연인원 1명 추가
  - 상하반기 실적 취합(최종): 실인원1명, 연인원 2명 표출

3) 의뢰접수

-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부터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의뢰서 또는 공문)으로 의뢰 받는 경우, 행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기관, 기타로 나누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되어 신규 등록한 경우를 구분하여 취합됨
  - 지역사회주민, 가족으로부터 권유받거나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 등록 시 해당 실적 미적용, 신규 등록자의 등록 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의뢰접수 실적과 신규 등록자 실적 비 일치
  - 행정기관은 구청, 동사무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을 의미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취합
  - 병의원의 경우는 퇴원통보,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 * 퇴원통보: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 통지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
    - * 정신의료기관의 외래로부터 의뢰된 경우

4) 연계처리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과 전출로 인해 타 기관에 사례관리를 이관할 경우
- 서비스의뢰의 예시)
  - 정신질환 이외의 신체질환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연계,
  - 취미여가활동을 증진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관(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 연계
    * 신체건강관리를 위한 혈압이나 체중 체크 등 일회성 서비스 이용은 본 실적과 무관
- 실적은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 기타로 분류, 건수 표출
- 행정기관은 구청, 동사무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을 의미함
-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 한의원 등을 의미함
- 정신보건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자살예방센터, 기타 관련기관 등을 의미함.
-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복지관, 복지시설과 같은 유관기관을 의미함. 학교도 포함
- 그 외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건수로 기록함

5) 응급개입

- 등록회원 중에서 자살 및 자·타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및 학대(가학 또는 피학) 및 방치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개입한 것을 말함
- 실적기록은 사례관리 수행 시 진행한 개별상담(대상자 및 보호자)과 자원조정(기관 상담)으로 구분하여 기록
- 실적기준은 개별상담과 자원조정에서 응급성을 표기한 상담 건의 실인원, 연인원 집계
  * 본 실적은 등록 대상자의 응급 개입 건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상담, 자원조정 건수와 중복 집계

6) 사례관리 수행방법

- 등록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개별상담]란에 입력함
- 등록 대상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서비스를 상담 대상과 방법(전화, 방문, 내소)을 구분하여 [자원조정]란에 입력함
- 개별상담, 자원조정 중 부재 건은 실적에 미포함

가) 전화(비대면 상담 : 사이버 상담 포함)

- 개별상담 전화상담: 등록대상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전화상담: 등록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 조적을 위한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 전화 등 비대면 상태에서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나) 방문

- 개별상담 방문상담: 등록대상자의 가정(혹은 거주 및 생활지역) 혹은 거주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원조정 방문상담: 등록 대상자를 위해 센터 사례관리담당자가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시설, 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상담

다) 내소

- 개별상담 내소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대상자 및 가족이 내소하여 상담진행
- 자원조정 내소상담: 등록대상자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실무자가 본 센터에 내소하여 상담을 한 경우

라) 기타

- 전화, 방문, 내소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경우
- 등록회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개별상담]란에 상담방법(전화, 방문, 내소)에 따라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 등록 회원의 서비스 조정을 실시한 기관과의 상담 내용은 [자원조정]란에 상담 방법(전화, 방문, 내소, 기타)에 따른 실적을 입력하도록 함

마) 심층면담

-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록회원이 개별 서비스 계획 ISP(ISP : 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따라 재활프로그램 참여한 당일에 20분 이상 심층면담(내소) 실시
- 실적기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이력 존재. [개별상담] 메뉴단에 내소로 입력
  * 심층면담 제외 프로그램: 자조모임, 직업재활, 행사참여, 자치운영활동
- 단,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자라 할지라도 상담일에 그룹프로그램 진행 이력이 없는 경우는 업무실적표 상 '사례관리 수행방법 - 내소' 의 실적으로 표출

7) 재활서비스

-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가족교육, 기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가) 재활프로그램

-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치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재활프로그램 회원은 따로 등록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재활프로그램 시작일, 등록회원에 대한 간단한 신상기록 및 정보, 재활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등이 근거자료로 구비되어 있어야 함

(1) 프로그램 수

- 재활프로그램 운영 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전체 수

- 재활프로그램 수는 집단 활동 기록 작성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며, 집단 활동 기록 작성은 참여한 등록회원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 내용과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함(12단계, 재발예방,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동기강화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 및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
- 재활프로그램 수 산출예시
  20.1.1. ~ 20.1.5. (5일 동안) 매일 A프로그램 2회, B프로그램 1회씩 실시한 경우→2회×5일=15

(2) 프로그램 진행횟수

- 재활프로그램 운영 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전체 수

(3) 프로그램 실인원 및 참석연인원

- 실인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제 인원수
- 참석연인원: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합

나) 가족교육

- 등록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중독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 경우
- 참석연인원: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합
- 진행날 수: 가족교육 운영 일수

다) 직업재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진행된 직업재활로 취업 전 프로그램 및 보호 작업장을 의미함 (단, 보호 작업장은 필요할 경우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센터가 보호 작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진행한 집단프로그램 포함
- 실인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제 인원수
- 참석연인원: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합

라) 기타재활

- 등록회원(재가회원도 포함)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이벤트프로그램, 체육행사, 캠프, 송년회, 자치운영 활동,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 경우를 말함.
- 재활프로그램과 실적이 중복되지 않으며 실인원과 참석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실적 표출됨
  - 실인원: 기타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실인원
  - 참석연인원: 기타 재활프로그램에 출석한 회원의 참석일수의 총합

바. 정신건강증진

1) 교육

-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행한 횟수와 참석자 명수에 대해 교육 대상(관련요원,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기록

가) 관련요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되는 대상을 의미함. 예를 들면, 경찰, 소방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직원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보건지소 방문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말함

나) 지역주민

-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민 대상 교육이나 훈련을 포함
- 지역주민은 교사, 학생, 기타로 나누어 구분하여 기록함

나)–1 교사

-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의미함

나)–2 학생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을 의미함

나)–3 기타

- 교사, 학생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지역주민을 의미함

2) 홍보

-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시(도)민에게 실시했던 홍보와 관련한 부분을 기록

가) 홍보물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 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포한 것
-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소책자, 보고서, 홍보물 등이 해당
- 실적 기준

  횟수: 배포한 기관 수

  부수: 배포 총 수량

나) 대중매체

- 기관자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중매체를 활용해 발행하거나 게재한 것
- 대중매체의 종류
  - 전파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 등이 해당
  - 인쇄매체: 신문, 발간지 등이 해당
  - 사이버: 인터넷사이트(기관 홈페이지, 기관 SNS 등)해당
- 실적기준
  - 전파매체/인쇄매체: 건수(매체를 활용해 홍보내용을 개제한 건을 의미)
  - 사이버

    발행건수: 홍보내용 제작 건수

    게재건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건수

다) 견학

•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본 기관에 방문하여 견학한 건수

3) 행사

• 기관에서 주최하여 진행한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함

4) 캠페인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때 횟수, 명(참여인원수)으로 나누어 기록함

5) 세미나

•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토론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기록함

● 자원관리 영역

• 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실시한 건수를 기록

가) 탐색

• 탐색은 신규 자원(기관)을 탐색하는 건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미등록 대상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규자원 탐색을 포함)

나) 자문

• 지역자문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건강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실적 제외사항: 본기관이 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제외)

•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실적은 건수로 작성함

다) 유지

• 기존 네트워킹을 실시하였던 자원과의 접촉 건수를 의미함
(* 단, 간담회 등 회의 이후 참석한 기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만 기록할 것)

라) MOU 체결

•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건수

마) 기타

• 탐색 및 유지 외 다른 자원관리 건수를 의미함

● 조사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지역단위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욕구조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같이 일정한 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그룹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 일회성 조사, 단발성 선별검사 검사 결과는 실적제외
- 실적기록은 '명'으로 기재함
- 단, 지역조사 결과는 반드시 효율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조사결과를 이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함

[별지서식 제Ⅱ-4-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조사표

1 기관 정보

시도	(시)	시군구명	기관명	개소연도	인력정원(TO)	인력 중 정신질환 회복한 당사자 포함 여부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fax	홈페이지 주소	주소(도로명주소)	우편번호	면적(평)	면적(제곱미터)	설치장소구분	운영구분	운영주체	수탁기관명	수탁기관종류	예산집행 현황
																	1.보건소 내 2.수탁기관내 3.기타공공기관 4.민간시설임대 5.전용공간없음	1.직영형 2.위탁형	1.국가,지방자치단체 2.의료법인 3.학교법인 4.종교법인 5.사회복지법인 6.사단법인 7.재단법인 8.비법인정신의료기관 9.개인 10.기타		1. 국공립정신병원 2. 사립정신병원 3. (종합)병원정신과 4. 정신과의원 5. 사회복지관 6. 건대학원/예방의학교실/간호대학등	1.보건소직접집행 2.협력기관부분집행 3.협력기관전액집행 4.센터전액집행

2 예산 현황

당초 예산액 (천원/연)	집행액 (천원/연)	___년 집행액 기준 재원출처별 현황							___년 집행액 기준 세목별 예산 현황						외부재원 (예산미포함)		세부 수행사업 현황 (수행하는 경우 '1' 기입, 중복선택가능)				
		합계 A+B+C+D (천원/연)	국비 A	광역시도비 B	시군구비 C	기타 D (국비 매칭 지방비 외 추가지방비가있는경우)			합계 E+F+G (천원/연)	인건비 총액(E) (복지수당 포함)	관리비 등 기타 총액(F)	사업비 총액(G)			___년 집행액 외부재원 (천원/연)	복지수당 (처우개선) 총액	알코올/중독사업	자활사업	노숙자 정신보건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기타 (사업명기입)
						소계 D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G)	중독	기타							

3 등록자 현황

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중복 이용자	등록자 수 (아동 청소년 포함모든등록자)		
	연고여부	무연고자	
		연고자	
		소계	
	생활현황	소계	
		남성	
		여성	
	교육현황	아동청소년	
		소계	
		성인(최종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미파악
	연령별현황(※ 만 나이로 계산)	소계	
		10세 미만	
		10~14	
		15~18	
		19~28	
		29~38	
		39~48	
		49~58	
		59~64	
		65세 이상	
		연령미상	
	직업별분포	소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	
		기타직종	
		아동청소년	년/대 학생 등
		무직	
		미파악	

정신장애현황(중복장애 포함①,②번모두 입력)			수급자현황		질환별분포 (만 19세 이상 성인)			질환별분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중독질환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의료급여 수급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정신장애 없음	지적장애 (1,2,3급)	생계급여 수급자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주거급여 수급자			도박 중독		도박 중독
			교육급여 수급자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시설 수급			기타 중독질환		기타
			기타		이중진단	소계		
			해당 사항 없음			조현병		
			미파악			양극성 정동장애		
		그 외 장애(지적장애, 시각 장애 등)				우울증		
						기타		

4 아동·청소년 등록자 현황

아동청소년 등록자 수	성별분포			의료보장분포				학년별 분포											주요문제별 분포			
	소계	남성	여성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소계	미취학	학업중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소계	물질남용 문제	인터넷/중독 문제	기타

정신장애현황(중복장애 포함①,②번모두 입력)					수급자현황							이용기간 현황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특례 수급자 (의료, 자활, 교육 등)	시설수급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미파악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소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소계	자격장애 (1,2급)	그 외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	해당 사항 없음																	

5 주간재활

___년 등록 전연령 모든 대상										___년 연간 신규 등록자 사정평가						ISP 수립 인원 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___년 신규 등록자		사정평가 수행 현황 (대표적인도구2개만작성)				
운영여부	주당 운영일수 (주0일)	운영기간 (단위:주)	이용자 실인원 (2020.12.31.기준)	일평균 이용자 실인원	운영여부 (운영시 '1'기입)	주당 운영일수 (주0일)	운영기간 (단위:주)	이용자 실인원 (2020.12.31. 기준)	일평균 이용자 실인원	___년 연간 신규 등록자 실인원	___년 연간 신규 등록자 중 사정평가 2차례 모두 시행한 실인원	평가 도구명	평가결과 호전or 유지 실인원*	평가 도구명	평가결과 호전or 유지 실인원*	

6 ___년 12월 31일 기준 15세 이상 등록자의 취업 및 전연령 모든 등록자의 거주 현황

취업자 현황 (만 15세 이상)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 현황 (정신재활시설임소자는제외)							거주 현황									
소계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미파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수	소계	구분		소계	서비스 형태		소계	거주 형태					소계	구분 (비거주용건물내주택,임시거주지,정신재활시설입소자,기타인경우작성)	
						성인	아동 청소년		주택	기타		거주용 건물내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임시 거주지	정신 재활 시설 입소자	기타		성인	아동 청소년

[7] ___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대상자 입원 및 사망, 일반상담 현황

___년 사망자 현황			응급 개입 실인원	치료 비 지원 실인원	입원자 현황 (___.12.31.기준 등록자 중 한해동안 1회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실인원)												정서행동 특성검사	아동청소년 (만18세이하)	성인 (만19세-64세)				노인 (만65세이상)		
소계	사망유형				소계	알코올 사용장애	도박장애	약물사용장애	인터넷/게임중독	기타중독질환	아동청소년	임원경증음성울	미파악	의료실인원	(실제)개입실인원	서비스연계실인원	소계	서비스연계실인원	치료연계실인원	SBIRT 3회이상 제공 실인원	소계	서비스연계실인원	치료연계실인원	소계	서비스연계실인원	치료연계실인원
	자살	자살 외사망(질병,사고등)	자살자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8] ___년 연간 퇴록한 대상자 현황

퇴록자 실인원	퇴록형태								퇴록 후 거처							질환별 분포(진연령)										
	소계	자살	자살외 사망 (질병, 사고등)	진출	서비스 종결					기타	소계	추거시설	가정(집) 복귀			기타	소계	중독질환 (만 19세 이상)						질환별분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증상호전 또는 목표달성	계약(기간)만료	증상악화	부적응	본인 또는 가족 희망				보호자동거	독립	재입원			알코올 사용장애	도박장애	약물사용장애	인터넷 중독	기타 중독질환	소계	물질 남용	인터넷/게임 중독	기타

9 종사자 현황

기관명	기관구분	운영구분	직원 (익명)	성별	만 나이 (세)	공무원여부	직급	근무형태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3. 광역자살예방센터 4. 기초자살예방센터 5.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직영형 2. 위탁형		1.남성 2.여성		1. 공무원 2.비공무원	1.센터장/보건소장 2.임상자문의 3.부센터장 4.상임팀장 5.팀장 6.팀원 7.행정요원 8.기타	1.상근 2.비상근	1.주1회 근무 2.주2회근무 3.주3회근무 4.주4회근무 5.주5회근무	1. 시간제 근로 2.전일제근로	하루 근무 시간	1.무기계약(정규직 포함) 근로 2.기간제근로 3.단기근로	계약개월수 (기간제 및단기근로 해당)

담당사업별	사례 관리	직역	전문 요원	호봉 (___년12월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정신건강증진관련기관 경력 (~___.1231)		현재기관 근속년수 (입사~___1231)	종사자 근무상태	센터장 근무형태 (센터장만작성)			
1. 총괄 2.중증정신질환사업 3.자살사업 4.아동청소년사업 5.정신건강증진사업 6.중독사업 7.재난관리사업 8.회계행정 9.기타	담당 사례관리 회원수	1.정신과전문의 2.간호 3.사회복지 4.임상심리 5.작업치료 6. 기타	1. 유 2.무	실제호봉	인정된 호봉	1.2020정신건강사업안내 2.2019년정신건강사업안내 3.공무원지침 4.기타	전문요원 자격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증진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 (개월)	전문요원 자격 취득이후 정신건강 증진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 (개월)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1. 재직_정규인력 2.재직_대체인력 3.육아휴직 4.퇴직자 5.기타	이름	1.주1회 2.주2회 3.주3회 4.주4회 5.주5회 6.직영센터	근무요일 (월화수목금)	중복센터 기관명 (센터장이 2개의 센터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사업목표

- 마약류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2) 사업개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주 관 : 보건복지부(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관)
- 내 용
  -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종류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로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국립 5개소, 민간 16)에서 입원·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 치료비의 환자 부담액은 없으며(전액 무료),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4개소는 자체 예산으로, 그 외 16개 지정의료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 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 II-4-11]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 자의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 설치·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지정

◉ 지정현황

구분 / 지역	병원명	지정병상 수 (2020년 말 기준)	대표번호
합 계	21개 의료기관	300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 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051-507-3000
대 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8	032-571-9111
광 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1
대 전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울 산	마더스 병원	84	052-270-7000
경 기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계요병원	10	031-455-3333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 북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041-850-5700
전 북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 북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 남	국립부곡병원	100	055-536-6440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 주	연강병원	2	064-726-7900

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연 도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심의사항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 판별검사의 기준 - 치료보호기관(국립)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외래·입원·퇴원 치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치료보호기관(지방지정)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외래·입원·퇴원과 치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외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위촉(간사1 별도 임명) - 위 원 장 :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됨(복수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임 기 : 2년(계속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지자체내 유사기능 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5 국회제출) 개정·시행 전까지는 시·도별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참조

라)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 치료보호 기관의 장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및 자의입원 치료보호 동일)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 치료보호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신청자 및 치료보호 의뢰자(가족 혹은 검사)에 그 결과를 통보

마) 치료보호 입원·외래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예, 권익체계를 통한 마약류 중독자 회복 동기 유발 등)
- 치료보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규칙 위반을 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를 치료보호 대상자 및 의뢰자(가족 혹은 검사)에게 통보(예,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 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바)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외래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해당 심의위원회는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치료 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치료보호 연장의 경우에도 최초입원과 같이 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 통보

사) 치료 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기간 종료 시 [별표 제II-4-12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함
-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치료보호 기간이 끝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중도 종료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아)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 치료보호를 적용받고 치료를 마친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혹은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주기적인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을 도모
- 외래에서 필요 시 마약류 복용에 대한 판별검사를 시행
- 마약류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 재발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단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조모임에 참석을 독려함

자)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 치료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호 후 경과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을 실시 함
- 치료보호 대상자의 국가등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등록하게 되며, 치료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음
  - 인적사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심각도 지수, 입원·외래치료 시 참여 성실도 등
  -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치료보호 관련 정보의 활용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하지 않음

차)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권역별 대검찰청 지청(지검)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도 관계부서 등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 회의 주관 : 시·도 담당자

- 치료보호 실무자들에게 치료보호 사업의 취지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모함
- 분기별 회의 개최로 환자 유치 협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 회의 결과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4)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 개인인정보보호법 시행(2017.10.19.)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추진시 관할기관 및 치료보호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건강정보, 인적사항 등 수집·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실적 보고시에도 공문 등에 반드시 비공개 체크하여 제출

◉ 치료보호비 예산 집행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정 의료기관을 독려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배정된 예산 내에서 기소유예 등 검사의 의뢰에 의한 마약류중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내 지역주민이 타 시·도의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
- 반기별 중간 실적을 점검 예정(예산 재배분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목적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지함

  ※ '17년 1월부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치료보호 실적 제출

- 시·도지사는 별표 제 II-4-10호 양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치료보호 실적을 제출

◉ 퇴원 시 안내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마친 자가 단약모임 등 중독재활기관(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가) 배 경

-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3
- 목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치료보호 유치 활성화로 사회복귀 재활 지원

나) 홍보시기 : 연중

다) 내 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안내 및 상담 절차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 지원)
- 자의 치료보호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라) 홍보 대상기관 :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 등

마) 재원 : 5천만원(일반회계)

[별표 제II-4-3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나 _____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으며, 고지된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무 처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에 동의합니다. 나와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준수하겠으며, 만일 위반할 시에는 이에 따른 병원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20____ . _____ . _____.

서약인 _____ (서명), 주치의 _____ (서명)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동의서

치료보호 사업의 개선과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치료보호 대상자로서 본인을 국가에서 등록하여 관리함에 동의합니다.

20____ . _____ . _____.

동의인 _____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4호]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시			
판별검사결과	**약물 투약 행위 관련 (주된 복용 약물만 기록)**		
	투여 약물		
	투약 빈도		
	생화학적 검사 결과 (대표적 결과만 기록)		
	검사 방법	☐ 혈액 ☐ 소변 ☐ 모발 ☐ _____	
	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습관적 사용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영향		
	☐ 내성 및 금단 증상의 존재		
	☐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의 손상		
	☐ 상습적인 마약의 복용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동기 수준		
	☐ 치료동기 높음 ☐ 치료동기 중등도 ☐ 치료동기 낮음		
	마약류 치료보호 프로그램 기왕력 여부 및 당시 참여도		
	☐ 기왕력 없음 ☐ 기왕력 있음 (☐ 자의 ☐ 검사 의뢰)		
	☐ 적극적 참여 ☐ 소극적 참여 ☐ 중도 종료 경력		
종 합 적 의 견			
잠 정 적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5호]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판정 결과	승 인	불승인	보 류
	☐ 외래 ☐ 입원 ☐ 외래 및 입원		
비 고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요망		
잠 정 적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 의료기관장 귀중

○○○ 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6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중도종료 원인			
치 료 보 호 예 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실제 치료보호 기간	( ) 개월 ( ) 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적용 하던 중 상기 적시된 이유로 조기에 치료보호 프로그램 적용을 중도에 종료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 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및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대검찰청 혹은 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법무부)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7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기 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장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장신청 이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에 따른 위 사람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 _____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8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기 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장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심사결과			

승 인	불승인	보 류
☐ 외래 ☐ 입원 ☐ 외래 및 입원		

비고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요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연장 신청에 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증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9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에 따른 위 사람의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 _____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II-4-10호] OO월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시·도)

* 붙임 코드표에 표시된 항목은 번호(숫자)로 기입하고, 엑셀자료로 보고

연번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령	성별	사용방법	복용약물명	복용약물군	치료개시일자	치료종료일자	치료기간	직업	학력	합병증세	치료방식	의뢰기관	재치료여부

※ 입원방식 및 재입원여부 : 입원, 외래, 입원 및 외래로 구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통보 코드표

코드번호	관할기관
0	복지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코드번호	치료보호기관
1	국립정신건강센터
2	서울시립은평병원
3	인천의료원
4	의정부의료원
5	용인정신병원
6	계요병원
7	국립춘천병원
8	국립부곡병원
9	국립나주병원
10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11	국립공주병원
12	부산광역시의료원
13	대구의료원
14	참다남병원
15	청주의료원
16	포항의료원
17	연강병원
18	군산의료원
19	양산병원
20	인천참사랑병원
21	원광대학교병원

코드번호	성별
1	남자
2	여자

코드번호	사용방법
1	주사
2	경구
3	흡입
4	기타

코드번호	학력
1	국졸이하
2	중학교퇴
3	중학교졸
4	고등학교퇴
5	고등학교졸
6	전문대졸
7	전문대퇴
8	대학퇴
9	대학졸업이상

※ 학력: 재학 중인 경우 졸업으로 간주

코드번호	복용약물군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중 메스암페타민
3	향정신성의약품 중 기타
4	대마

코드번호	직업
1	무직
2	농어업
3	사무직, 판매직
4	전문직
5	생산직(노동)
6	자영업
7	주부
8	학생
9	유흥업종사자
10	기타

코드번호	합병증세
1	정신질환
2	HIV양성/AIDS감염
3	간염
4	만성간질환
5	영양장애
6	고혈압
7	위장장애
8	기타
9	없음

코드번호	치료방식
1	자의입원
2	검찰 등 의뢰입원
3	자의외래
4	검찰 등 의뢰외래

코드번호	재치료여부
1	신규입원
2	재입원
3	신규외래
4	재외래

[별표 제II-4-11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목 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한 검사의뢰 치료보호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호 및 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본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을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사(검찰청), 치료보호기관간 환자관리를 위한 행정적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입원의뢰·통보

- **(의뢰·통보)** 검사는 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료보호기관을 정하여 의뢰서와 함께 치료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
  * 검사(검찰청)는 치료의뢰·통보시 치료의뢰·통보서식과 함께 치료보호 동의서 및 서약서 사본을 치료보호기관에 송부
  ※ 치료의뢰·통보 서식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 또는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 **(치료보호기간)** 검사는 치료의뢰시 대상자의 범죄 심각도 및 재활 의지를 고려하여 입원·외래 형태 및 치료보호기간에 대한 의견 제시
  *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권고
  * 치료보호기간은 검사·치료보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자(환자) 인계·인수

- **(대상자 인도)** 원칙적으로 검사(검찰청)측에서 치료보호기관에 인도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대상자 스스로 입원토록 한 경우에는 검사(검찰청)측에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여부 확인

□ 대상자(환자) 문제 발생시 처리

- **(문제행위 통보)**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해당 사실 통보(서면 원칙,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 가능)
  ① 병원을 무단 이탈할 경우
  ② 흉기 등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할 경우
  ③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
  ④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시 양성반응인 경우
  ⑤ 입원 환자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⑥ 외래치료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조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검사는 대상자 지도방문, 유선상담 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18조에 의한 퇴원 및 외래치료 중지 등 치료보호 지원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검사의 퇴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퇴원 및 외래치료 중지 등 치료보호 지원 중단

  * 퇴원 조치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치료경과 등 주기적 보고·확인

- **(치료상태 등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결과, 치료상태, 중도 완치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검사에게 보고 및 통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 제17조에 따름

- 치료보호기관·검찰청간 주기적 보고·확인

  · **(치료보호기관)** 담당검사에게 월1회 대상자에 대한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통보

  ※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 치료보호 경과 통보 서식

  · **(검찰청)** 치료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주된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검찰 의뢰 대상자의 치료현황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확인

- **(조치)** 담당검사는 주기적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결과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고·퇴원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후 통원치료 및 검사·상담

- **(퇴원후 검사·상담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의 퇴원 요청이 있는 경우 퇴원 조치하고 통원치료 또는 마약류 재사용 여부 검사·상담을 권고할 수 있음

[별표 제II-4-12호]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발신 : 치료보호기관의 장(OOO병원장)　수신 : OO지방검찰청(OO검사)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치료보호 집행사항	사용약물			
	의뢰처			
치료보호기간	20 . . . ~ 20 . . .(일)			

확인 내용	확인 결과 ※ 해당란에 체크 또는 의견 제시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약물판별 검사 결과(양성·음성)	☐ 양성 ☐ 음성 ☐ 기타의견( )
면회규정 준수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위험물 반입 여부 (주류, 마약류, 흉기류 등)	☐ 준수 ☐ 위반(반입물 종류 :)
폭력행위 및 집단행동 등 여부	☐ 준수 ☐ 위반(위반내용 :)
병원 무단이탈	☐ 준수 ☐ 위반(횟수 :)
기타 치료에 반한 사항	
※ 참고사항	

4 코로나19 심리지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참고

가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1) 기본체계

국가트라우마센터(운영총괄),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나주·춘천·공주),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

2) 지원 대상자 : 확진자(완치자 포함) 및 가족, 유가족, 격리자, 일반인 등

3) 대응방법 : 심리지원 안내문자 발송, 전화 또는 대면(격리 해제 이후)상담, 정신건강평가, 심리교육,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등

가) 확진자 및 (유)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중앙, 영남권), 국립정신병원(나주·춘천·공주)에서 권역별 대응

나) 격리자 등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응

4) 24시간 핫라인 운영 : 24시간 위기상담 지원

가)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 (02-2204-0001)

나) 격리자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

나 참여기관의 역할

1) 국가트라우마센터

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총괄 운영

- 심리지원 세부 계획 수립 운영 및 통합심리지원단 회의 운영
- 코로나19 현황 모니터링 및 보건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심리지원 대상자(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명단을 해당 권역 국립정신병원에 배분
- 일일 심리지원 실적 취합 및 보고
-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 운영

- 상담 서식 및 각종 자료,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물적·기술적 지원

※ 감염병스트레스 마음돌봄안내서, 심리안정용품, 누리집·카카오채널을 통한 감염병 정신건강관련 정보제공, 심리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마음프로그램 등) 보급 및 교육 등

- 심리지원 관련 홍보 및 언론대응, 고위험군 사례 자문 등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등 심리지원

다) 수도권 내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에 대한 심리지원

2) 권역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가) 해당 지역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심리지원

※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영남권), 국립나주병원(호남권, 제주),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나) 해당 지역 내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심리지원

다) 심리지원 정보제공, 전화 또는 대면(격리 해제 이후) 상담, 정신건강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라) 필요 시 전문의 상담, 고위험군 교육, 치료 프로그램 등 제공

마) 일일 심리지원 실적 보고

3)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보건소는 심리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격리자)에 전달

나)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심리지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

다) 관할 지역 격리자 심리지원 총괄 및 관내 심리지원 홍보

라) 심리지원 정보제공, 전화 또는 대면(격리 해제 이후)상담, 정신건강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마) 필요 시 대국민 심층상담 연계

바) 지속상담 대상자 사례관리

사) 일일 심리지원 실적 보고

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격리자 및 일반인 대상 심리지원 핫라인 운영(1577-0199)

나) 핫라인 상담 중 필요시 대국민 심층상담 연계

다) 해당 지역 지자체 운영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심리지원

라) 지역 재난정신건강서비스 물적·기술적 지원

마) 지역사회 감염 확대 시 인력 지원

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일일 심리지원 실적 취합 및 보고

다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절차

1)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 (관련부처 협조)	→	2) 심리지원 안내	→	3) 전화 또는 방문	→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 확진자, 가족, 유가족 및 격리자 연락처 확인 (해당 보건소에서 3일 이내 명단제공)		·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각 기관 대표번호)		·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해당 권역 국립정신병원 · (격리자 및 일반인): 해당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입		· 고위험군 연계 *의료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 주기적 모니터링 (예시:1,3,6개월) · 필요시 지속상담 또는 연계

1)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

가) 보건소는 심리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3일 이내(업무일 기준) 국가트라우마센터(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격리자)에 전달

※ 대상자 이름, 확진자와의 관계(본인, 확진자, 가족,유가족), 주소지, 연락처, 퇴원일, 격리장소, 격리 시작일 및 해제일 등**(별지 제II-5-1호 서식 참조)**

〈대상자 구분 기준〉

1) 확진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자(완치자 포함)
2) 유가족은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유가족일 경우
   – *(ex1–확진자가 코로나19 유가족일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확진자' 에 해당)*
   – *(ex2–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이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유가족' 에 해당)*
3) 확진자 가족이 격리자, 대응인력인 경우 확진자 가족에 해당
4) 격리자(비확진자)는 격리해제자를 포함
5) 일반인은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실시한 일반인과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구분

※ 보건소에서는 명단제공 시 심리지원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심리지원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확진자 심리지원 안내 문자내용 〉 (보건소용 예시)

감염병 스트레스로부터 심리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귀하의 번호로 심리지원을 위한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각 보건소 연락처(000-000-0000)

2) 심리지원 안내 및 최초 개입

가)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대상자에게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후 개입

※ 필요 시 정신건강관련 정보 및 평가관련 링크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보건소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업무일 기준) 신속히 개입

다) 확진자의 경우 심리지원 최초 안내 후 개입이 안 된 대상자에게 1개월 후 심리지원 재안내 문자 발송 후 개입 시도

〈 심리지원 첫 개입 시 문자내용 〉 (예시)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귀하의 전화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보와 정신건강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전화(각 기관 번호, 예시: 000정신건강복지센터 000-000-0000)
- 정신건강평가
  - 확진자 및 가족 : https://forms.gle/EPXoXghuLv62QZki9 (국가트라우마센터 링크)
  - 격리자 및 일반인: 필요시 해당기관 링크
- 복식호흡, 근육이완 동영상 https://www.nct.go.kr/distMental/crisis/crisis01_4_1.do
  ※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라) 유가족의 경우, 장례일정 등 고려하여 확진자 사망일 기준 7일 이후 개입 권고

마) 유가족에 대해 심리지원 최초 안내 후 연결이 안되는 경우 1~2일 간격으로 2,3차례 추가적으로 개입을 시도하며 명단 제공 기관을 통해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유가족 심리지원 안내 문자내용 〉 (예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유가족에서 심리회복을 위해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번호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 : (각 기관 번호, 예시: 000정신건강복지센터 000-000-0000)

3)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가) 격리기간 중 상담원칙은 전화로 하며 격리 해제 후 안전 확보 후 대면 가능

나) 격리기간 중 불가피한 대면상담 필요시 격리 지침에 따라 보건소 직원과 동행

다) 최초 상담 시 반드시 기록, 필요 시 전문의 상담, 대국민 심층상담 연계

라)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즉시 개입

마) 대상자 상태에 따라 상담 종결, 연계(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바) 필요 시 전문의 상담, 대국민 심층상담 연계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대국민 심층상담 운영방안」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심층 심리지원을 위해 중수본 심리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심층상담

□ 의뢰대상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 국민 누구나

□ 의뢰 및 신청방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통한 의뢰 · 연계
- 코로나19 대응인력 직접 신청
-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사회복지시설·임시생활시설)** 해당기관 담당자의 위기평가(CGI-S)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심리불안 판단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자우편(E-mail)으로 상담 의뢰
  * 위기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심리불안 판단 시 의뢰 가능
- **(코로나19 대응인력)** 전자우편(E-mail) 직접 신청
- **(국민 누구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직접 신청

※ 전지우면(E-mail) 작성 시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상담을 희망하는 이유 작성

〈 고위험군 평가 시 참고 기준 및 사례 〉

○ 참고기준
- 전반적 임상 인상척도(CGI-S) 4~5점

* 상담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심각도를 1~7단계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고위험군 선정사례
-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 보면 답답하고, '내가 감염이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함. 근무 중에도 두근거림,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잦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

○ 대상자 부적합 사례
- 기존의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가 있어 증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36)로 문의

□ 심층상담 의뢰절차**(별지 제Ⅱ-5-4호 참조)**

① 상담을 통해 대상선정 기준 해당여부 확인
② 해당 시 대상자에게 전문가 심층상담을 안내하고 의뢰 동의 확인
③ 동의한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의뢰서 발송
- 오전 10시까지 및 오후 4시까지 의뢰서 발송(1일 2회)
- 의뢰서 수신 이메일: kinotopia100@hanmail.net

□ 심층상담 종료

민간 전문가의 상담은 최대 3회 제공되며, 종료 후 지속상담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진행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가) 재난 정신건강 평가 척도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나) 대상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해당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대국민 심층상담으로 연계

다) CGI-S 평가 기준 및 기준에 따른 개입

CGI-S 1점	CGI-S 2~3점	CGI-S 4~5점	CGI-S 6~7점
괜찮다	조금 괜찮다	조금 안좋다	아주 안좋다
· 생활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 · 최소 2주간 전화상담 진행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 증상이 다소 의심되거나 약간 나타남 ·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 요청 시 대국민 심층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원 연계	· 분명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이 나타남 · 지속상담 유지 · 대상자 동의 시 지역사회 정신건강지원서비스, 대국민 심층상담 혹은 병원 연계	·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지속적인 자살사고를 호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지속관리 필요시 국가트라우마센터, 해당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 CGI-S 척도: 상담자가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내용
① 정상	지난 일주일간 큰 어려움 없음
② 정상~경도	감지하기 어렵거나 병리적이라고 의심되는 정도
③ 경도	경미하지만 분명한 증상이 있으며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④ 경도~중증도	약물치료를 고려할만한 명백한 증상이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⑤ 중증도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이 명백하고 고통감을 느끼는 경우
⑥ 심함	증상이 개인의 행동과 기능에 빈번히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⑦ 극심함	증상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가) 대상자별 심리지원 종결 기준

-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종결(안정, 연계, 거부), 연락안됨으로 구분

구분	기준 내용
안정 종결	• CGI 1(괜찮다): 최초 2주간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 CGI 2~3(조금 괜찮다):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연계 종결	• CGI 1~3(괜찮다~조금 괜찮다): 본인이 심리상담 등 관리 요청시 • CGI 4이상(조금 안좋다~아주 안좋다): 대상자 동의 시 지역사회 심리지원 서비스 혹은 병원 연계
거부 종결	•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최소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최초 상담연결 이후 3회 이상 연결이 어려운 경우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후 종료
연락 안됨	• 심리지원 대상자이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단제공 기관에 연락처 재확인, 변동 없을 시 안내 문자 발송 후 종료

- 지속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할 경우 센터 담당자와 동반 · 상담 권고
- 연계 필요시 의뢰서 작성하여 연계 기관으로 연계
- 종결 시 추가 모니터링 동의 여부 확인 후 종결문자 발송

〈 종결 시 문자내용 〉 (예시)

귀하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향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문의 : (각 기관 번호, 예시: 000정신건강복지센터 000-000-0000)

나) 사후 모니터링

- 상담 종결, 연계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예시: 1,3,6개월) 통해 대상자 상태 확인
- 모니터링 중 대상자의 지속적 또는 새로 발생한 정신건강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 및 연계를 통한 적극적 개입

라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서비스 실적관리

1) 실적 보고 체계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총괄 취합 및 복지부 일일 보고

나) 보고 경로

-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국립정신병원 → 국가트라우마센터
- 격리자 등: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가트라우마센터

다) 보고 일시

- 국립정신병원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취합된 실적을 매일 오후 12시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메일*로 제출(별지 제Ⅱ-5-2호, 제Ⅱ-5-3호 참조)

※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메일: gimugimu@korea.kr, tnsdlf88@korea.kr

※ 실적 기준: 전일 09시부터 당일 09시까지
문의 전화: 국가트라우마센터 위기대응팀(02-2204-1435~6)

라) 보고 내용

- 일일 상담 투입 인력, 상담 및 정보제공, 연계 등 건수 등 보고

2) 실시간 의사소통 체계

가) SNS(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의사소통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진행사항 논의

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1) 심리지원 물품 안내

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안내서(13개 다국어), 감염병 경험자 마음돌봄 안내서, 마음건강 안내서, 현장대응지침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가이드 북(애도편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소진관리 안내서, 심리안정용품 등

※ 심리지원 확대 각 기관의 물품 요청이 많아질 경우 지원이 지연 또는 축소 될 수 있음

2) 심리지원 물품 요청 절차

가)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물품요청 접수 및 절차 안내

- 국가트라우마사업부 홈페이지(https://nct.go.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자료 및 신청안내' 확인(문의: 02-2204-1436)
- 물품 요청 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유선문의 후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요청서' 작성하여 공문 발송

요청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요청서' 작성 •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지원 공문 요청	⇆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요청서' 접수 • 회신 또는 요청물품(자료) 지원

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자 및 자료 이용 시 저작권 여부 검토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생산된 자료 이용 시 '자유이용허락동의서' 제출
- 생산된 자료(동영상) 및 책자의 척도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료에만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자에게 승인 받았으므로 타 기관의 사용시 저작권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승인을 득해야 함

[별지 제 I-5-1호]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

연번	의뢰 접수 일자	의뢰기관 (기관, 핫라인)	대상자구분 (확진자, 확진자가족, 유가족, 격리자 등)	가구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거주지역 (시도)	거주지역 (시·군·구)	치료 기관 또는 격리 장소	회원여부 (격리해제 여부) 및 일자	질병 확진번호 또는 지자체 관리번호	담당기관 배정	의뢰 담당자	의뢰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지정일	비고	선개입 여부
예시	20.1.1	00보건소	확진자	홍길동 가족	홍길동	남	40	1982.5.1	010-0000-0000	한국	서울시	서울구	00병원	미회원	1234	국가트라우마센터	김주임	02-000-0000	-	-	선개입 요청
예시	20.1.1	00보건소	격리자	-	홍길동	남	40	1982.5.1	010-0000-0000	한국	서울시	서울구	자택	격리해제 (21.2.00)	00구 -2346	00센터	허팀장	02-000-0000	-	-	
1																					
2																					
3																					
4																					
5																					
6																					
7																					
8																					

◆ 대상자 구분 안내

1) **확진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진단을 받은 자**(완치자 포함)**

2) **유가족**은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유가족**일 경우

- *(ex1-**확진자**가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확진자**'에 해당)*
- *(ex2-**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이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유가족**'에 해당)*

3) **확진자 가족**이 격리자, 대응인력인 경우 **확진자 가족**에 허당

4) 격리자**(비확진자)**는 **격리해제자를 포함**

[별지 제II-5-2호]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안내 실적(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용)

보고일시 : 2020.12.31.(목) *전일 09:00~당일 09:00시(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실적*

제출기관 : 국가트라우마센터

실적기준일시 : 2020.12.31.(09시 기준)

(단위:명)

구분		상담[2]			정보제공[3]				연계[4]				상담인력			
지역	대상자[1]	소계	전화	대면	소계	문자안내	리플릿 등 인쇄물	기타(기관제작물품 등)	소계	정신의료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타지역)	소계	전문의	전문요원	기타
○○ 병원	**소계**															
	확진자															
	유가족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 대응인력															

〈일일 특이사항〉

1) **확진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진단을 받은자

***유가족**은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유가족일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

*(ex1-**확진자**가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확진자'** 실적에 해당)*

*(ex2-**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이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유가족'** 실적에 해당)*

* **확진자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확진자 가족 실적에 해당

격리자(비확진자)는 격리해제자를 포함.

일반인은 코로나19 관련 일반인상담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상담으로 대상자 구분

2) **상담실적**은 **연인원 기준**으로 작성,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실적**은 '일일 특이사항'에 분리하여 별도 기입

3) **정보제공**은 **문자안내**, 리플릿 등 **인쇄물**(안내지, 소책자 등), **기타**(기관물품,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4) **연계실적**은 치료를 위한 연계 실적만 기입

5) **상담인력**은 **실인원**으로 기입

※ 실적제출 : gimugimu@korea.kr , tnsdlf88@korea.kr

- 변경된 실적양식은 2021.3.2.(화) 제출 실적부터 반영하여 보고.

[별지 제II-5-3호]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안내 실적(광역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용)

기 관 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고일시 : 2020.12.31.(목) *전일 09:00~당일 09:00시(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실적*

요청사항 : ① 전화상담 실적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1577-0199 상담건수도 포함

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실적 제출

(단위:명)

구분		상담[2]			정보제공[3]				연계[4]				상담인력			
지역	대상자[1]	소계	전화	대면	소계	문자 안내	리플릿 등 안내물	기타 (기관 제작물품 등)	소계	정신의료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타지역)	소계	전문의	전문요원	기타
시·도명	**총계**															
	확진자															
	유가족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명	확진자															
	유가족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명	확진자															
	유가족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일일 특이사항〉

1) **확진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진단을 받은자
***유가족**은 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유가족일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
*(ex1-**확진자**가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확진자'** 실적에 해당)*
*(ex2-**확진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대응인력**이 코로나19 유가족이 될 경우 → 상위 대상자 분류인 **'유가족'** 실적에 해당)*
격리자(비확진자)는 격리해제자를 포함함.
일반인은 코로나19 관련 일반인상담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상담으로 대상자 구분
2) **상담실적**은 **연인원 기준**으로 작성,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1577-0199**의 상담건수 포함
3) **정보제공**은 **문자안내**, 리플릿 등 **인쇄물**(안내지, 소책자 등), **기타**(기관물품,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4) **연계실적**은 치료를 위한 연계 실적만 기입
5) **상담인력**은 **실인원**으로 기입

〈보고경로〉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실적 발생 시 포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가트라우마센터
- 변경된 실적 양식은 2021. 3. 2.(화) 제출 실적부터 반영하여 보고.

〈보고방법〉
- 전일 09:00~당일 09:00시(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적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체 실적 포함, 일괄취합하여 오전 12시 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실적관련 대표 2개 메일(gimugimu@korea.kr , tnsdlf88@korea.kr) 로 모두 발송

* 실적 내용, 양식 등 문의사항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1435~6)로 연락

[별지 제II-5-4호]

코로나19 대국민 심층상담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임시생활시설)

의 뢰 일 시	년 월 일 시	의뢰 기관명 (지역)	*OO시 정신건강복지센터* *OO시 사회복지시설명*
상담자	*상담을 진행하여 민간전문가에게 대상자에 대하여 설명 가능한자*	연락처	*상담을 진행하여 민간전문가에게 대상자에 대하여 설명 가능한자*
대상자 성명		성별/연령	
연락처(휴대폰)	*대상자가 연락을 받길 희망하는 연락처를 기재*		
치 료 력	☐ 신체적 치료 ☐ 정신과 치료		
	치료유무 : ☐ 유 ☐ 무 진단명 :		
☐ CGI-S : 점			
의뢰 사유 및 의견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 정신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정보 → 법인/시설/단체에 게재)”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함

가 사업 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나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2) 시설의 종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검색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종류		사 업
1.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가.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3) 시설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 참조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중 "거실"은 입소·이용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침실 및 응접실이 이에 해당하며, 복도·통로 및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함.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무실, 상담실로사용하는 공간과 주방공간(조리/식사)은 거실면적에 포함됨
* 시설장 1명이 동일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에 공동생활가정을 2개소 이상 설치·신고하여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 공동생활가정에서 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및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일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 2개 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공동생활가정 1개소로 운영할 수 있음
* '15.11.19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주거제공시설은 '17.12.31.까지 개정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단, 수용인원 및 종사자의 수는 종전 규정을 따름)

개정이전 〈주거제공시설〉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세부 유형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마. 적당한 냉방장치·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출 것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사.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확보할 것 아. 제2호에 따른 생활시설,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 제4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6호에 따른 종합시설이 남·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할 것
2. 생활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복도·통로,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한다)의 면적(이하 이 표에서 "거실면적"이라 한다)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2) 침실 3) 목욕실 4) 재활훈련실 5)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3. 재활훈련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재활훈련실(면적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다) 집단활동실
	나. 공동생활가정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나) 침실(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 유형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다) 목욕실 라) 세탁장 및 건조장 마)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원: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
	다. 지역사회 전환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나) 침실 다) 목욕실 라) 재활훈련실 마)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바) 세탁장 및 건조장 2) 정원: 입소정원 25명 이하
	라. 직업재활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직업재활훈련실(면적이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식당 및 조리실은 제외한다) 나) 휴게실 다) 프로그램실(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중독자 재활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2) 침실 3) 목욕실 4)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5)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구분	세부 유형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5. 생산품 판매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1) 판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6. 종합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1) 강당 또는 회의실 2)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정신재활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비고 :

1. 정신재활시설(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등을 추가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위 표 제5호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설치자 및 신고 구비서류

◉ 설치·운영자(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1.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시설 소재지 / 3.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 4.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 5.정신재활시설의 종류)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설치신고서 1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설치신고확인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안전관리

- 시설장은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동절기·해빙기에는 특히 안전점검을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히 하여야 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 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 폐쇄된 생활관의 경우는 동별로 ㅇ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생활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설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단, 실제상황을 전제한 화재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 게재」에 따라 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1) 운영목표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운영방침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입소·이용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분포, 지역내 정신질환자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신보건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 인력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 회복된 정신질환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함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입소·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 참조
  ※ 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른다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가)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함
- 지역의 수요 및 이용률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원함

나) 입소·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아래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아래 표 참조)"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주 52시간제 시행* 및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활시설 교대인력 및 유일근로수당 확보 등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종사자 50–299인 시설('20.1월~), 5–49인 시설('21.7월~)
  ** 종사자 30–299인 시설(21.1월~), 5–29인 시설('22.1월~)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교대 근무자 및 조리원과 일반종사자 상호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특수근무수당 지급 : 사무국장(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4만원 지급
  - 사무국장은 법정인력은 아니나,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명할 수 있음(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임명된 사무국장은 퇴직시까지 계속 인정)
    •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종사자
    • 시설규모 :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 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 시) 종사자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

공통사항

- 입소(이용) 현원은 입소(이용) 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입소현원수
  - 전년도 연평균 입소현원수(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말 입소현원수를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값=A)를 계산하여 이를 종사자 지원기준이 되는 입소현원수(A)로 적용
    → 연평균 입소현원수 = [(1월말 입소현원수 + 2월말 입소현원수 + … + 11월말 입소 현원수 + 12월말 입소현원수)/12]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입원일수(1개월간 2회이상 입원 시 각각의 입원일수를 더한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는 매월말 입소현원수를 계산할 때 0.5인으로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외박일수(1개월간 2회이상 외박 시 각각의 외박일수를 더한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매월말 입소현원수를 계산할 때 0.5인으로 적용
  - 전년도 입소현원수(A)를 기준으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 동일한 입소현원수(A)를 적용
  - 전년도 연평균 입소현원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지역사회전환시설의 단기 및 일시보호 이용자는 매월말 입소현원 산정시 1인으로 적용
-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용현원수
  - 전년도 연평균 이용현원수(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말 이용현원수를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값=A)를 계산하여 이를 종사자 지원기준이 되는 이용현원수(A)로 적용
    → 연평균 이용현원수 = [(1월말 이용현원수 + 2월말 이용현원수 + … + 11월말 이용 현원수 + 12월말 이용현원수)/12]
  - 전년도 이용현원수(A)를 기준으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 지원대상 종사자 수 결정
  - 전년도 연평균 이용현원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연평균 입소(이용)현원수 산식에 따른 계산값이 소수인 경우 소숫점이하 첫 번째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연평균 입소(이용)현원수로 적용함(예:150.6 → 151명, 150.4명 → 151명)
-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여건이 열악하여 아래 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에 한하여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함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기존의 주거제공시설이 결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주거제공시설에 대한 인력지원은 입소현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거제공시설 개별 시설 인력지원기준(시설장 1명,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등)을 적용함

〈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

구분	세부 유형	지원 기준
가. 생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38명 ~ 50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나. 재활 훈련 시설	1) 주간 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6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 이하생략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9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20명 ~ 30명 :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31명 ~ 50명 :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51명 ~ 70명 :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71명 ~ 90명 : 재활활동요원 4명 이하생략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10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보조원 2명 다. 이용현원 76명 ~ 105명 : 재활활동보조원 3명 이하생략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2) 공동 생활가정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
	3) 지역 사회 전환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38명 ~ 50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다)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구분	세부 유형	지원 기준
	4) 직업 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6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15명 ~ 22명 :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 ~ 37명 :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 ~ 52명 :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 ~ 67명 : 재활활동요원 4명 이하생략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보조원 2명 이하생략
	5)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20명 ~ 30명 :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31명 ~ 50명 :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51명 ~ 70명 :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71명 ~ 90명 : 재활활동요원 4명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보조원 2명 다. 이용현원 76명 ~ 105명 : 재활활동보조원 3명
다.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38명 ~ 50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구분	세부 유형	지원 기준
마.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6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이용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 2) 이용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 3) 이용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 4) 이용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 이하 생략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입소현원이 6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입소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 2) 입소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 3) 입소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 4) 입소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 이하 생략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이용현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2)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이하 생략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입소현원이 3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입소현원 10명 ~ 15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2) 입소현원 16명 ~ 25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3) 입소현원 26명 ~ 35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이하 생략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52시간제가 시행관련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교대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인력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2)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 지급 권고기준

- 최우수등급(A) 시설 : 1인당 30,000원/월
- 우수등급(B) 시설 : 1인당 20,000원/월

◉ 지급기한 : 다음 평가에 의한 우수시설 결정시까지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용기준 등

-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함
  - 단, 시·도지사는 지출항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성격(경상보조)"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항목'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음
    ※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정신재활시설의 수급자 급여 지급액은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정신재활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시설장은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서를 비치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금액 권고기준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지원 금액 기준 3% 인상(100원 단위 절사)

(단위 : 원/1인)

구 분	2019	2020	2021
입소자	949,000	977,000	1,006,000
이용자	649,000	668,000	688,000
프로그램비	311,000	320,000	329,000

  - 매월 입소(이용)현원 1인당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전월말 현재 입소(이용)현원수를 기준으로 함 (지역사회전환시설의 단기 및 일시보호 이용자는 전월말 입소현원 산정시 1인으로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입원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입원 시 각각의 입원일수를 더한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는 전월말 현재 입소 현원수에서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지원(공동생활가정에도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외박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외박 시 각각의 외박일수를 더한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전월말 현재 입소현원수에서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지원(공동생활가정에도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4) 프로그램 운영비

-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이용인원 산정기준

-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등록회원 중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을 운영일수(토, 일·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 : 등록회원에 대해 면담·방문·훈련·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외부 재활취업자 및 방문관리 대상자 포함
  - 시설의 운영일수 :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일수 조정 가능

-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재활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이 용 유 형	이용인원 가중치	관 련 기 록
• 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부
• 취업장 방문	취업인원	취업회원 사례, 취업장현황, 취업회원현황, 방문 및 상담기록
• 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 주말, 공휴일, 저녁시간 이용	1	프로그램기록
• 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기록
• 가족의 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의해 내소이용, 방문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SNS, 영상통화, 온라인 교육, 전화상담 등 원격통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주) 1) 취업인원 : 시설에 등록중인 회원이 기관외부의 취업장에 취업하여 주 1회 이상 취업장 방문이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매일 이용하는 이용인원으로 인정
* 취업인원에 대한 이용인원 인정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외부의 임시취업, 지지취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국한됨. 시설 내부의 보호작업은 일일 이용인원으로만 인정하며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담당자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 회원의 자발적인 독립취업의 경우는 이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가정방문 : 1인을 이용인원으로 산정

3) 주말, 공휴일 등 이상적인 이용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을 1인으로 간주

4) 미등록회원의 내소 이용 : 정신질환자등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시설, 보건소 정신보건 프로그램 등)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5) 타 시설(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원(소)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에는 포함시킬 수 없음
* 타 시설이라 함은 입원 및 입소시설로 24시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함

6) 가족의 내소이용 : 등록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회원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내소상담에 참여한 경우 가족 1인을 일일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7) 시설이용등록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방문안내 및 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이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8)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시설은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함

2) 인력관리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인력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참고
- ’16.1.1일 당시 정신재활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정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보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17.1.1일까지 전문요원의 수 기준을 갖추어야 함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 수
가. 생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나. 재활훈련시설	1) 주간재활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2) 공동생활가정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
	3) 지역사회전환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다)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직업재활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 수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마.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비고 :

1. 지역적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수 중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이어야 한다.
3.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자격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 그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에서 스스로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나) 호봉관리

●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단,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중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자격(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8)을 취득한 날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10할을 인정하고, 해당 자격 취득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7할을 인정함(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사화복지시설 근무경력은 계속 인정)
2.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10할(100%) 인정
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단, 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②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④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 6. 14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2002. 6. 15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경력

4)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 기 타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초과비용은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지원)
- 소속법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 가능(증액분에 대한 사회보험 등은 시설운영자나 법인에서 부담)

다) 종사자 근무기준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참조

◉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국고보조인원 이상의 시설종사자를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등) 참조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호봉	2,614,000	2,343,700	2,138,300	2,009,900	1,910,300	1,846,800	1,822,500
2호봉	2,708,400	2,424,100	2,208,800	2,073,500	1,940,600	1,890,900	1,848,100
3호봉	2,811,400	2,517,400	2,280,900	2,145,000	1,991,500	1,935,800	1,891,600
4호봉	2,918,700	2,613,200	2,378,500	2,217,000	2,051,200	1,979,400	1,933,900
5호봉	3,047,600	2,716,300	2,481,900	2,290,300	2,113,700	2,021,000	1,975,800
6호봉	3,176,500	2,832,100	2,588,900	2,383,500	2,176,400	2,074,600	2,028,200
7호봉	3,305,400	2,948,100	2,700,700	2,478,800	2,266,500	2,169,100	2,069,800
8호봉	3,435,500	3,072,800	2,813,600	2,574,800	2,360,700	2,250,000	2,132,800
9호봉	3,566,600	3,201,700	2,929,500	2,675,600	2,455,000	2,299,900	2,208,800
10호봉	3,691,200	3,329,300	3,041,100	2,769,400	2,545,000	2,383,300	2,303,300
11호봉	3,815,700	3,448,500	3,144,200	2,863,500	2,628,400	2,467,800	2,361,700
12호봉	3,938,100	3,552,400	3,237,300	2,942,500	2,696,500	2,544,600	2,428,700
13호봉	4,043,200	3,643,600	3,318,700	3,018,400	2,762,700	2,617,400	2,499,300
14호봉	4,129,100	3,734,400	3,397,800	3,091,000	2,827,800	2,678,000	2,555,600
15호봉	4,215,700	3,825,500	3,473,500	3,160,500	2,889,400	2,724,500	2,601,100
16호봉	4,297,700	3,906,800	3,545,000	3,227,400	2,953,400	2,777,600	2,652,000
17호봉	4,374,400	3,977,200	3,613,300	3,290,300	3,017,000	2,829,500	2,703,000
18호봉	4,447,100	4,047,900	3,679,400	3,351,000	3,077,700	2,881,600	2,779,900
19호봉	4,515,000	4,110,800	3,737,900	3,407,200	3,132,200	2,925,500	2,832,900
20호봉	4,575,800	4,171,600	3,796,400	3,462,200	3,185,300	2,967,900	2,877,600
21호봉	4,635,400	4,231,300	3,850,400	3,513,200	3,233,100	3,018,600	2,927,900
22호봉	4,692,800	4,286,200	3,902,700	3,561,600	3,281,300	3,076,000	2,985,700
23호봉	4,746,200	4,338,600	3,952,300	3,608,000	3,325,300	3,135,600	3,042,800
24호봉	4,796,700	4,387,400	3,996,100	3,652,500	3,368,800	3,190,800	3,099,100
25호봉	4,845,800	4,436,200	4,039,600	3,695,200	3,410,000	3,241,800	3,155,800
26호봉	4,886,100	4,478,600	4,082,000	3,737,000	3,447,900	3,286,200	3,208,100
27호봉	4,927,200	4,518,800	4,117,800	3,771,100	3,480,400	3,330,100	3,251,900
28호봉	4,963,000	4,554,500	4,149,300	3,802,100	3,507,700	3,360,300	3,284,600
29호봉	4,990,400	4,584,800	4,178,700	3,830,800	3,533,900	3,394,100	3,318,600
30호봉	5,013,500	4,616,600	4,206,100	3,856,200	3,558,500	3,415,000	3,348,800
31호봉		4,636,500	4,233,200	3,885,700	3,587,000	3,450,100	3,372,100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899,100원

*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등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 : 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한 종사자	시간외 근무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직위	정신재활시설의 직위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영양사, 재활활동요원
생활지도원	재활활동보조원, 생산품판매시설의 사무원
관리직	생산품판매시설의 관리인
기능직	조리원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수준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권고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보조금 집행을 안내하는 최소지급기준으로 각 시설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통상임금등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

바 회원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 정신재활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의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개인별 이용시간표 또는 출·퇴근 기록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보존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2020.4.24. 시행)

  * 3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소기간은 5년(기본계약 2년+연장 3년)임

-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무연고자가 3회(기본계약2년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한 경우)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경우, 매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받아야 함

- 입소자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는 주간에 다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또는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함
  - 단,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를 아니할 수 있음
    - ☞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 보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한 기록 첨부)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방치·유기하는 등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한 관계서류 첨부)
- 기타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상황 등을 명시한 문서 등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설 운영자가 해당 입소자(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③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④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⑤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한 경우
⑥ 본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의료기관 장기입원 또는 장기외박으로 입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소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종사자 인권보호 및 폭력예방을 하여야 함

입소·이용자 준수사항

- 입소·이용자는 종사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입소·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입소·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종사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치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입소·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소·이용 금지
- 직업재활을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이용자 관리 금지
- 시설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이 결합된 시설)의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입소자 중심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기회의(연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입소(이용)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이용)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이용)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이용)자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이용)자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이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이용자)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본 안내 Ⅳ.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중 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의 가.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입소·이용자는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훈련과 휴식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게 재발의 징후,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가족 또는 정신과전문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정기적으로 입소·이용자의 외래치료여부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입소·이용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활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일지, 업무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을 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급식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의 식사 조리를 금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수돗물외의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 후 사용하여야 함
-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사 행정사항

1) 회계 및 물품관리

-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이용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장은 예산(보조금, 입소료 수입금, 후원금 등)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장은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시 회계프로그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강화하여야 함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시설별로 정해진 비용수납 한도액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함(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으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백원단위 금액은 절사)
    * '21년도 입소비용한도액 : 월 433,000원

※ 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평균 월급여지급액 이상)의 입소료를 책정할 것을 권고함. 입소(이용)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다른 입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소(이용)료보다 입소(이용)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평균 월급여지급액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

-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입소·이용토록 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 중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입소시키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음

-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정신재활시설(입소생활시설)은 유료 입소자로터 징수한 입소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단, 입소료 장기체납으로 입소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체납 유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료입소료 중 '2021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는 시설 수급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함(시설 후원금과 후원물품 포함함)
  - 유료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2021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 분	월평균 급여액
전체평균	256,267원
30인 미만 시설	268,052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43,338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33,953원
300인 이상 시설	233,935원

- 보장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 정신재활시설의 유료 입소(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입소(이용)비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입소(이용)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후원금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도록 집행해야 함

※ 법인 산하의 시설이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4) 문서관리

◉ 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부 책(장부) 명	보관·비치기간
• 시설 설치신고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 입소·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투약, 생활·작업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 정신재활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년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	5년
• 시설 운영일지	3년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3년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제Ⅲ-2-4호] 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 입소·이용,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이용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관리 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 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 할 수 있음

7) 보 고

가)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보고

- 정신재활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를 매 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7일까지 [별지 제 Ⅲ-1-1호] 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 Ⅲ-1-1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미보조시설 현황 포함

나) 지도·감독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 Ⅲ-1-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됨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본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50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민법' 검색 관련 조문 참조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정신건강복지법」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시행일:2021.6.30.]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자치단체에 귀속

[별지서식 제Ⅲ-1-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Ⅰ 시설 및 결산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면적현황 (단위: ㎡)			시설현황							종사자 현황		____년 12월말 기준,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설치운영자								예산						결산							
			①시설 종류	비고 (종합시설의 경우 위 시설종류 번호로 결합형태 작성) 예)1+6	대지면적	건물면적	②침실면적	주소지	종류 (지자체,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등)	비고 (법인명등)	시설장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정원	현원	계	③보조금	④후원금	⑤법인지원금	기타잡수입	입소자 수탁료	계	인건비	⑥관리운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생계비	⑦프로그램비	기타

1. 시설종류: ①생활시설, ②주간재활시설, ③공동생활가정, ④지역사회전환시설, ⑤직업재활시설, ⑥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⑦중독자재활시설, ⑧생산품판매시설, ⑨종합시설 중 선택
2. 침실면적: 입소자가 직접 생활하는 공간(침실)을 의미하며 사무실, 거실, 주방, 공동사용공간은 제외
3. 보조금: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정신보건시설 확충'에 의한 기능보강비는 제외)
4. 후원금: 시설모금 후원금 + 법인모금 후원금
5. 법인지원금: 후원금 외의 재원을 통한 법인지원금액
6.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회의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7.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출판홍보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

2 종사자 현황

시군구	시설종류①	직원(역할)	성별 1.남성 2.여성	만나이(세)	직급 1.시설장 2.사무국장 3.전문요원 4.재활활동요원 5.재활활동보조원 6.기타	근무형태 1.상근 2.비상근	근무형태 1.주1회근무 2.주2회근무 3.주3회근무 4.주4회근무 5.주5회근무	직역 1.정신과전문의 2.간호 3.사회복지 4.임상심리 5.작업치료 6.기타	전문요원 1.유 2.무	호봉(__년 12월기준) 실제 호봉	호봉(__년 12월기준) 연장 된 호봉	인건비 적용기준 1.정신건강사업안내 2.자체 별도지침(안내) 3.기타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 경력(~__.12.31) 전문요원 자격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증진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 (개월)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 경력(~__.12.31) 전문요원 자격 취득이후 정신건강 증진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총 경력 (개월)	현재 기관 근속년수 (입사~__.12.31)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종사자 근무상태 1.재직 정규인력 2.재직 대체인력 3.육아휴직 4.퇴직자 5.기타

1. 시설종류: ①생활시설, ②주간재활시설, ③공동생활가정, ④지역사회전환시설, ⑤직업재활시설, ⑥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⑦중독자재활시설, ⑧생산품판매시설, ⑨종합시설 중 선택

3 입소자 현황

시도	시군구	시설명	⑤시설종류	정원	현원	성별			연고 여부					의료보장종류					장애등록현황(중복체크 가능) ① 체크 후 ②체크							연령별 분류										
						소계	남	여	소계	연고자		무연고자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10세 미만	10~15세	15세~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미상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소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없음	소계	지적장애	기타(지체, 시각, 청각 등)	없음										

질환별 분포(만 19세 이상 성인)																					질환별 분포(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계	중증 정신질환자						중독질환					우울증	신경증	정신지체	뇌전증	자살	기타	이중진단				소계	발달문제	ADHD 행동문제	우울 등 정서문제	물질남용	인터넷/게임중독	식사문제	정신병적문제	기타
	소계	조현병	정신병적장애	조증삽화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삽화, 반복성우울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병적도박	인터넷/게임중독	기타중독질환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기타								

이용기간별 분류									월별 일평균 입소자수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④ 이용자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① 시설종류	
정원	
등록인원	
이용인원	
성별	소계
	남
	여
연고 여부	소계
	연고자 유료
	연고자 무료
	무연고자 유료
	무연고자 무료
의료보장종류	소계
	건강보험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
	기타
장애등록현황(중복체크 가능) ① 체크 후 ②체크	소계
정신장애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 장애 없음
그 외 장애②	소계
	지적 장애
	기타 (지체, 시각, 청각 등)
	없음

연령별 분류	질환별 분포(만 19세 이상 성인)			질환별 분포(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계	중증 정신질환자	중독질환	이중진단	소계
소계					
10세 미만					
10 ~ 14세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4세					
65세 이상					
연령미상					
소계		소계	알코올사용장애	조현병	수면장애
		조현병	약물사용장애	조현정동장애	불안장애
		정신병적장애	정신병적도취	양극성정동장애	AD/HD
		조현정동장애	인터넷/게임중독	우울증	우울증상
		양극성정동장애	기타중독질환	기타	섭식문제
		우울증상, 환각, 복합우울장애		자살	소계
				뇌전증	정신병적문제
				정신지체	인터넷/게임중독
				신경증	적사문제
				우울증	약물남용
				소계	우울증상
				기타	정신병적문제

직업별 분포										이용기간별 분류									월별 일평균 이용자수											
소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업직	기능직	제조업	단순노무	기타직종	무직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인권교육 현황

일반현황					인권교육 현황					
시도	시군구	①시설종류	설치운영자 (지자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시설명	정신재활시설의 장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합계	
					교육대상자 (A)	교육참석자 (a)	교육대상자 (B)	교육참석자 (b)	교육대상자 (C)=(A+B)	교육참석자 (c)=(a+b)

[별지 제Ⅲ-1-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입·퇴소 관리	환자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물 관리	장부 관리	개방 공개	기타	계	허가 취소	사업 정지	개선 (시정) 명령	보조금 환수	고발	기타

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등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입소·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회재활활동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 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 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직업재활 활동 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소·이용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며 관찰·지도를 행하고, 지원 내용을 기록·보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재활시설을 개방하고, 입소·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함

자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 사업목적

-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대·노후화 개선, 장비 보강을 통해 정신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조기 사회복귀 지원
-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입소 정신질환자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기여

가) 지원대상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 법정시설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국고지원 불가

나) 2021년 지원 단가: 국비(50%), 지방비(50%)

- 1,923,000원/㎡(신축, 증·개축)
- 698,000원/㎡(개보수)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변동 가능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 지원불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철거비 지원 가능. 단, 지자체 등에서 철거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토지 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다)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가) 공통사항

-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 Ⅲ-1-3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작성·제출
  - 동 신청서에 건축예정 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별지 제 Ⅲ-1-4호]서식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 Ⅲ-1-5호]서식 첨부 및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별지 제 III-1-6호]서식을 첨부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시켜 교부신청서 작성 가능
- 시설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첨부
  -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구조·면적 및 용도, 사업비(설계비 포함 가능)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기술직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 첨부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할 것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공사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증·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 시·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의 사업이 부실 또는 신설 부지 미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단, 사업기간 변경사유 발생 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승인이 완료된 경우 동 이월 승인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가) 시설 신축·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 건축예정지, 사업내용 및 필요성,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규모(사업량), 사업비 및 산출내용,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신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다) 설계 및 공사 집행

①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기능보강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시설의 신축 등 단가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별지 제 Ⅲ-1-9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의 안전성 및 긴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3. 31.까지 [별지 제 Ⅲ-1-8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작성·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부기등기)를 해야함('16.4월 이후 교부보조금부터 적용)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사용 가능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국가청렴위원회 권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 예시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증·개축 : 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심의 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도지사는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기능보강공사 기간 동안 생활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소방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내진보강 등)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최우선지원

* 직통계단 : 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참(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배연창 :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별지 제 Ⅲ-1-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교부 신청자 (시·도지사)			
보조사업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개요			
시 설 명		시설 대표자	
시설 소재지			
입소자 현황	정원 ( )명, 현원 ( )명	이용자 현황	정원 ( )명, 현원 (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착수 예정일			
보조사업 완료 예정일			

보조사업의 경비(단위: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 방 비	시설 자부담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첨부 :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부.
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별지 제 Ⅲ-1-4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정신보건시설 현황

1. 기본현황

시 설 명		시설 대표자	
시설 규모	부지 (　　)㎡, 연면적 (　　)㎡		
시설 주소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입소자 현황	정원 (　)명, 현원 (　)명	이용자 현황	정원 (　)명, 현원 (　)명

2. 건축물 현황

※ 법인명의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
주 1)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벽돌조), 철골조, 목조 등으로 기재
주 2) 입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강당 등으로 기재
주 3) 특히 최근 5년간 기능보강내역은 상세히 층별로 작성하되, 층별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층을 명시하여 합산액 기재
주 4)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산액 기재
주 5) 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시설 표시

(단위 : ㎡, 천원)

동 별 현 황					
동	층	구 조[1]	면적	용 도[2]	건축 연도

(단위 : ㎡, 천원)

현재까지 기능보강내역[3]						비고[5]
보강 연도	면적	내 역	사업비[4]			
			국비	지방비	자부담	

3.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 국고보조 기능보강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 *신축은 지역별 사업수요를 중심으로, 증·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3. 사업 내용

기능보강 내역 (신축, 증·개축, 개보수, 설비보강 등 내역)	사업량 (㎡, 식 등)	사 업 비(단위 : 천원)				산출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 건물배치도 첨부 : *신·증축예정부지, 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 등을 도면에 표시*
▷ 층별 평면도 첨부 : *신·증·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의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에 표시*

4. 사업추진 일정(사업단계별 월별 추진일정)

5-1. 지방비 확보 계획(확보방법 및 일정 포함)

5-2. 보조금 이외의 소요경비 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경비 부담자 성명(명칭)	자부담 금액	부담방법	비 고

※ 경비부담자 명의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6. 기존시설 처리계획(개축사업에 한함)

□ 철 거
□ 활 용(동별, 층별,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으로 표시)

7. 사업 효과

[별지 제 III-1-5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1. 사업개요

시 설 명		시설 대표자		
시설 주소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사업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설 자부담
기능보강내역 (신축, 증·개축, 개보수, 설비보강 등 내역)				

2. 사업에 관한 의견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장소의 적정성
다. 사업량의 적정성
라.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전망 및 사업수행능력
바. 건축예정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사.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3. 시설운영관련 적정성 검토

구분	있음	없음	적발(처분) 일시	비고
인권침해 적발				
횡령, 비리 등 적발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및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기타				

* "인권침해적발"에는 인권위원회 적발사항 포함

20 . . .

시·도지사 (인)

[별지 제Ⅲ-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건물구조 :

○ 건물용도 :

○ 건축(신 · 증 · 개축, 개 · 보수) 면적 :

○ 설계검토의견 :

○ 사업비내역 적정여부 :

○ 건축허가 가능여부 :

○ 기타 검토의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Ⅲ-1-7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 사업계획 변경내역

- 사업기간 : 당초 00년 00월 ~ 00년 00월 → 변경 00년 00월 ~ 00년 00월
- 사업내역

(단위 : ㎡, 식, 천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사업량	예산 (천원)				사업량	예산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내역별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사유

○ 시·도지사 검토의견

※ 내역별 산출근거 첨부

[별지 제Ⅲ-1-8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 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합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 20 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단위 : ㎡, 식, 천원)

시설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자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 추가 자부담 등으로 당초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량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집행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세부적인 추가사업내역(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효과, 재원조달방법 등) 첨부

○ 잔액 발생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나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설 치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3)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함

☞ 관련 서식 참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4) 입소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5) 시설기준 및 입소인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검색

- 설치기준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하여야 함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생활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1실의 생활인 수는 6인 이하를 권고함

    ▷ '거실'은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침실 및 응접실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복도·통로 및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

- 입소인원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98.6.13)후 신설 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함
  - 시·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음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 산정

6) 인력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근거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촉탁의	1명 이상
간호사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영양사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전문요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자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작업지도원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조리원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동 규칙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포함)을 준수하여야 함

1) 운영목표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수준의 향상 도모

2) 입·퇴소 관리

- 시설장은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에 한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서류 및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중 사회복귀가능자 등은 퇴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에 입소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함
    ※ 단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입소자의 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조치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인권전문가와 해당 시·군·구 소속 정신요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 보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한 기록 첨부)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방치·유기하는 등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한 관계서류 첨부)
- 기타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상황 등을 명시한 문서 등

◉ 시설장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소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여야 함

입소자 준수사항

- 입소자는 종사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입소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입소자가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종사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치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3) 입소자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시설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자관리를 금지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감금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피해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증언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장은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증언능력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야 함
- 시설장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
  - 시설장은 입소자의 격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하며, 격리사실을 생활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하여야 함
  - 시설장은 격리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격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자제하고, 지정된 강박도구 외의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별표 Ⅳ-4-1호]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장은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및 기타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본 사업안내 Ⅳ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중 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의 가.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입소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자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기회의(연2회 이상), 사례회의(연1회 이상), 임시회의(필요시)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4) 입소자 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시)
-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물을 입소자가 적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투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실시)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활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일지, 업무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에 대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요양보호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가급적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보호 입소자가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고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6)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훈련

- 시설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7) 시설 안전관리

- 시설장은 시설 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
-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해빙기에는 특히 안전점검을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히 하여야 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 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 폐쇄된 생활관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생활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외부로 통하는 문에는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피난 대피로 확보
-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설비는 소방법령의 재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단, 실제상황을 전제한 화재 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정보/발간자료에 게재」에 따라 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

8)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참고
- 시설장은「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요원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참고
-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함
- 시설장은 계약의 및 촉탁의가 주당 총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관련 의학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촉탁의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Ⅲ-2-1호] 업무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시설장은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계약의 및 촉탁의가 입소자의 정신과 외래진료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회계 및 물품관리

-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입소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및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장은 예산(보조금, 입소료 수입금, 후원금 등) 집행 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을 사용하여야 함

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비치·보존

- 비치하여야 할 장부·서류 및 보존기한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에 따름

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으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백원단위 금액은 절사)
- 시설장은 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월 433,000원 이하('21년)의 입소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설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조치 할 수 있음
- 유료 입소자로터 징수한 입소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단, 입소료 장기체납으로 입소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체납 유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료입소료 중 '2021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는 시설 수급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함(시설 후원금과 후원물품 포함함)
  - 유료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021년 보장시설 규모별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 분	월평균 급여액
전체평균	256,267원
30인 미만 시설	268,052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43,338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33,953원
300인 이상 시설	233,935원

12) 시설의 개방

- 시설운영의 공개
  - 시설장은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역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함
  - 시설장은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행사에 입소자가족,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 및 입소자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민간자원의 활용
  -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신요양시설 지원을 적극 권장함
  - 시설장은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야 함

마 행정 사항

1)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촉탁의 근무상황 점검* 포함)

  *근무상황 : 업무범위,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입소, 인권유린행위, 예산 유용, 입소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입·퇴소 및 요양기록,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동일 위반사항이 재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2) 보 고

가) 입소조치 결과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소 조치한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자 및 종사자 월별 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Ⅲ-2-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Ⅲ-2-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반기별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Ⅲ-2-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 타

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시·도지사
  - 연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임시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인명·재산의 피해 최소화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 화재예방장비 비치·작동여부,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숙지여부, 직원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신속한 구호활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 정신요양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제Ⅲ-2-4호] 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사고발생시 정신요양시설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물자 및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사회복지시설 공통

◉ 기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에 게재)"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함

다)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라)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본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를 실시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50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민법' 검색 관련 조문 참조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정신건강복지법」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시행일:2021.6.30.]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별지 제Ⅲ-2-1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갑) 시 설	상 호		대표자	
	주 소			
(을) 촉탁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 협약은 000(이하 "갑"이라 함)과 촉탁의 000(이하 "을"이라 함)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20 년 0월 0일부터 20 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협약사항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촉탁의 업무 및 "갑"의 자문요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며 "갑"은 "을"의 촉탁의 활동에 성실히 협조한다. 1. "을"은 진료에 성의를 다하여 입소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을 성실히 한다. 1. "을"은 매주 8시간 이상의 촉탁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갑"과 "을"은 상기 활동시간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 이전에 상호 통지가 되어야 한다. 1. "을"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지급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협약사항의 수정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비밀유지	"갑"과"을"은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 내용의 증명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000정신요양시설
대 표 : (인)

촉탁의사
성 명 : (인)

[별지 제Ⅲ-2-2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1 시설 및 결산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시설면적현황 (단위: ㎡)			시설현황							___년 12월말 기준 결산현황 (단위 : 천원)												
			대지면적	건물면적	③침실면적	주소지	운영주체	시설장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예산						결산						
													계	③보조금	④후원금	⑤법인지원금	기타잡수입	입소자수탁료	계	인건비	⑥관리운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생계비	⑦프로그램비	기타

2 종사자 현황

구분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시설장	사무국장	정신과전문의	일반의사	영양사	사무원	① 간호사			②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③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및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기타
												정신건강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기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시도(계)	정원																									
	현원																									
	지원																									
	교대근무자수																									

3 입소자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정원	입소인 생활인 수			원외취업자수	입소환자누계	퇴소자 퇴소사유							성별			연고 여부				입소유형					의료보장종류				
				소계	폐쇄병상 내 입소자수	① 개방병상 내 입소자수			퇴소자전체총계	연고자인도				전원	사망	기타	소계	남	여	소계	연고자		무연고자		소계	자의입소	동의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소계	치유	퇴소신청	심판위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천족등	후견인						

장애등록현황 ①체크 후 ②체크							연령별 분류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10세 미만	10~15세	15세~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 미상
소계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정신장애 없음	소계	지적 장애	기타 (지체, 시각, 청각 등)	없음											

질환별 분포(만 19세 이상 성인)																		질환별 분포(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계	중증 정신질환자						중독질환					우울증	신경증	정신지체	뇌전증	자살	기타	이중진단				소계	발달문제	ADHD 행동문제	우울등 정서문제	물질남용	인터넷/게임중독	식사문제	정신병적 문제	기타
	소계	조현병	정신병적 장애	조증삼화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삼화,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병적 도박	인터넷/게임중독	기타 중독질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기타									

4 인권교육 현황

일반현황				인권교육 현황					
시도	시군구	설치운영자 (지자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시설명	정신요양시설의 장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합계	
				교육대상자 (A)	교육참석자 (a)	교육대상자 (B)	교육참석자 (b)	교육대상자 (C)=(A+B)	교육참석자 (c)=(a+b)

입소기간별 분포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35~40년 미만	40년 이상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입 · 퇴소 관리	환자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물 관리	장부 관리	개방 공가	기타	계	허가 취소	사업 정지	개선 (시정) 명령	보조금 회수	고발	기타

[별지 제Ⅲ-2-4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구 분		세 부 내 용
현 황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시 설 규 모	지하 0층, 지상 0층, ㎡(0층 00명, 0층 00명 입소)
	설 립 일 자	
	인 원 (입소자, 종사자)	
사고개요	발 생 일 시	
	사 고 내 용	
	피 해 상 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1) 지원 기준

지방이양 이후 발생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수준격차 해소

가) 인건비 지원 기준

(1) 인건비 기준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2) 종사자수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산정기준이 되는 입소현원수 : 2020년 1월말 ~ 8월말 입소현원수의 평균값
- 시설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해 오던 시설 종사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해당 초과 인력이 퇴직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대체 인력(신규 포함) 채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 내 정신요양시설에 자연감소(퇴직 등) 인력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 할 경우에 시·도 내 시설 간 인력배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 미달 인력이 많은 시설의 대체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단, 정원초과인력이 자연감소(퇴직 등)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만 정원초과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하고, 자연감소 후 정원초과인력 대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 종사자인건비		
- 시설장		- 시설당 1인(시설장은 상근의무). * 겸직에 따른 인건비 이중 지원은 불가.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 사무국장		- 시설당 1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촉탁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시설당 1인
- 간호사		-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 입소현원 2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 영양사		- 시설당 1인
- 사무원		- 시설당 2인(입소현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입소현원 70명 이상 :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단,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입소현원 70명 미만 :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 입소현원 70명 미만인 남녀공용시설에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이전에 채용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명인 경우 기존의 기준초과인력은 해당인력의 퇴직시까지 계속인정
- 작업지도원		- 시설당 1인
- 조리원		- 입소현원 70명 미만 : 2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 3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 4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 5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 6명 - 입소현원 401명 이상 : 7명
- 위생원		- 입소현원 150명이하 : 1명 - 입소현원 151명~ 250명: 2명 - 입소현원 251명~350명 : 3명 - 입소현원 351명~450명 : 4명 - 입소현원 451명 이상 : 5명
- 관리인 또는 경비원		- 시설당 1인
- 안전관리요원		- 시설당 1인
• 사용자부담금		
- 사회보험	- 인건비 지원 대상 전원	-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회보험의 지급비율에 따라 지원
- 퇴직금적립금	- 〃 (적용제외 : 대표이사 겸 시설장)	- 임금총액의 1/12

※ 개별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 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음 (사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교대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인력 기준 개정시 반영예정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 지침〉

구분	지원기준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입소현원 68명당 2인 (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 입소현원수를 34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34×A + 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 이상 17 이하인 경우 : A명 - B가 18 이상 33 이하인 경우 : (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 219명 219명 = 34×6 + 15 간호사 지원인원수 = 6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 225명 225명 = 34×6 + 21명 간호사 지원인원수 = 6+1=7명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현원 28명당 2인 (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 입소현원수를 14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14×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가 1 이상 7 이하인 경우 : A명 - B가 8 이상 13 이하인 경우 : (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 215명 215명 = 14×15 + 5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15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 235명 235명 = 14×16 + 11명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16+1=17명

(3) 근무경력 인정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2.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10할(100%) 인정
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등(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단, 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②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④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 6. 14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2002. 6. 15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경력
   4)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부록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4) 보수의 지급

◉ 「선임 생활지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준을 따름(단, 선임생활지도원 임명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2014년 3.1일부터 신규 임명되는 인력에 대해서 적용함)

- 「선임 생활지도원」은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중에서 임명하며, 각 직위별 근무경력이 승진 최소연한 만5년(6년차)이상인 자
- 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 인원수는 법인 및 시설의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시설당 2인까지 임명할 수 있음
- 선임 생활지도원 임명 시 법인 내 시설 및 임명하고자 하는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근무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생활지도원 중 사회복지사(1,2급) 자격취득자는 생활복지사 보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간호조무사, 사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 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 시) 종사자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 시설 입소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 :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833,000	1,828,000	1,823,000
2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861,000	1,846,000	1,839,000
3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89,000	1,869,000	1,855,000
4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917,000	1,892,000	1,871,000
5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1,915,000	1,887,000
6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1,965,800	1,903,000
7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2,055,000	1,941,100
8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7,500	2,225,300	2,131,000	2,015,000
9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2,900	2,315,600	2,178,100	2,088,900
10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3,200	2,400,800	2,257,200	2,181,200
11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2,400	2,479,800	2,337,200	2,236,600
12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2,410,000	2,300,200
13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2,478,800	2,366,900
14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2,538,300	2,420,300
15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2,580,300	2,463,400
16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2,630,600	2,511,600
17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2,679,900	2,559,800
18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2,729,100	2,632,700
19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775,300	2,684,000
20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820,400	2,727,100
21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868,600	2,775,300
22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2,923,000	2,831,700
23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2,979,500	2,887,100
24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3,031,800	2,941,500
25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3,080,000	2,995,900
26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3,122,100	3,046,100
27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3,163,100	3,091,300
28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3,197,000	3,125,100
29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232,900	3,160,000
30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259,600	3,189,800
31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3,293,400	3,218,50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촉탁의사(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 기준 : 월 2,746천원

▸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직위	정신요양시설의 직위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남녀공용시설은 시설당 2인까지 (단, 입소현원 70인 미만은 1인), 남자(또는 여자)전용시설은 시설당 1인까지 사무국장 기본급권고기준 적용 인정
과장 및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생활복지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5) 수당 지급 :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 법정근로수당 보조

- 시간외근로수당(지급 기준에 한함),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 특수근무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국장
- 지 급 액 : 월 4만원 지급

◉ 유급병가 지급

- 종사자 병가에 대해 연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필히 첨부
- 지급 가능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 월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 20시간까지 인정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아님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자(조리원 포함)와 일반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아님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지방비 매칭 예산'외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가능
- 지자체별로 시간외 수당 단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5시간, 월20시간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인정 가능

◉ 행정사항

- 본 기준은 국고 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준이며,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통상임금등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

▸ **2021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 : 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한 종사자	시간외근무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나) 관리 운영비의 지원 기준

◉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 시설장은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서를 비치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함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은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 금지

◉ 프로그램 운영비

-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관리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 기 타

- 화재보험 가입 : 대물보험 뿐 아니라 대인보험에도 가입,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되, 현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적립기간 종료 시 운영비로 편입하여 활용

◉ 2021년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원/1인/1년)
입소현원* 100명 이하	1,447,060
입소현원 101 ~ 200명	1,379,170
입소현원 201 ~ 300명	1,315,510
입소현원 301 ~ 400명	1,249,740
입소현원 400명 초과	1,182,900

* 입소현원수 : 전년도 1월말 ~ 8월말(무료+유료) 입소현원수의 평균값

◉ 매월 무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지원액 :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12)* 전월말 무료 입소현원수

- 매월 30일 초과 입원 또는 외박 입소자는 전월말 입소현원수에서 제외하고 지원
- 월중 퇴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는 일단위로 계산(1원 이하 절사)하여(퇴소당일 포함) 관리운영비 지급

◉ 매년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 지원

- 매 회계연도 전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중 '30인 이상 100인미만 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이하 절사)' (a)를'매 회계연도 전년도 1인당 월 입소료'에서 차감한 금액(A)을 산출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차감액은 '금액(A)에 12를 곱한 금액' (B)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에서 (B)를 차감한 금액
- 유료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단위 절사)(a)"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와 동일함

유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차등 적용 예

〈A시설〉

- 입소현원수(전년도 1월말~8월말 평균) : 250명(무료 입소자 200명, 유료입소자 50명)
- 당해연도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단가 : 1,315,510원
- 당해연도 2월말 입소자 수 : 입소자 250명(무료 입소자 200명, 유료 입소자 50명)
- 전년도 유료 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 360,000원

  (전년도 30인 이상 100인 미만 보장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120%
  = 236,251원 × 120% = 283,501원 → 283,500원(원 이하 절사)
  (a) = 283,500원(※매년 보장시설 급여액에 따라 변동)
  (A) = 360,000원 - **283,500원** = 76,500원
  (B) = 76,500원×12개월 = 918,000원/연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 1,315,510원 - 918,000원 = **397,510원**
A시설 2월 관리운영비 보조금(월) = 200명×(1,315,510원/12) + 50명×(397,510원/12)

-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283,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입소자는 무료입소자와 동일하게 연간 1,315,510원 관리운영비 지원

- 매년 6월말 현재 입소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체납기간동안에 매월 차감한 관리운영비지원액을 소급하여 당해연도 7월 또는 8월 관리운영비 지급 시 보전

〈유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차감액 소급보전 적용 예시〉

소급보전금액 : (**무료입소자** 월 관리운영비-**유료입소자** 월 관리운영비)×체납개월수
* 체납개월수 = 매년 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입소료 체납자의 체납기간(~ 매년 6월까지)
* 소급보전하는 체납기간은 '17년 1월부터 포함(소급보전금액을 지급한 체납기간은 체납개월수에 미포함)

(적용예 1) '20년 1월 ~ 6월 체납자 10명의 관리운영비 차감액 소급 보전
: (1,315,510원/12월-397,510원/12월)×6개월×10명 → '20. 7월~8월에 4,590,000원 소급보전 지급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예산확정통보(전년도 12월, 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시 배분(전년도 12월)
  • D-brain 시스템 과 e-호조 시스템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복지부)
  • 교부 차수 전월 말일까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별지 제 III-2-5호] 서식에 따라 신청
- 보조금 교부(복지부 → 시·도)
  • 교부 차수 해당 월 10일까지 교부

◉ 집행실적 보고

- 예산 집행 후 e-호조 시스템 실적 즉시 입력
- 보조사업 완료 후(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별지 제 III-2-6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일 엄수 제출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사용 가능

[참고자료]

2021년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비고
가. 입소자보호비	※ 시설내 입소자의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o 입소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외의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	
2) 의약품비	o 입소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수용기관경비	o 입소자의 편의 증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비누, 샴푸, 세제, 면도기, 치약, 칫솔, 수건, 화장품, 침구류, 생리대, 기저귀 등) 구입비	
나. 시설관리비	※ 시설물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o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o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컴퓨터, TV, 냉장고등 가전용품, 생활실비품 포함)	
3) 냉·난방연료비	o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o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수리비등	
5) 공공요금	o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o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o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 등	o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 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9) 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o 사무용품비, 인쇄비,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등 o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제외)	
10) 제세공과금	o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공과금 o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관련협회에 한함) o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다. 프로그램 운영비	o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의 프로그램 비용	
라.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마.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o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운영위원회| 운영비	o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입소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별지 제Ⅲ-2-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table>
<tr><td>교부 신청자
(시·도지사)</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개요</td></tr>
<tr><td>시 설 명</td><td colspan="2"></td><td>시설 대표자</td><td></td></tr>
<tr><td>시설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입소자 현황</td><td colspan="2">정원 ( )명, 현원 ( )명</td><td>이용자 현황</td><td>정원 ( )명, 현원 ( )명</td></tr>
<tr><td>보조사업의 목적</td><td colspan="4"></td></tr>
<tr><td>보조사업의 내용</td><td colspan="4"></td></tr>
<tr><td>보조사업 착수 예정일</td><td colspan="4"></td></tr>
<tr><td>보조사업 완료 예정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보조사업의 경비 (단위:천원)</td></tr>
<tr><td>총 소 요 액</td><td>국 비</td><td>지 방 비</td><td>시설 자부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td></tr>
<tr><td colspan="5">첨부 : 국고보조사업계획서 1부</td></tr>
</table>

[별지 제Ⅲ-2-6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시설명	국고보조금 집행 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			이자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1) 정 의(법 제3조 제5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3) 허가·신고권자 :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

4) 입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한 자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규모의 제한 등

- 설치의 제한(법 제19조 제2항)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 개설에 제한을 받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행위

1.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2. 시·군·구청장의 입원조치 해제요구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응급입원 이외의 경우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 규모의 제한(법 제19조 제3항)

- 300병상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존 병상을 증설할 수 없음(낮 병상은 제외)

◉ 설치 기준

-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5,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및 [별표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신고수리자 포함)는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환자간 접촉 방지 및 위생을 위하여 개별 침대형(Bed) 병상, 개인별 사물함 등의 설치와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음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1) 목 표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법 제6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을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3) 입·퇴원 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퇴원신청서,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입·퇴원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보호의무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심사 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1호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주된 증상, 진단명, 입원등의 필요성,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 여부 다. 대면진단일시 라. 진단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마.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10년
2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정기적 의사확인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환자의사의 확인일시 다. 환자의 퇴원여부 의사표시 라.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 마. 환자의 퇴원여부 의사를 확인한 담당자 및 작성일	3년
3호	환자의 퇴원등 신청 및 거부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퇴원신청일시와 퇴원신청사유 다. 퇴원등을 거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퇴원등 거부사유와 환자에 대한 소견 라. 퇴원등 거부의 일시 마. 퇴원등 신청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여부 및 통지내용 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여부와 전환일시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4호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 신고, 진단 및 조사, 결과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 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5년
5호	입원등연장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나. 동의한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보호입원등의 경우에 한한다) 다. 최초 입원등의 연월일 라. 입원등연장이 필요하다는 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10년
6호	투약 등 치료내용 진료기록	가.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투약 등 치료지시자와 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투약 등 치료의 일시와 내용	
7호	치료 프로그램	가. 치료프로그램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치료프로그램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치료프로그램의 일시와 내용	5년
8호	격리·강박	가. 격리·강박을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격리·강박을 한 사유와 내용 다.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마. 격리·강박의 개시·종료시간 바. 격리·강박 중 감시조치의 일시, 수행자, 감시조치의 내용 사. 격리·강박의 종료사유 아. 약물 등을 통한 화학적 강박의 경우 그 약물의 투약일시, 약물의 명칭과 투약량, 횟수 등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시간	
10호	작업요법	가. 작업요법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작업요법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작업요법의 수행일자, 개시·종료시간 라. 작업요법의 내용과 활동내역 마. 작업요법에 따른 보수지급이 있는 경우, 보수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11호	특수치료	가. 특수치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특수치료의 명칭, 치료일자, 개시·종료시간 다. 특수치료의 방법과 내용 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마.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바. 특수치료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사. 특수치료를 위한 협의체 구성원의 회의내용 및 결정내용, 회의일시 및 장소	3년
12호	퇴원등	가. 퇴원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 일시와 퇴원등의 사유 다. 퇴원등을 하는 경우 퇴원통지 수령자 및 통지일자 라. 퇴원등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후 지원조치 동의여부, 통보기관 및 통보일자	5년
13호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청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가.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의 일시, 취지, 사유 다. 심사청구의 담당기관 송부일 라. 심사청구의 내용과 결과	
14호	법원 인신보호 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인신보호청구나 진정의 결과가 나온 후에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가. 청구자 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청구 또는 진정의 일시, 취지, 사유 다. 청구 또는 진정의 담당기관 송부일 라. 청구 또는 진정의 심문 또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	

※ 구분별 보존 내용을 보존 내용의 각 항목을 갈음할 수 있는 서식 또는 별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보존 내용과 그 내용이 없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명기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7호 치료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 하에 전문가(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등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각 항목 중 정신과의사 외의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작업 및 오락요법, 정신과적재활요법과 이에 준하는 것임

5) 환자권익 보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입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원내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법 제72조)

-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법 제75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 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시설 안에서 하여야 함
  - 격리시 과도한 물리력을 자제하고, 의료도구 외의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별표 Ⅳ-4-1]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권익보호체계 등)로 임의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6) 작업요법 실시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69조 제3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 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음 (법 제76조 제1항, 시행규칙 제52조)
-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함 (법 제76조 제2항)
- 환자의 작업요법은 안전시설을 갖춘 직업재활훈련실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관련 규정(법 제76조, 시행규칙 제52조)과 Ⅳ-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부분의 나-4)작업요법 규정의 준수 항목 및 [별표 Ⅳ-4-2] 작업요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7) 시설 안전관리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하에 입원실 혹은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 즉시 지상으로 이전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병동내 주간·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열쇠를 휴대한 직원이 상주하여 상황발생시 즉각 긴급조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감시카메라,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소화시설·장비*를 재해 구호 및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소방시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자·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동내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종사자 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보수교육,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마 입·퇴원절차

▷ 이하에 표기된 '별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을, '참고서식'은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사업부 자료)"에 수록된 서식을 말함
※ '참고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이 서식을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음

1) 자의입원 (법 제41조)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4호]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 **대면진단** :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 **권리고지** : 모든 입원 공통사항

❍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별지 제14호] 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참고서식 제1호]를 활용하여 권리고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함
* 참고서식 제1호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동의입원(법 제42조)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가)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 본인이 [별지 제14호]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없이 퇴원
- 퇴원 제한 요건 세가지 모두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동안 퇴원 거부 가능하며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하여 고지
  ※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 : ①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②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입원유형 전환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 신청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보호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전문의가 작성한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단을 위한 2주간 행정입원 의뢰 → 행정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

다)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처음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심사 및 승인필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위의 1, 3, 4, 5을 위한 입원시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필요(그 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입원 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연장 청구 기간	입원기간 만료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원 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가)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 보호의무자 2인이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신청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 → 최초입원(2주 이내) → 두 번째 정신건강전문의 진단(최초입원후 2주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 입원유지 → 환자 본인에게 [참고서식 제7호]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통지서를 서면통보

※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결과는「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 2명 이상의 전문의 중 1명 이상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

※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안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각각 고지하여야 함. 참고 서식 1은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참고서식 제1호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 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 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이용하며, 이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에서 등록 후 최종적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 신고 절차가 완료됨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됨

나) 퇴원절차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 지체 없이 퇴원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11호]를 활용 가능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함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거부 가능

※ 보호입원 퇴원 제한 요건 :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②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③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위 ②와 ③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 가능

※ 참고서식 제6호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은 참고서식 제6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이며, 이때 '그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해당 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있는 자를 포함함

다) 입원연장절차

◉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 각 주기별로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활용하여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

◉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호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②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위 ① 와 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입원 연장의 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지난(초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나,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라)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

※ 관련 민법 조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

- 보호의무자의 신청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으로(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제출되어야 함

▸참고 : 법 제43조 제1항 '입원등을 할 때'의 행정해석

·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을 전후하여 실제 입원시까지 관련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응급상황·야간·공휴일 등에 입원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서류를 입원 시까지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입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 보완 가능한 시기는 서류발급이 가능한 즉시 보완하되 전후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1. 입원 신청서식

1-1. **보호입원등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필수)

2. 구비서류

2-1. 정신질환자 관련

-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 의무자에게 확인(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2.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택 1)

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2-3. 후견인 관련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결정문

2-4. 입원등 권고서 관련

-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호의무자의 순위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참고하되,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입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법 제39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시행규칙 제31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시행규칙 제31조)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2018.4.15. 시행)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활용)
-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참고서식 제20호] 활용) 이를 지자체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지자체가이 이를 확인한 경우 (거부 또는 포기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 '2020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퇴원 절차 안내' 참조(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자격 관련 Q&A

1) '직계혈족'이란?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부부와 입양한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인지 친족인지 여부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입양의 효력)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와 입양자녀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이 된다.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혹은 입양절차를 따로 거쳤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보호의무자가 된다.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친권자'의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원에 대한 친권자의 의사 또한 확인해야 한다.

3)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의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호의무자'의 자격 관련 Q&A

-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에는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은 포함되나, 고소나 고발, 협의이혼, 후견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 등 비송사건은 제외됨

4)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판단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법 제44조)

행정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및 제62조)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 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작성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경찰관의 행정 입원요청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입원 기간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가) 입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상기의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경찰관은 상기의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진단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진단을 위한 입원)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치료를 위한 입원)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제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 또는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 참고서식 제1호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 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 제2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 이용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됨

나) 입원 해제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 권고 →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지 → 지체없이 퇴원

  ※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지자체장은 최초 입원일(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일과 다를 수 있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 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15호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참고 서식 15호]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다) 입원연장절차

-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마다 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 첫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 법 제51조(신상정보 확인)에 의해서도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때 마다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자체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5) 응급입원(법 제50조)

응급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 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입원 전환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내에 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절차 진행

가) **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발견 →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8호] 응급입원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별지 제18호]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 가능)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각각 고지하여야 함. 참고 서식 1은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참고서식 제1호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하지 못할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 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나) 퇴원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 및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

(2) 응급입원 후 3일 경과 시 퇴원(공휴일은 제외)

다) **입원형태 전환 절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6) 기 타

가) 신상정보의 확인(법 제51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회 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나) 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법 제52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_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 퇴원사실의 통지는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통지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한 경우
  → [별지 제20호] 퇴원등 사실 통보서를 이용하여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함)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를 할 수 없음.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여부 심사청구 가능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20호의2]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및 ①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퇴원 및 퇴소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 위탁**

▸ 법원과 미리 협의 후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법원은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환자를 병원에 위탁 가능

※ 이러한 법원의 치료 위탁에 따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이 아니므로 국가입퇴원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

〈가정보호/아동보호/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입원 치료 위탁 근거 법령〉

근거법령	대상	요건	절차	효과	기타 요건	법원의 감독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40조, 44조, 45조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의학적인 치료 혹은 전문가의 진단소견이 필요한자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1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자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6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21조, 36조 37조, 38조, 47조, 51, 52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의학적인 치료 혹은 전문가의 진단소견이 필요한자	검사의 청구, 검사나 법원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2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검사나 법원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1년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아동	직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병원 및 피해자 측 판단) (1년이 원칙이되 4년까지 연장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소년법 제18조, 32조,	범죄 등을 저질러서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자	직권	법원의 결정	입원(6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1)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도)

◉ 구 성

-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 제5항 제5호)**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직 무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 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 [시행일 : 2020.4.24.])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재심사의 회부 등**(법 제61조)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법 제57조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함(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법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함(이 경우 법 제54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군·구)

◉ 구 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 제5항 제5호)**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직 무

- 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법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법 제62호 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

※ 기존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2020.4.24.)

-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운 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척·기피·회피(법 제5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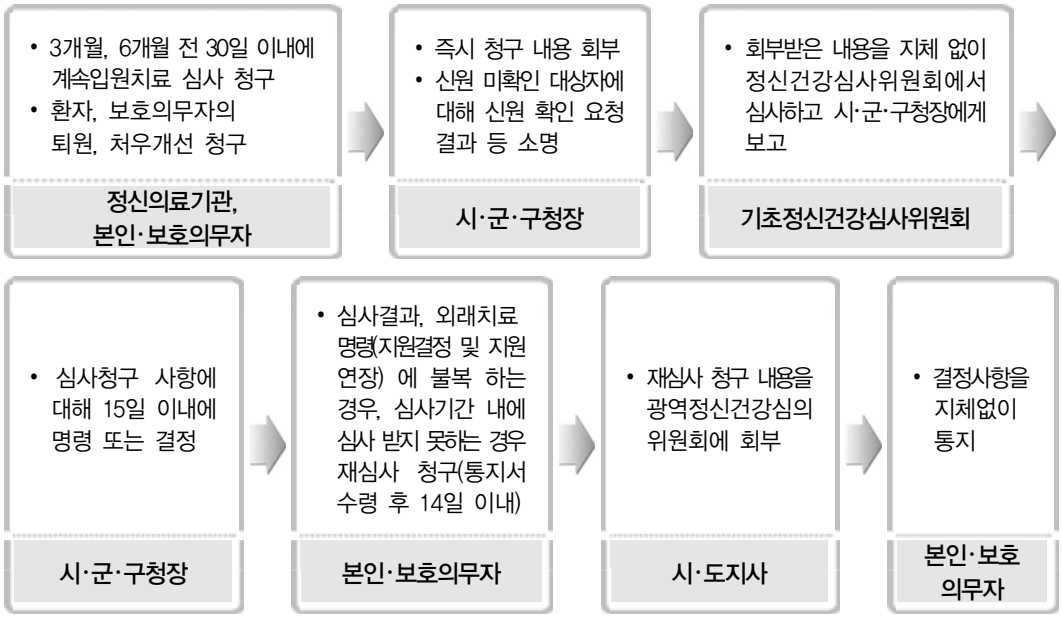
- 제척 :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입소)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입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제척해야 함(같은 위원회에서 다른 환자는 심의할 수 있음)
- 기피 :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함(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
- 회피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심사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회피하여야 함

4)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5) 입원 등 연장 청구 등의 심사

◉ 심사과정



◉ 심사방법

-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 지역 및 청구서 검토를 통하여 매월 선정
- 심사대상이 매우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및 불승인(퇴원가능한) 예상자를 선별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사 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 계속입원치료 심사결정방법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사업부 자료)의하여 심사할 것을 권고하며, 광역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해당 정신건강심사위원의 직접 토론 회의를 개최(서면심의 불가)하며, 합의체로 심사
  ※ 합의체에 대한 의견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내용과 같음
-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결과

- 각각의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속입원치료 및 퇴원·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에 관련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환자에게 [별지 제22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3호] 재심사 청구 신청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결정 시 지체없이 퇴원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시행일 : 2020.4.24.]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 3〉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구 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회 설치	목적	정신건강에 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3조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4조①
	구조	광역 – 시·도 기초 - 시·군·구1) *법 제53조①	광역 – 시·도 기초 – 시·군·구2) *법 제54조②
	직무[3]	1. 법 제43조 6항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 2. 법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3. 법 제55조 1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4. 법 제62조 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지원 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53조③	1. 법 제43조 6항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 및 제55조 1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2. 법 제62조 2항의 환자의 3개월, 6개월 연장 심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지원 *법 제54조①
	보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영 제27조④	좌동
위원장	구성	위원장1, 부위원장 1인을 둠 *영 제26조①	위원장1, 부위원장 1인을 둠 *영 제28조①
	위원장[4]	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영 제26조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영 제28조②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영 제27조①②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영 제28조⑤
위원 구성	구성·임기[5]	6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법 제53조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 제54조②

구 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필수포함 위원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5종)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의 자 (2명이상)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 자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53조⑤	심사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위원을 필수적으로 구성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명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요원 1명 4.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 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이상 포함 *법 제53조⑤
	권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법 제53조⑥	해당사항없음
위원회 운영	의무 개최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은 미개최 *법 제53조⑦	좌동 *법 제54조③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영 제27조③	좌동 *영 제28조③
	보고	위원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영 제27조④	좌동(심의위 결과로 귀속) *영 제28조④
	운영 세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함 *영 제27조⑤	좌동 *영 제28조⑤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이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3)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직무 :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② 재심사의 청구
③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
5)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외래치료 지원

◉ 청구대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 47조, 제 47조의 2 추가)

-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및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서 치료를 중단한자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지는 행동

1. 자살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외래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절차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여는 경우 외래치료지원 청구서 [별지 제 24호, 제 25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와 청구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이 다를 경우, 청구서는 청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로 이송,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또는 퇴원 후 거주 예정인 관할 지자체로 청구서를 이송

◉ 지원 관리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확인 할 수 있으며,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 보고서[별지 제 28호]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하거나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상[별지 제 26호]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 지자체 장은 매년 2월 말일 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지원결정 중단 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의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 명령서[별지 제 29호]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 지정정신의료기관 장은 평가를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을 활용한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를 송부해야 함
-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글대원에게 호송의뢰서[별지 제 31호]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1. 자의입원 신청
2. 동의입원 신청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아 행정사항

1) 지도·감독

가) 기관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공무원의 지도·감독 의무 불이행 관련 판례 : 부산지법 2006.2.10.선고 2005나142판결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미작성, 미제시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기관이 특별관리할 수 있음(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적합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다)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제19조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음(각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름)
  - 이후 재차 위반(적발) 시에는 바로 누적차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차수 누적에 따른 사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에 별도의 시정명령을 명하지 아니함
    ※ 결국, 동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행정처분 누적차수를 적용 시에 시정명령은 1회만 발하게 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이때,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별표 5] 행정처분 기준 중 「○ 개별기준」의 각항(가, 나, 다…)을 기준으로 하되, 가의 1)항의 경우는 인력기준과 시설·장비 기준을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같은 위반행위 내에서 시설·장비는 그 종류와 수량에 구분 없이 위반차수는 1차로 처리하고, 인력기준은 종사자의 종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의 구분 없이 1차로 처리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행정처분 기준의 수준별로 적용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기준을 동시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을 택일하여 처분하며, 인력기준의 대상인 입원환자 및 종사자는 [별표 4] 인력기준을 적용하되, 연평균 1일 기준 입원환자·종사자 수로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그 외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을 참조하고,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함

라) 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체계 수립·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 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해당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충실한 현지지도 및 실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구 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권역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 보 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시·군·구별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입원환자 현황[별지 III-3-1호], 지도점검 현황[별지 III-3-2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별지 III-3-3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가) 사업 목적

-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사업 내용

-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평가 대상
  - 정신병원, 정신과 입원병상(폐쇄 및 개방병상 포함)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정신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시행

〈표 5〉 인증제도와 평가제도 비교

구분	인증제도	평가제도
주 기	4년	3년
조사대상	정신병원	정신병원, 설치과 및 의원
조사방법	현지조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
항목수	222개 조사항목	정신병원 200개 설치과 121개, 의원 67개
등급판정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합격, 불합격

다) 사업 현황

- 3주기('21~'24) 정신병원 인증 시행
- 4주기('21~'23) 정신건강의학과 및 의원 평가 시행
- 인증 및 평가 주기 내에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 신청에 따라 시행
  -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kr)에서 작성

[별지 제 Ⅲ-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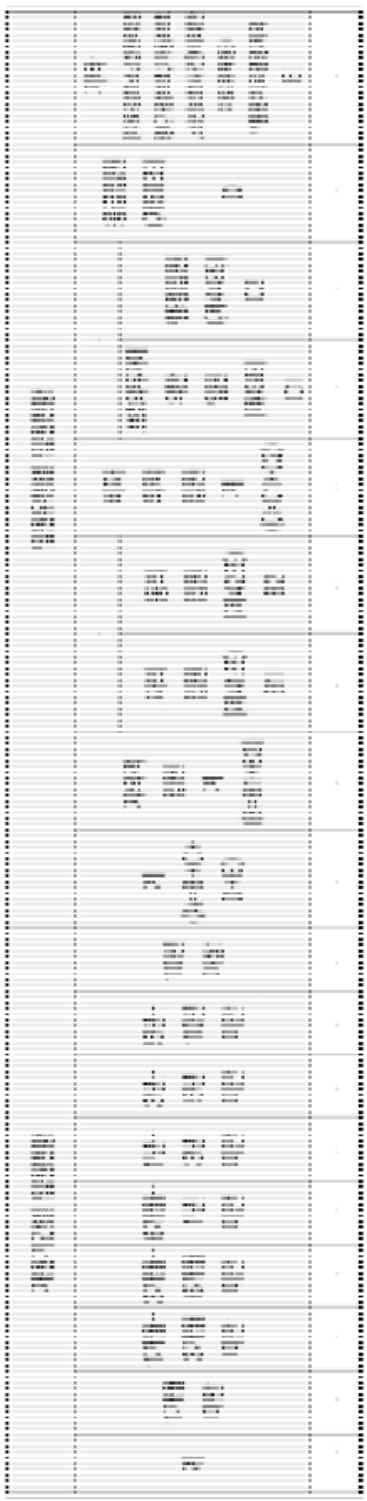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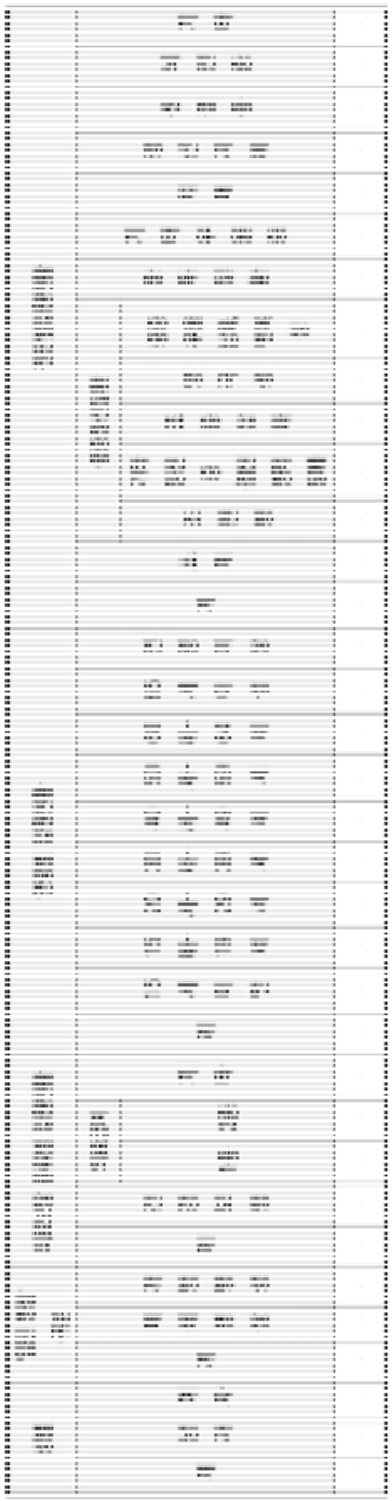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행정구	기관명(C)			요양기호(숫자8자리)	기관구분(A)	설립구분(B)	상급종합병원여부	입원병상(폐쇄 또는 개방병상) 설치유무	주소지(D)	대표전화	변동 사항 확인		통계 작성자		
				병(의)원명	법인명(위탁법인을 포함)	개설자								변동구분	변동내역	의료기관 통계 작성자 (연락처)	시군구확인자 (연락처)	시도 확인자 (연락처)

2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현황 (2021.6.30. 기준)																						외래 및 낮병동 환자현황	
입원병상 관련				낮병동 입원 가능 환자수 (별도)	격리실 (강박실) 개수	감염병 관리를 위한격리실수	인력 현황 (F)														기타 인력	일평균 외래 환자수	일평균 낮병동 환자수
의료기관 총병상(E)	정신과 입원병상						계	정신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보호사		보안인력		
	계	폐쇄 입원 병상	개방 입원 병상					전문의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		간호조무자격소지자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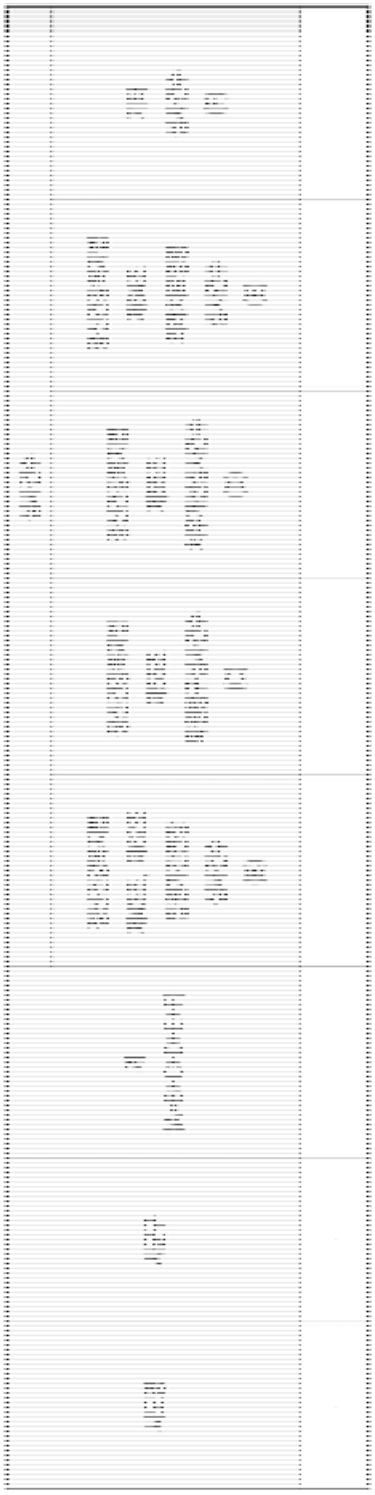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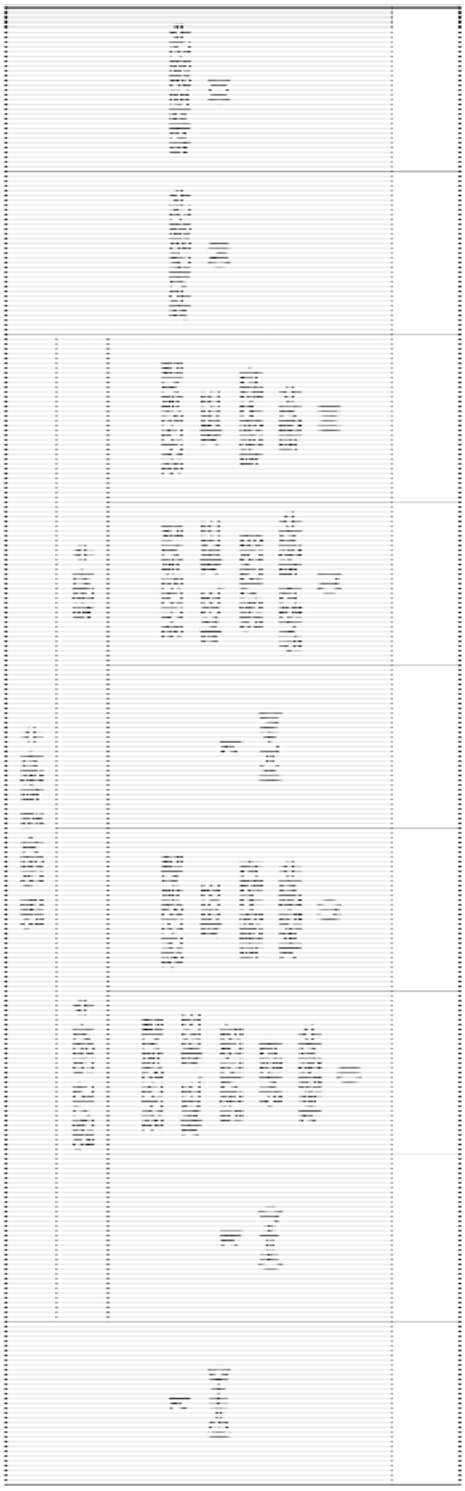
[별지 제 Ⅲ-3-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

기관 현황					주요위반사항(건)																		
						입퇴원 관련									입원환자 인권 관련					인력, 시설장비 및 기록 관련					
시도	소재지(시군구)	병(의)원명	요양기호	처분일	계	장소과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 결정	인지능력 없는 자의 자의 입원	자의, 동의 입원 환자 퇴원의사 미확인	보호의무자 부적격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미구비	환자에의 입원 통지 미이행	입원기간 연장 심사 관련 의무 미이행	퇴원명령 등 불이행	기타 압퇴원 관련	폭행, 가혹행위	노동강요, 작업요법 규정의무 미준수	치료목적의의 격리, 강박행위	비의료적인 자유의 제한(통신, 행동)	동의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	기타 인권침해	의료인력 기준 미달	시설장비 기준 미달	안전관련 규정 미달	기록관리 부적정	의료기록 발급 규정 미준수	기타

조치내역(예정사항포함)											비고
계(건수로만 계산함) (A+B+C+D+E+F+G)	폐쇄, 허가취소(건) (A)	고발(건) (B)	사업정지			시정명령(건) (D)	경고(건) (E)	과태료		기타(건) (G)	
			건수 (C)	일수	과징금액(천원)			건수 (F)	과태료액(천원)		





[참고자료]

정신의료기관 대상 유사 평가 비교표

구 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인증	정신의료기관 평가
주관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기관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위 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근 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법 제58조의4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
목 적	의료급여의 질 향상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	정신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
대 상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정신과 병·의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신병원 포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내 용	·인력기준 평가 ·시설·장비 기준 평가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의료기관의 진료 현황 및 실적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 법	·평가 기준 선정·공표 ·서면평가(청구내용 분석) ·현지 평가 실시 ·자료구축 및 종합분석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통보	·인증신청 및 신청서 접수 ·조사일정 통보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 ·조사결과 이의신청 및 조정 ·조사결과 분석, 인증심의위원회 ·인증결과 통보 ·인증결과 이의신청 ·인증결과 최종판정 및 통보 ·인증결과 공표	·평가대상 정신의료기관 선정 ·평가대상 기관의 통지 ·평가 실시 전문가(평가반)구성 및 교육 ·서면조사, 현지조사 ·평가 결과의 통지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결과 재검토 및 통보 ·결과의 공표
반 영	의료급여 수가 반영	우수기관 행정·재정 지원	우수기관 행정·재정 지원
시 기	매년 평가	인증유효기간(4년), 단 조건부인증은 1년	정기평가(3년), 수시평가
공 표	공표 의무 있음	공표 의무 있음	공표 의무 있음

[별표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시행규칙 별표 3)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1개 이상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개 이상	1개 이상	
다. 진료실	1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개 이상	1개 이상	
마. 상담실	1개 이상	1개 이상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바. 재활훈련실	1개 이상	1개 이상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임상검사실	1개 이상	1개 이상	
아. 방사선실	1개 이상	1개 이상	
자. 조제실	1개 이상	1개 이상	
차. 소독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카. 급식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타. 세탁물처리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파. 구급차	1개 이상	1개 이상	

비고 :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휴게실·욕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급식 또는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1)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아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위 (1)의 입원실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끝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하여야 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 병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7) 입원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한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구급용 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료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상담실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별표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시행규칙 별표 4)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간호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비고 :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별표 제Ⅲ-3-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2)가)의 경우에는 4차 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령하고, 5차 위반 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19조제4항 제1호			
1)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4일	사업정지 8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미달 정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16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나.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2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3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마.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5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Ⅳ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2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가 인권교육

1) 목적

-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2)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 내용

-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법정 의무교육시간(4시간)과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시간(이동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교육 방법

- 교육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교육대상기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이며,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허가·신고된 전체 시설임

- '종사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의무교육 대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 분	의무교육대상	권장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행정·관리 전담직원, 식당·청소, 작업 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전체 시설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법정 의무교육대상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이수 권장

◉ 교육시간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함

◉ 전문교육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형태와 관련하여 '21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참조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 4개 국립정신병원, ⑥~⑧공립정신병원(서울·전북·부산), ⑨~⑳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부산·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㉑~㉔ 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㉕천주의성요한병원, ㉖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㉗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㉘ 대구정신병원

6)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각 병의원 및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1) 입·퇴원(소) 관리

-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 대법원 판례(2006다19832, 2009.1.15. 판례)에 따라 계속되는 불법입원은 상이한 입원 종류간이나 다른 병원에의 전원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입원은 감금죄가 적용되어 위자료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까지 "배상"할 수 있음에 주의(이 사례는 부산고법에서 3천 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되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입원 연장하는 행위
  -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입원 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하여 계속입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행위
  - 보호의무자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없는 자에 의한 병원으로의 강제이송 행위
  -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 혹은 그 수를 만족시키지 아니한 채 입원 및 입원 연장에 동의하는 행위
  - 신원불상자의 입원 시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미실시 또는 퇴원명령 불이행 및 계속입원 심사 누락 행위(고의, 과실을 불문)
  -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 서면통지 미실시 등
  - 입원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신청 차단 및 관련 서식 미비치
  -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유형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 입원이 결정이 된 자에게 의도적으로 권리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 입원(소)환자가 퇴원(소)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제89조에 의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피해 감독 강화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 이용 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
-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위법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편지, 전화 사용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제한과 임의적 검열 사례
- 위생, 오락과 운동, 목욕과 용변 모습 노출 등 환자의 인간적 품위 유지와 건강권,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침해 사례
- 특정 종교 신앙 및 행사 참석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 초과 과밀 수용에 따른 환자 사생활 보호 조치 미흡 사례
-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환자의 안전 확보 곤란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와 진정절차 고지 의무 위반 사례 등

3) 행동제한 및 격리의 제한

◉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종교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료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음

참고 행동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사례

P병원에서는 A,B,C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B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이 가능하며, C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번호 : 06진인2621)

• 위반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즉,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한 사유의 기록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5년 보관)

◉ 환자의 격리 제한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 이 경우 격리는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 당해 시설의 보호실에서 행하여져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작업요법 규정의 준수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작업요법의 시행요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작업요법의 예 :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 작업요법의 시행방법(정신의료기관)
- 시간제한 :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
- 장소제한 :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특별히 관리
- 시행동의 :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시 행 자 :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
- 기록보존 :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 수입지급 : 작업으로 얻은 수입은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하고 해당 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5)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운영 권장

◉ 시설 경영진, 직원(의료진, 종사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가칭 "○○병원 환자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개선안 마련 추진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 등 치료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시행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환자 및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시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요구내용을 수용(의료법 제21조)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 및 배우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 치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다 인신보호법 안내

1) 법 제정 개요

- 인신보호법은 2007. 12. 21. 인신보호규칙(대법원 규칙)은 2008. 6. 5. 제정되었으며, 각각 2008. 6. 22.부터 효력 발생함
- 제정이유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피수용자의 범위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지자체·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임
    ※ 형사 체포·구속자·수형자 등 제외
- 구제의 청구
  - 청구자적격 : 피수용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임(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
  - 청구사유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상황임
  - 관할법원 :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임(단독판사가 심판)

- 청구방법 : ① 구제청구자 주소·성명, ② 수용자 성명·주소 등, ③ 피수용자 성명, ④ 청구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인지첨부 불요)
- 청구 각하 : ①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②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 청구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때, ③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직권으로 청구를 각하함
- 국선 변호인 선임 :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

◉ 사건의 심리

- 심리개시 :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심리 개시(심문기일을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임)
- 진단·의견조회 : 필요한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수용 적법성의 증명의무 : 수용자가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함
- 피수용자 이송 : 피수용자의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호송·감호는 수용자가 맡도록 함
- 불출석 수용자 제제 :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재판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 준용규정 :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 청구자와 수용자는 3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수용의 임시해제 및 신병보호

- 임시해제 : 법원은 피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 수용시설에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음
- 이송책임자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이송 받을 수용시설로 이송하도록 함
- 임시수용시설 지정 :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사전에 수용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함

◉ 종국결정

- 재수용의 금지 : 수용해제결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수용해제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음
- 비용부담 : 법원은 구제청구사건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별표 제Ⅳ-4-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2019. 3.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목 차

1. 정의 ····· 348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 348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 348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349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 350

6. 격리·강박의 기록 ····· 351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 351

[별지 제Ⅳ-4-1호] 격리·강박 기록지 ····· 352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Ⅳ-4-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 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별지 제Ⅳ-4-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별지 제Ⅳ-4-1호]

격리·강박 기록지

<table>
<tr><td rowspan="2">환자</td><td>등록번호</td><td>성명</td><td colspan="2">나이
(남, 여)</td></tr>
<tr><td colspan="4">진단명</td></tr>
<tr><td>시행</td><td>시행일시</td><td>지시자
(서명)</td><td>수행자
(서명)</td><td>참여자명</td></tr>
<tr><td>해제</td><td>해제일시</td><td>지시자
(서명)</td><td>수행자
(서명)</td><td>참여자명</td></tr>
<tr><td>제한의 종류</td><td>[ ] 격리</td><td colspan="3">[ ] 강박
▢ 억제대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이상 ▢기타( )]
▢ 보호복 ▢ 보호조끼
▢ 주사제 사용 여부
※ 중복 선택 가능</td></tr>
</table>

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 ]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 ]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 기물파손 등 병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
[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

격리·강박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필요시 기재)

※ 격리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음

격리·강박 모니터링(간호기록지에 기록 가능)

※ 간호사정 실시 시간 및 혈액순환상태, 활력증후, 사지운동, 정서적 상태 확인 등 조치 내역 기록

격리·강박을 연장하는 이유 및 기록

※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및 지시자, 수행자, 시행·해제 시간 등 기록

[별표 제Ⅴ-4-2호]

작 업 요 법 지 침

1. 정의 및 목적

작업요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요법이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요법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요법
작업요법을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요법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작업요법	1단계 : 기초 작업요법 프로그램 ↓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요법 프로그램 - 단순 조립작업 - 원내 작업장 참여 (시간제, 정규작업) ↓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요법 -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 평가 ↓ 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 ↓ 원외 작업장 임시취업 ↓ 정식취업 및 독립생활 지지

3. 원내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①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또는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요법 지침 및 적용기준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작업요법을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작업요법 일지 및 임금대장
㉳ 작업요법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④ 작업시간 및 내용 등 작업요법에 관한 사항을 작업요법기록지[별지 제Ⅳ-4-2호]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적용(참여)기준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③ 작업요법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① 약물치료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요법을 유보할 수 있다.

② 개인정신치료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신사회재활치료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요법 관리자를 참석시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요법의 종류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요법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 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 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정규 출·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요법 참여자의 임금

① 작업요법은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② 작업요법 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요법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요법을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을 실시한다.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원내 작업요법 평가서 참고).

[별지 제 Ⅳ-4-2호]

작업요법기록지

<table>
<tr><td rowspan="2">작업요법
대상자</td><td>생년월일</td><td colspan="2">성명</td><td>나이
(남, 여)</td></tr>
<tr><td>진단명</td><td>작업요법
동의 여부</td><td colspan="2">동의함 ( ) 대상자 서명
동의하지 않음( ) (서명)</td></tr>
<tr><td>작업요법
관여자</td><td colspan="2">지시자(전문의)

(서명)</td><td colspan="2">수행자(자격요건)

(서명)</td></tr>
<tr><td rowspan="2">작업시간
및 기간</td><td>1일기준

( )시간</td><td>1주기준

( )일</td><td>작업시작</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작업종료</td><td>년 월 일</td></tr>
<tr><td rowspan="2">작업내용</td><td colspan="4">작업명칭</td></tr>
<tr><td colspan="4">작업장소</td></tr>
<tr><td rowspan="2">보수지급
내역</td><td colspan="4">[ ] 없음</td></tr>
<tr><td colspan="4">[ ] 있음
– 일 자 ( )
– 금 액 ( )
– 지급방법 ( )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 은 행 명 ( )</td></tr>
</table>

작업요법 대상자 활동내역(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 Ⅳ-4-3호]

현 금 인 출 증

○ 병동 : 청구자(작업자)성명 : (인)

○ 청구금액 : _____(_____원)

○ 인출 사유 :

상기금액을 인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병동책임자 : (인)

_____ 귀하

[별지 제 Ⅳ-4-4호]

원내 작업요법 평가서

○ **환자 이름 :** ○ **일시 :**

○ **평가자 이름 :** ○ **작업장 :**

○ **최근 1달 동안의 작업자 상태에 대하여 해당하는 문항에 ○표 하시오.**

내 용	문 항	평 가
증상	1. 이유없이 혼자 웃거나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었다.	
	2.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	
	3.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공격적이다.	
대인 관계	4. 동료와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5.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해 보인다.	
	6. 이성과 너무 가까이 보인다.	
작업 수행	7. 시간 내 자리를 자주 비운다.	
	8. 작업시간 내 퇴원에 대한 이야기가 증가하였다.	
	9. 작업 중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출·퇴근, 휴식시간)	
	10. 이전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기타 사항		
총평가	귀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작업유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별표 Ⅳ-4-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5)]

대법원 법원행정처(형사심의관실)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가 합동으로 작성하여 '09년 7월 전국 정신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자료임

1. 인신보호제도 개요

○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호시설,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2. 구제청구의 관할법원·방식

○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청구는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본 안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절차안내–형사–'인신보호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용자의 의무

가. 답변서 제출 의무

○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수용의 사유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심문기일 출석 의무

○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5.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가. 임시해제

○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나. 신병보호

○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재판비용의 부담

○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별지 제Ⅳ-4-5호]

구 제 청 구 서

구제 청구자	성명 : 피수용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수용자	성명(또는 기관명) : (기관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수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구 요지 및 수용이 위법한 사유 (필요하면 별지사용)	
수용 장소	
첨부서류	☐ 있음( ) ☐ 없음

20 . . .

구제청구자 ㊞ (또는 서명)

○○법원 귀중

2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 배 경

- 국민들이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공익광고 제작방영, 대중매체 모니터링)

- 일반 국민의 효율적인 인식개선 유도를 위하여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요청

나)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가족 및 대국민 교육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확립
-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 자조활동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다)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3) 사업수행체계 등

가) 지원형태

-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수행주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원만한 수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사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자문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종결 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환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부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라.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2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 설 명	개소년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05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3,4층	02-3444-9934
부산	부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0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원 12층	051-242-2575
대구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2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라파엘관 5층	053-256-0199
인천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08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5층	032-468-9911
광주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2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대전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042-486-0005
울산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남구 화합로 105 (달동) 로하스빌딩 2층	052-716-7199
경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2008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강원	강원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0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충북	충청북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	043-217-0597
충남	충청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1	홍성군 홍북면 충청남도대로 21	041-633-9183
전북	전라북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2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둥지타운 407호	063-251-0650
전남	전라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4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50-1700
경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경주시 동대로 87, 복지동 3층(석장동)	054-748-6400
경남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201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055-239-14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내 별관 2층	064-717-3000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서울(25)	종로구	2008	종로구 성균관로15길 10	02-745-0199
	중구	2006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02-2236-6606
	용산구	2010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보건소 1층	02-2199-8340
	성동구	1998	성동구 행당로12	02-2298-1080
	광진구	2005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02-450-1895
	동대문구	2009	동대문구 홍릉로 81(청량리동)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02-963-1621
	중랑구	2005	중랑구 면목로 238 중랑구민회관 1층	02-3422-3804
	성북구	1998	성북구 화랑로 63	02-2241-6313
	강북구	1999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삼각산분소 3층	02-985-0222
	도봉구	2006	도봉구 방학로3길 117(쌍문동) 도봉구보건소내 1층	02-900-5231
	노원구	1998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5층	02-2116-4591
	은평구	2008	은평구 연서로34길 11, 3층(불광동,보건분소)	02-351-8680
	서대문구	1997	서대문구 연희로 290, 보건소별관 우리들 4층	02-337-2165
	마포구	2007	마포구 성산로4길 15 3층	02-3272-4937
	양천구	2009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1층	02-2061-8881
	강서구	1997	강서구 공항대로561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02-2600-5926
	구로구	2007	구로구 새말로 60	02-861-2284~6
	금천구	2009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02-3281-9314
	영등포구	2006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 4층	02-2670-4793
	동작구	2004	동작구 남부순환로2025 유창빌딩 2층	02-820-4072
	관악구	2008	관악구 관악로 145 3동 4층	02-879-4911
	서초구	2007	서초구 내곡동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3층	02-2155-8232
	강남구	1995	강남구 일원로9길 38 3층	02-2226-0344
	송파구	2005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2147-030
	강동구	2007	강동구 성내로 45	02-471-3223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부산(16)	중구	2013	부산 중구 중구로 70-1, 4층	051-257-7057
	서구	2013	부산 서구 부용로 30 서구보건소 202호	051-246-1981
	동구	2012	부산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동구의회 2층	051-911-4600
	영도구	2012	부산 영도구 동삼북로2, 주공1단지아파트 상가 2층 209호	051-404-3379
	부산진구	2005	부산 진구 시민공원로30 부산 진구청별관건강증진센터내2층	051)638-2662
	동래구	2005	부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동래구보거소 4층	051-507-7306
	남구	2007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61	626-4660,1
	북구	2006	부산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북구보건소덕천지소 3층	051-334-3200
	해운대구	2011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051-741-3567
	사하구	2010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051-265-0512
	금정구	1997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5층	051-518-8700
	강서구	2014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강서구보건소3층	051-970-3417
	연제구	2007	부산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보건소2층	051-861-1914
	수영구	2013	부산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2층	051-714-5681
	사상구	200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051-314-4101
	기장군	201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수로 11 정관지소4층	051-727-5386
대구(8)	중구	2007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45, 중구보건소 3층	053-256-2900
	동구	2007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79, 동구보건소 4층	053-983-8340
	서구	1999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1길 7	053-564-2595
	남구	200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연선길34 남구보건소 4층	053-628-5863
	북구	2005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3, 4층	053-353-3631
	수성구	2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053-756-5860
	달서구	2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문화관 내	053-637-7852
	달성군	200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053-643-0199
인천(11)	중구	199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중구보건소 5층	032-760-6090
	동구	2009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 2층	032-765-3690
	미추홀구	20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3청사 2층	032-421-4045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연수구	2008	인천광역시 예술로 20번길 15	032-899-9430
	남동구	2008	인천광역시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층	032-465-6412
	부평구(부평)	2017	인천광역시 부평구 287, 보건소 별관2층	032-330-5602
	부평구(삼산)	20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평천로447	032-330-1371
	계양구	200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보건지소 3층	032-547-7087
	서구	2005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032-560-5006
	강화군	2001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강화군보건소	032-930-4077
	옹진군	2020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구보건소	032-899-3122
광주(5)	동구	1999	동구 서남로 1 동구보건소 2층	062-233-0468
	남구	2004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5층	062-676-8236
	북구	2006	북구 북문대로 43, 2층	062-267-5510
	광산구	2007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 4층	062-941-8567
	서구	2004	서구 운천로 172번길 32 상무금호보건지소 2층	062-350-4195
대전(5)	동구	2011	동구 현암로 22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042-673-4619
	중구	2012	중구 수도산로 15 (대흥동)	042-257-9930
	서구	2000	서구 만년로 74 서구보건소 6층	042-488-9742
	유성구	2008	유성대로 730번길 51, 유성구보건소 2층	042-825-3527
	대덕구	2000	대덕구 석봉로 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관 2층	042-931-1671
울산(5)	중구	2014	중구 외솔큰길 225(남외동) 중구보건소 3층	052-292-2900
	남구	1998	남구 삼산중로 132 남구보건소 3층(삼산동)	052-227-1116
	동구	2006	동구 봉수로 155 동구보건소 3층	052-233-1040
	북구	2012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052-288-0043
	울주군	2008	울주군 서향교1길 67-12 울주군보건소 2층	052-262-1148
경기(37)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1996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01, 1층	031-253-5737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20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7번길 17	031-242-5737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2008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9 2층	031-247-0888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2001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4층	031-273-7511
	성남시	199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4-3220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2007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4층	031-751-2445
	고양시	1997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주교동)	031-968-2333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2011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031-908-3567
	부천시	1999	부천시 성오로 172, 3층	032-654-4024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4층	032-654-4024
	용인시	1997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기흥구 보건소 3층	031-286-0949
	안산시	1997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4
	안양시	1998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 5층	031-469-2989
	남양주시	1997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신관 1층	031-592-5891
	의정부시	1997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3층	031-838-4181
	평택시	1997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구관2층	031-658-9818
	시흥시	2004	시흥시 호현로 55	031-316-6661
	화성시	2005	화성시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1층	031-352-0175
	광명시	2008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3층	02-897-7786
	파주시	2008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1층	031-942-2117
	군포시	2002	군포시 군포로 221(부곡동)	031-461-1771
	광주시	1997	광주시 파발로 194, 보건소 별관 2층	031-762-8728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김포시	1998	김포시 사우중로 108, 보건소별관 2층	031-998-4005
	이천시	2006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7-2330
	구리시	1998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보건소 3층	031-550-2007
	양주시	2008	양주시 삼숭로61번길 10	031-840-7320
	안성시	2008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031-678-5361
	포천시	2008	포천시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031-532-1655
	오산시	1998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2층	031-374-8680
	하남시	1997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4층	031-790-6558
	의왕시	1997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 별관 1층	031-458-0682
	여주시	2007	여주시 세종로338번지 여주대학교 소통본부 2층	031-886-3435
	동두천시	1998	동두천시 중앙로 167 보건소 2층	031-863-3632
	양평군	200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마유산로 17 양평군보건소 1층	031-770-3526
	과천시	1998	과천시 관문로 69 보건소 1층	02-504-4440
	가평군	2008	가평읍 가화로 155-15	031-581-8881
	연천군	1995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내	031-832-8106
세종 (1)	세종	2012	세종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세종시립병원 2층)	044-861-8521
강원 (18)	춘천시	1998	춘천시 효제길 35	033-244-7574
	원주시	2007	원주시 원일로 139 시민문화센터 4층	033-746-0199
	강릉시	2007	강릉시 남구길23번길 24, 3·4층	033-651-9668
	동해시	2008	동해시 청운로 96 (쇄운동)	033-533-0197
	태백시	2012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4-1278
	속초시	2011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033-633-4088
	삼척시	2013	삼척시 척주로 76	033-574-0190
	홍천군	2008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5 홍천군건강증진센터 2층	033-430-4035
	횡성군	2013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5-9901
	영월군	201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033-374-0199
	철원군	2014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104
	화천군	2014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63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양구군	2013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0-2789
	인제군	2015	인제군 인제로 140번길 34	033-461-7427
	고성군	2014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2-4020
	양양군	2013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2층	033-673-0197
	평창군	2017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033-330-4833
	정선군	2017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33 1층	033-560-2790
충북 (14)	청주시 상당구	2009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043-201-3122
	청주시 서원구	2012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위너스빌딩 4층)	043-291-0199
	청주시 청원구	201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043-215-6868
	청주시 흥덕구	2017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5번길 16	043-234-8686
	충주시	2007	충주시 국원대로 78 2층	043-855-4006
	제천시	2005	제천시 의림대로 242 종합보건복지센터 3층	043-646-3075
	보은군	2008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043-544-6991
	옥천군	2012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 옥천체육센터 2층	043-730-2199
	영동군	2012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624
	증평군	2013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043-835-4276
	진천군	2008	진천군.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별관 2층	043-536-8387
	괴산군	2014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27-10	043-832-0330
	음성군	2008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043-872-1883
	단양군	2000	단양군 단양읍 별곡1로 17	043-420-3257
	청원구	2017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1층	043-215-6868
	흥덕구	2017	흥덕구 비하로 15번길16	043-234-8686
충남 (16)	천안시 서북구	2004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구보건소 2층	041-578-9709
	공주시	2007	공주시 주미길 44	041-852-1094
	보령시	2008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041-930-4184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아산시	1999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041-537-3453
	논산시	2007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041-746-8121
	계룡시	2015	계룡시 장안로 54	042-840-3571
	당진시	2007	당진시 서부로 56	041-352-4071
	금산군	2007	금산군 금산로 1559 다락원스포츠센터 1층	041-751-4721
	부여군	2013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2483
	서천군	2001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041-950-6732
	청양군	2012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041-940-4557
	홍성군	2008	홍성군 내포로136번길 30	041-630-9014
	예산군	2008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041-339-8057
	태안군	2008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	041-671-5395
	천안시 동남구	2017	동남구 버들로 40 영덕빌딩 1층	041-521-5011
	서산시	2017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6로 6	041-661-6592
전북 (14)	전주시	2000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063-273-6996
	군산시	1999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51-0363
	익산시	2000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1층	063-841-4235
	정읍시	2007	정읍시 수성1로 61 정읍시보건소 2층	063-535-2101
	남원시	2010	남원시 동문로 42-1	063-625-4122
	김제시	2007	김제시 성산길 138 보건소 2층	063-542-1350
	완주군	2012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063-262-3066
	진안군	2015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79
	고창군	2009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063-563-8751
	부안군	2014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1-5830
	무주군	2017	무주군 한풍루로 413 4층	063-320-8333
	장수군	2019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063-350-2800
	순창군	2019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063-650-5318
	임실군	2019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063-640-3123

시·도	시·군·구	개소 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남 (22)	목포시	2007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3층	061-270-4266
	여수시	2008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061-659-4255
	순천시	2007	순천시 석현동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3층	061-749-6695
	나주시	2004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층	061-333-6200
	광양시	2007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3778
	구례군	2012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47
	고흥군	2008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73
	장흥군	2007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061-862-4644
	강진군	2015	강진읍 강진읍 목리길 11	061- 430-3570
	해남군	2010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061-531-3768
	무안군	2015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052
	함평군	2012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061-320-2512
	영광군	1999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7	061-350-5666
	장성군	2012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3번지	061-390-8373
	완도군	2008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061-550-6745
	진도군	2014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0-6058
	보성군	2017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2층	061-850-5692
	곡성군	2017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2층	061-360-7584
	담양군	2017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2층	061-380-2972
	화순군	2018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화순보건소 3층	061-374-4600
	영암군	2019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061-470-6028
	신안군	2020	신안군 압 해리 천사로 1004	061-271-1004
경북 (25)	포항시 남구	2001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054-270-4091
	포항시 북구	1999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054-270-4193
	경주시	2007	경주시 양정로 300 경주시보건소 2층	054-777-1577
	김천시	2007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3층	054-433-4005
	안동시	2007	안동시 경동로 663 (남부빌딩 2층)	054-842-9933
	구미시	2000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4045
	상주시	2015	상주시 경상대로 3023	054-536-0668

시·도	시·군·구	개소 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문경시	2015	문경시 신흥로 165, 2층	054-554-0802
	영천시	2009	영천시 조양공원길 21(창구동)	054-331-6770
	경산시	2005	경산시 남매로 158	053-816-7190
	칠곡군	2001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30	054-973-2023
	봉화군	2017	봉화군 봉화읍 1203 3층	054-674-1126(7)
	성주군	2017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3층	054-930-8264(~7)
	영주시	2017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영주시치매안심센터 2층	054-639-5728
	영덕군	2017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3층	054-730-7161
	고령군	201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8	054-950-7900
	구미시 선산	2018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054-480-4377
	영양군	2018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197
	예천군	2018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054-650-8084
	울진군	2018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3-1250
	의성군	2018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1122-30	054-833-0046
	청도군	2018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9-15	054-373-8006
	청송군	2018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054-870-7342
	군위군	2019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054-380-7422
	울릉군	2020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054-790-6871
경남 (20)	창원시 창원	199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보건소 4층)	055-287-1223
	창원시 마산	2001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6031
	창원시 진해	2007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서부보건지소 3층)	055-225-6691
	진주시	2001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055-749-5774
	통영시	2008	통영시 안개4길 108	055-650-6158
	사천시	2008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보건소 2층)	055-831-2795
	김해시	2001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055-320-5949
	밀양시	2012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보건소별관 2층)	055-359-7078
	거제시	2007	거제시 수양로 506	055-639-6119
	양산시	2007	양산시 중앙로 7-32(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	055-367-2255

시·도	시·군·구	개소년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의령군	2014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93
	함안군	2003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 4길 10	055-580-3201
	창녕군	2015	창녕군(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25
	고성군	2014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고성군보건소 2층)	055-670 4057
	남해군	20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785
	하동군	2008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읍내리)	055-880-6647
	함양군	2015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055-960-5358
	거창군	2013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83
	합천군	2007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055-930-4835
	산청군	2017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91
제주 (2)	제주시	2000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2층)	064-728-4074
	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서홍동)	064-760-6020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시·도	기관명	시·군·구	주소	연락처
서울 (3)	강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북구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2층	02-989-9223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53 백윤빌딩 2층	02-6082-6793
	노원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12동 1층	02-6941-3677
부산 (3)	부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서구 구덕로 179 융합의학연구동 2층	051-246-7570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해운대구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1층	051-545-1172
	사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상구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85 주공아파트1단지 나상가 2층	051-988-1191
대구 (2)	대구동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 아양로 246-1 3층	053-957-8817
	달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달서구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문화관내	053-638-3778
인천 (5)	계양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계양구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청사 1층	032-555-8765
	부평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평구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5 청천 2동 주민센터 3층	032-507-3404~5
	연수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연수구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 사업소 2층	032-899-9430
	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 인중로 377 2층	032-764-1183
	남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동구	남동구 남동대로 922번길 52(간석동)	032-468-6412
광주 (5)	광주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서구 회재로 897-1 용현빌딩 2층	062-654-3802~3
	광주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북구	북구 유동 중가로 26 4층	062-525-1195
	광주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 구성로 190 2층	062-222-5666

시·도	기관명	시·군·구	주소	연락처
	광주남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구	남구 독립로 25-1	062-413-1195
	광주광산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산구	광산구 상무대로 239-1 5층	062-714-1233
대전 (3)	대전대덕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덕구	대덕구 중리서로 42, 3층	042-635-8275
	대전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서구 갈마로40, 3층	042-527-9125
	대전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 동대전로 333, 3층	042-286-8275~6
울산 (2)	울산남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구	남구 달동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5층	052-275-1117
	울산중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구	중구 학성로 84-1번지 3층	052-245-9007
경기 (8)	고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 (백석동) 1층	031-932-7071
	성남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성남시	성남시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1-2768/9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구중부소방서 2층	031-256-9478
	안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2층	031-411-8445,6
	안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 5층	031-464-0175
	의정부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로 52번길 18, 의정부동 삼보빌딩 3층	031-829-5001
	파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파주시	파주시 봉천로 68, 2층	031-948-8004 031-948-8044
	화성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화성시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정남보건지소 1층	031-354-6614
강원 (3)	강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릉시	강릉시 경강로 2279 강맥빌딩 A동 2층	033-653-9667
	원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원주시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건강문화센터 지하 1층	033-748-5119
	춘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춘천시	춘천시 삭주로 84 수인빌딩 3층	033-255-3482

시·도	기관명	시·군·구	주소	연락처
충북 (1)	청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72번길 21 (흥덕보건소별관) 3층	043-272-0067
충남 (2)	아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아산시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번지	041-537-3453
	천안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영덕빌딩 1층	041-577-8097~8
전북 (2)	군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64-0061~3
	전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063-223-4567
전남 (2)	목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목포시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061-284-9694
	여수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여수시	여수시 시청서4길 47 여수시보건소	061-659-4295~7
경북 (2)	구미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구미시	구미시 검성로 115-1	054-474-9791
	포항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포항시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북구보건소, 별관 2층	054-270-4148
경남 (5)	김해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김해시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055-314-0317
	마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마산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3층	055-247-6994
	진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진주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20, 2층	055-758-7801
	창원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신월동 창원보건소 4층	055-261-5011
	양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7-32 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	055-367-9072
제주 (2)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제주시 서광로175 아세아 빌딩 5층	064-759-0911
	서귀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기 52	064-760-6552

라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광역)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09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	02-3458-1000
서울 (기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2012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4층	02-916-9118
인천 (광역)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2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5층	032-468-9917
경기 (기초)	광명시자살예방센터	201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1층 11호	02-2618-8255
경기 (기초)	수원시자살예방센터	2001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3층	031-214-7942
경기 (기초)	안산시자살예방센터	2013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	031-418-0123

* 부설(44개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임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108)	종로구	다정이네	종로구 세검정로7가길 18, 301호	02-395-5397
	종로구	종로아이존	종로구 자하문로89	02-6395-7045
	종로구	종로행복일굼터	종로구 종로43길 9	02-744-9707
	용산구	용산새빛	용산구 원효로 35길 1-22	02-719-3369
	용산구	스롤라인	용산구 백범로90길8이레빌딩1층	02-701-5325
	성동구	성모다움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종합사회복지관 4층	02-2290-3170
	성동구	멋진월요일	성동구 성덕정길 116 4층	070-8633-9051
	광진구	가람슬기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109, 301호	02-444-9145
	광진구	소망홈	광진구 천호대로113길29	02-3425-2033
	광진구	우리집	광진구 긴고랑로36길57-11,202호	02-456-6163
	광진구	광진오사랑의집	광진구 중곡4동 긴고랑로 36길57-11 이레하우스301호	02-499-6162
	광진구	돌봄사랑채1	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8	02-3409-9444
	광진구	돌봄사랑채2	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8	02-3409-9444
	광진구	돌봄사랑채3	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8	02-3409-9444
	광진구	동그라미	광진구 능동로 43길 30-11, 202호	02-461-8696
	광진구	소망나무	광진구 능동로 50길 8 2층	02-6403-7776
	광진구	누리봄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02-465-7065
	동대문구	길벗둥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8길 36, 1층	070-8180-7224
	동대문구	마인드	동대문구 전농로 38길 35 2,3층	02-3394-5144
	동대문구	위드유	동대문구 한천로424 인월빌딩4층	02-2243-1992
	동대문구	도담	동대문구 사가정로258,4층	070-8183-2303
	중랑구	중랑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65 우주빌딩 4층	02-2207-9964
	중랑구	어깨동무	중랑구 동일로92길 39-21(면목동, 그린홈)	02-6407-9974
	중랑구	밝은길	중랑구 상보중앙로 5가길 48, 2층	070-8286-9554
	중랑구	어울림	중랑구 용마산로 331-1 B동 4층 (면목동, 강남케스빌)	02-432-9974
	중랑구	중랑아이존	중랑구 동일로 830 3층	02-2213-3386
	중랑구	드림하우스	중랑구 망우로74가길 9	02-909-4620
	성북구	한울림	성북구 북악산로1다길20 201호	02-943-2117
	성북구	다함정신건강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로34길 39 백옥빌딩 4층	02-926-2172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성북구	나눔터	성북구 석관동 133-44 태영빌딩 501호	02-959-7184
	강북구	아름다운교회사랑의집	강북구 도봉로71가길 27	02-945-5443
	강북구	소담	강북구 한천로166길 30, 3층	02-997-0444
	강북구	푸른존	강북구 도봉로66길 35, 1층	02-944-5811~5
	도봉구	내동화세상	도봉구 도봉산3길 17-16	02-954-2727
	도봉구	유쾌한집1	도봉구 도봉산 3길 12-4 401호	070-8670-7026
	도봉구	유쾌한집2	도봉구 도봉산 3길 12-4 401호	070-8670-7026
	도봉구	유쾌한집3	도봉구 도봉산 3길 12-4 401호	070-8670-7026
	도봉구	유쾌한집4	도봉구 도봉산 3길 12-4 401호	070-8670-7026
	도봉구	예스홈	도봉구 우이천로 38나길 53, 201호	02-908-0884
	도봉구	디딤돌사회복귀시설	도봉구 도당로 27길 47 2층	02-954-2279
	도봉구	그라따	도봉구 도봉로181가길6 1층	070-8111-6602
	도봉구	행복한하루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7-7 301호	02-3492-3159
	도봉구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02-3491-6624
	노원구	노원희망공간이룸	노원구 한글비석로 422(상계동 2층)	02-939-4200
	노원구	가온길	노원구 공릉로58나길 17	02-6403-7790
	노원구	평화정신재활시설	노원구 노원로 331 3층 평화종합사회복지관	02-949-0121
	노원구	새롬마을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43 201호	02-934-5060
	은평구	에버그린하우스	은평구 갈현동 267-57 B01호	02-352-0079
	은평구	파란마음	은평구 갈현로 33길 32,201호	02-6407-4515
	은평구	카프치료공동체 둥지	은평구 영서로 37가길 10-10 201호	02-356-5414
	은평구	해사랑	은평구 연서로41길 41, 301호	02-2695-7328
	은평구	해맑은뜰	은평구 갈현로47길 32-14 101호	02-389-8324
	은평구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02-3157-0884
	서대문구	서대문해벗누리	서대문구 모래내로173	02-375-5042
	서대문구	한마음의집	서대문구 연희로39다길 20	010-3772-2176
	서대문구	한빛하우스	서대문구 연희로39다길 20, 한빛하이츠 B동 201호	02-379-8205
	서대문구	로뎀나무	서대문구 증가로 24마길 19, 101호	02-376-3415
	서대문구	샹가	서대문구 증가로 10길 16- 4(302호)	010-4750-4779
	서대문구	해비치	서대문구 증가로 24마길 11	02-3152-3013
	서대문구	서대문아이존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2층	02.332.8033
	마포구	태화샘솟는집	마포구 마포대로 173-20 태화샘솟는집	02-392-1155
	마포구	카프치료공동체감나무집	마포구 연남동 565-37	02-3143-6692
	마포구	KARF여성거주시설	마포구 성미산로5길 50-15	02-325-4107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마포구	해오름	마포구 망원로 11길 27-54	02-323-5765
	양천구	하늘소	양천구 신월동 76-3 2층	070-7517-0281
	양천구	아름드리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16- 1, 201호	02-2696-7725
	양천구	서울다르크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7가길 19-7 다나네스트빌 103호	010-2734-4141
	양천구	목동하늘샘	양천구 목동중앙남로9길 28-1, 201호	02-2061-1367
	양천구	두드림마음건강센터	양천구 목동 등촌로 194 4층	02-2645-1941
	양천구	열린세상	양천구 남부순환로450,301호	02-2693-7328
	양천구	마음자리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 16다길 9, 204호	070-4082-0454
	양천구	양천아이존	양천구 화곡로 47	02-2065-2513
	강서구	한마음세상	강서구 초록마을로 32길 33-18	02-2699-7324
	강서구	여울목	강서구 화곡로 13길 66-28, 301호	02-2605-2176
	강서구	강서그룹홈	강서구 초록마을로9길 9, 201호	02-2699-7328
	강서구	강서양지	강서구 등촌로35가길26, 301호	02-2696-3450
	강서구	새벗클럽하우스	강서구 강서로52길 88, 3층~4층	02-3662-9004
	강서구	공감플러스	강서구 화곡로61길 130, 3층	02-3663-2035
	강서구	예체르하우스	강서구 강서로 18아길 25-14 201호	02-395-5980
	구로구	다솜	구로구 고척로 10길 9-5	070-8262-1330
	구로구	구로구공동희망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50 2층	02-6379-3500
	구로구	아름다운 세상	구로구 고척로 52 라길 11-23	070-8812-7754
	구로구	꿈꾸는달팽이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0 동일테크노타운 2차 302호	02-855-9135
	구로구	한그루	구로구 서해안로 30길 17, 301	02-6213-0314
	구로구	수린목	구로구 고척로3길 99 대하쉐르빌 9동 101호	070-7740-2369
	금천구	가득한집	금천구 시흥대로 133-7 301호	02-806-8524
	금천구	엘림	금천구 시흥대로54길 19, 301호	02-809-9910
	영등포구	대길푸른초장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14	02-831-9910
	영등포구	좋은사람들	영등포구 도림로 188-1(대림동)	02-845-8880
	영등포구	영등포아이존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14, 2층	02-6264-9915
	관악구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관악구 장군봉길 46	02-877-9964
	관악구	새로돋는집	관악구 대학 18길 41, 401호	02-872-9961
	관악구	꿈꾸는집	관악구 당곡6길 65, 201호	02-877-9974
	관악구	관악좋은집	관악구 법원단지32길 5, 201호	02-858-1019
	관악구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4, 광일빌딩 4층	02-522-4404
	관악구	리커버리하우스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116, 2층	02-877-9984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초구	알코올의존자 사회복귀시설까리따스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번지	02-521-2364
	서초구	서초열린세상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	02-3477-9817
	서초구	서초아이존	서초구 방배로173 방배열린문화센터 B1	02-535-2940
	강남구	태화해뜨는샘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02-2040-1780
	송파구	하얀마음	송파구 석촌호수로 20길 28-1 201호	02-425-1274
	송파구	송파어우러기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204호	02-488-2228
	송파구	송파아이존	송파구 충민로6길 17	02-2144-1140~2
	강동구	맑은샘	강동구 구천면로 28길 21 401호	02-6012-7963
	강동구	서울우리집	강동구 상일로 25길 7-12, 201호	02-481-1272
	강동구	행복정신건강센터	강동구 진황도로 119 4층	02-426-0981
	강동구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	02-475-1403
	중구	중구아이존	중구 서소문로6길 16	02-2038-7650
부산 (18)	서구	아미정신건강센터	서구 아미로12번길 25	051-244-2005
	기장군	행복나무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83, 대한빌딩 301	051-727-7235
	영도구	기쁜우리사회복귀시설	영도구 함지로 33-10	051-403-4388
	부산진구	한미래사회복귀센터	부산진구 거제대로 16-4, 4층 (양정1동, 교양빌딩)	051-646-7425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1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101호	051-894-8010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2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201호	051-894-8011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3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202호	051-894-8010
	동래구	사직클럽하우스	동래구 명장로 20번길 13	051-503-8785
	동래구	참살이클럽하우스	동래구 중앙대로 1331(3층)	051-554-0562
	남구	행복한집	남구 용소로 64번길 49-1, 1층	051-635-5548
	해운대구	송국클럽하우스	해운대구 우동1로 57 대영빌딩 2.3층	051-747-0578
	금정구	보듬자리	금정구 금샘로 52	051-518-5849
	금정구	디딤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2, 2층	051-518-5849
	금정구	동래직업재활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2093, 10층	051-581-4165
	연제구	위캔클럽	연제구 중앙대로 1239, 8층 위캔클럽	051-507-8008
	수영구	컴넷하우스	수영구 망미배산로 76번나길27	051-759-1268
	사상구	부산소테리아하우스	사상구 삼덕로95(덕포동)	051-302-0655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사상구	부산광역시정신재활시설	사상구 학감대로39번길 104-36, 3층	051-710-7750
대구 (15)	중구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중구 명덕로 261(대봉동 156- 1) 2층	053-425-0425
	동구	달구벌정신건강센터	동구 신성로 63, 3층(신암동)	053-941-8816
	동구	중독자재활시설 세잎클로버	동구 해동로8길 41(지저동)	053-983-8817
	서구	미래엔미소클럽	서구 옥산로 6길 9 4층	053-341-8310
	남구	비콘	남구 현충로 98	053-628-5868
	남구	행복한집	남구 장전1길 149	053-625-0788
	남구	행복한집2	대구 남구 자유4길 6	053-655-5882
	북구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북구 대학로 133	053-959-9925
	북구	미래지움	북구 대학로 61-1	053-352-8312
	수성구	수성베네스트	수성구 수성로 285	053-762.5866
	달서구	대구재활센터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24	053-582-5826
	달서구	우리둥지	달서구 와룡로9길75 파라다이스A 505호	053-583-5827
	달서구	베네스트마음건강센터	달서구 학산로 246 삼정빌딩 202호	053-635-5865
	달성군	달성정신재활센터 해피하우스	달성군 성화로 20, 2층	053-638-7009
	달성군	꿈이있는사람들	화원읍 비슬로 523길 3-26	053-641-7006
인천 (12)	미추홀구	미추홀하우스	남구 경인로268번길 33-13	032-872-0320
	미추홀구	꿈의둥지	남구 소성로318번길 18-26	070-8616-4587
	연수구	연수새누리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032-813-4760
	연수구	리앤리	연수구 한나루로 186번길54	032-207-9477
	연수구	해피하우스	연수구 한나루186번길54 101호	070-4090-0811
	남동구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17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별관3층	032-472-6419
	남동구	마음자리	남동구 경인로 599번길 26-6 좋은하루 다동 201호, 202호	032-502-7081
	부평구	월산사회복귀시설	부평구 평천로 319-5 3층	032-507-4892
	부평구	공동생활가정 희망샘	부평구 대정로 30,5층	032-361-7880
	계양구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계양구 계양산로 19(2층)	032-545-7585
	강화군	은혜의집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646- 2	032-933-4020
	강화군	강화희망일터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359, 1004호	032-937-6801
광주 (12)	북구	광주정신재활센터	북구 서하로 240-18, 2층	062-512-7039
	북구	경희하우스	북구 연양로105번길14	062-575-8754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북구	아가페하우스	북구양산택지로37번길30가람하이빌4층	062-234-4507
	북구	빛고을베델	북구 우치로 238번길 28 드림빌 503호	062-266-7216
	서구	빛고을보건복지센터	서구 상무대로 916번길 4-3	062-430-5000
	서구	광주해피라이프	서구 화정동 786-6번지 6층	062-364-7473
	서구	맑은샘	서구 독립로 200	062-363-1110
	동구	광주새생명보건센터	동구 중흥로 197	062-514-0072
	동구	인광희망의샘	동구 금남로 170-24	062-233-4006
	광산구	송광사회복귀시설	광산구 우산로17	062-941-8250
	남구	요한빌리지	남구 서오층석탑 2길 1, 2층	062-367-3369
	남구	소화햇살둥지	남구 봉선1로 86, 102동 817호(모아아파트)	062-676-4033
대전 (29)	동구	생명의터	동구 동부로 56-7, 3층	042-274-1982
	동구	뷰티플마인드	동구 비래서로42번길 134, 1층	042-335-0330
	중구	좋은이웃센터	중구 대흥로171(대흥동)	042-223-8582
	중구	버팀목	중구 문창로123(문창동)	042-223-6767
	중구	밝은세상	중구 대종로449(대흥동)	042-224-1500
	중구	아름드리	중구 대흥로87(대흥동)	042-222-1140
	중구	꽃피는집	중구 테미로8(대흥동)	070-7867-8338
	중구	동행	중구 유천로48번길31(유천동)	042-585-0552
	서구	소망의집	서구 실미길 116(우명동)	042-586-9954
	서구	한울타리	서구 도산로 131-1(도마동)	042-536-1239
	서구	고운누리	서구 도마로 25번길 54, 101호(도마동)	042-522-8875
	서구	섭리가정	서구 관저로 184, 1209동 804호 (관저동, 느리울마을)	042-544-7933
	서구	사랑채	서구 정림동로 29-11(정림동)	042-525-8582
	서구	한가정	서구 유등로 655번길 18-7(탄방동)	042-488-0803
	서구	섭리그룹홈	서구 관저로 48, 704동 101호 (관저동, 구봉마을)	042-543-8532
	서구	섭리행복가정	서구 관저로 48, 702동 309호 (관저동, 구봉마을)	042-545-1916
	서구	어울림	서구 도마로 25번길 54, 201호(도마동)	042-533-8875
	서구	한빛둥지	서구 변동로 12-1(변동)	042-587-7888
	유성구	쉼터공동체	유성구 세동로474-35	042-825-8269
	유성구	보금자리	유성구 유성대로 694번길 95, 3층(봉명동)	042-824-1601
	유성구	다옴공동체	유성구 원내로9-8	042-545-6567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유성구	다솜	유성구 은구비남로55 열매마을7단지 704-1801	042-822-7942
	유성구	다원공동체	유성구 진잠옛로135번길 115	042-822-7161
	유성구	도란도란	유성구 송강로15 한솔(아) 104동 202호	070-8286-0992
	대덕구	햇살한줌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오정동)	042-622-7018
	대덕구	마중물	대덕구 중리동로27번길 14-11(중리동)	042-582-2337
	대덕구	행복울타리	대덕구 대전로 1387번길 28(읍내동)	070-4222-2066
	대덕구	힐링타운	대덕구 송촌남로 55-12(송촌동)	042-624-1329
	대덕구	해찬솔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21-1,B동101호 (석봉동, 진빌리지)	070-5103-7682
울산 (2)	남구	새마음정신문화센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6층	052-275-1116
	울주군	좋은친구들	울주군 온산읍 신경10길 12	052-238-7643
경기 (57)	수원시	홀로서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21번길 22	031-226-0030
	수원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031-242-0877
	수원시	장안좋은집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08번길 38-14	031-242-4401
	수원시	집으로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32, 110-102	070-4177-4868
	수원시	행복샘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 106동 105호	031-253-9789
	수원시	향기로운집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13번길 4, 2층	070-4306-6838
	수원시	새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0-14번지 2층	031-251-0557
	수원시	네잎클로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21번길 34-20나동 2층	031-248-9981
	수원시	경기다사모	수원시팔달구매산로89,2층	031-256-2258
	수원시	더숲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290번길 34-5, 2-201(매탄동 우주타운 9동 201호)	070-7721-5951
	수원시	서희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33-1(화서동)	031-269-0180
	수원시	도담도담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30번길 45 (롯데빌라 마동)102호	031-273-0997
	수원시	우리마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 영통우리빌 나동	031-273-0224
	성남시	고운누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93 금성빌딩 5층	031-753-2490
	성남시	해솔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2번길 6	031-626-8062
	성남시	담쟁이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 45-6 럭키아트빌 202호	031-735-3975
	성남시	남자담쟁이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8번길 59-5, 1층	031-735-3975
	성남시	꿈터	성남시 분당구 느타로 51번길 16-9, 1층	031-786-1004
	부천시	동광임파워먼트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91번길 30 동성프라자 701호, 702호	032-323-3206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부천시	부천공동희망학교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40-1, 2층	032-679-1901
	부천시	쉐어하우스	부천시 소사로126번길 59-7, 2층	032-349-3312
	부천시	세친구	부천시 송내대로 42번길 62 나동 410호	032-662-3379
	용인시	우리집	용인시 금학로 277번길 8-4 우리집	031-322-3911
	용인시	우리집2	용인시 금학로 277번길 8-4 우리집	031-322-3911
	용인시	두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23번길 2 204호	031-322-7940
	안양시	다온집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06번길 8402호	031-468-9861
	안산시	힐링하우스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7 401호	031-418-0965
	안산시	해맑은미소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 1길4 C동 101호	031-502-1733
	평택시	나무	평택시 평택4로 39, 6층	031-647-0909
	평택시	해피하우스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0-11, 하얘빌라 2동 103호	031-657-6223
	평택시	좋은날	평택시 통미로 18 가원빌라 가동 301호	031-618-7293
	시흥시	아름다운세상	시흥시 군자로 466번길 37,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	031-492-9955
	화성시	사랑밭	화성시 10용사로 661-69	031-376-5690
	화성시	남양집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68-6, 101호	031-376-0797
	화성시	해바라기	화성시 병점3로 38-2 태림빌라 다동 101호	031-376-3261
	화성시	길벗	화성시 병점로 17-7, 201호(진안동)	031-226-7951
	화성시	사랑나눔	화성시 복만터길 72번길 7-18 일주빌라 1동 101호	070-8223-2816
	안성시	달팽이의 꿈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02-16	031-676-1060
	안성시	동그라미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702-16	031-677-1060
	안성시	온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 32	031-654-3220
	오산시	늘푸름	오산시 은여울로 59	031-373-1900
	오산시	희망집	오산시 경기동로 8번길 28 라동 102호	031-372-5410
	오산시	새동네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14 우성그린빌라 104동 102호	031-376-9129
	고양시	새희망둥지	고양시 일산동구 상지석길 443	031-977-9780
	고양시	카프이용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 1층	031-810-9251
	고양시	기쁨해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5번길 76 3층	031-813-3031
	고양시	삶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 414호	031-904-5705
	김포시	바람숲	김포시 대서명로 8번길 21, 형우이즈뷰 나동	031-989-5556
	남양주시	목화밭	남양주시 경춘로양골2길 11-6, B동 201호(금곡동)	031-595-5068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의정부시	이레	의정부시 호국로 1304 제이에스 베네스트 301호(의정부동)	031-856-1500
	파주시	파주혜민의집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22, 성원아파트 102동 703호	031-948-1191
	파주시	혜민재활의집	파주시 조리읍 문원길 263-6 밀레니엄 B-202호	031-946-0023
	파주시	혜민재활의집2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87, 303호	031-946-0023
	파주시	파주혜민의 직업재활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29, 봉일천프라자 304호	031-941-2758
	포천시	헤세드하우스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64	031-541-7191
	포천시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코람데오	소흘읍 호국로 5번길 14 302호	031-541-7191
	포천시	라온	포천시 삼육사로 2029 엘리트빌리지 가동	031-542-9500
강원 (4)	춘천시	우리내꿈터	춘천시 중앙로 104-1 2층	033-255-0661
	춘천시	평화의집	춘천시 춘천로 281번길 14-6	033-241-7929
	원주시	별자리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217-19	033-747-1127
	강릉시	참좋은집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033-651-6293
충북 (11)	청주시 (서원구)	디딤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4길 126	043-269-0145
	청주시 (서원구)	청주정신건강센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043-285-0102
	청주시 (서원구)	우리들정신건강센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89	043-267-5835
	청주시 (서원구)	소망나래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59번길 18-1	043-296-0901
	청주시 (청원구)	선재공동생활가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2길 15-25	043-212-5060
	청주시 (흥덕구)	행복이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길 13-9 301호	043-235-8400
	충주시	해피하우스다솜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654-17	043-856-2001
	충주시	충주어울림센터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	043-856-0509
	증평군	라파의 집	증평군 증평읍 외룡길 32-24	043-838-3112
	옥천군	별뜰	옥천군 옥천읍 삼청3길 40	043-732-5758
	괴산군	닛시복지마을	괴산군 문광면 흑석2길 20- 148	043-833-7549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충남 (22)	천안시 동남구	선재원	천안시 동남구 청수7로 9-4	041-554-0315
	천안시 동남구	희망	천안시 동남구 고재 24길 5	041-579-7768
	천안시 동남구	좋은세상	천안시 동남구 구성12길 28-1	041-523-3329
	천안시 동남구	행복의꿈	천안시 동남구 다가13길 17	041-577-2859
	천안시 동남구	품	천안시 동남구 양지19길 12- 13	070-7525-5000
	천안시 동남구	좋은우리	천안시 동남구다가말 2길45, 403호	041-522-3327
	천안시 동남구	다우리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19-4	041-622-3651
	천안시 동남구	소명	천안시 동남구 양지4길47	041-579-6097
	천안시 동남구	하모니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버들6길 24-1 (원성동 309-10)	041-551-2854
	천안시 서북구	나비의꿈	천안시 서북구 선영2길7	041-522-0048
	천안시 서북구	마음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 55-1	041-592-7522
	천안시 서북구	비타민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54	041-578-4774
	공주시	도래샘	공주시 큰우물길 3-1(중학동)	041-858-1661
	아산시	가온누리	아산시 번영로 169번 길 6-5	041-548-3375
	아산시	보금자리	아산시 초사길 3-88	041-545-0054
	아산시	좋은이웃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681번길 75	041-544-4581
	논산시	보람의집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3	041-735-9984
	계룡시	세움공동체	계룡시 엄사면 번영8길 15-2	042-544-3398
	서산시	내마음까페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 늘푸른오스카빌 102동 1005호	010-5402-8499
	부여군	정다운집	부여군 외산면 외산로79번길31, 영진빌라1동101호	041-837-0675
	홍성군	라온의 집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번지	041-631-2610
	예산군	샤론의집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56	041-334-7952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세종 (3)	연서면	늘푸른집	연서면 효교로 135-22	044-868-0210
	부강면	꽃동네치료공동체	부강면 노호등곡 1로 237, 1층	044-269-3948
	전의면	해인공동생활가정	전의면산단길3-11	010-3058-3589
전북 (21)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20-29(2~5층)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2길23(1,2층)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40(1층)	063-232-5558
	전주시	아름다운세상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063-244-2816
	전주시	마음건강회복홈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25	063-224-7032
	전주시	마음건강힐링홈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20- 17	063-904-4334
	전주시	아름다운집	전주시 덕진구 인교9길 11,401	070-8201-2816
	전주시	꿈이있는집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23- 3,402	070-7561-3714
	전주시	행복한집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35- 25,501	070-4141-0052
	군산시	희망의쉼터	군산시 둔배미길 6-2	063-442-4599
	군산시	희망의그루터기	군산시 둔배미길 6-6	063-445-5990
	익산시	둥근마음	익산시 목천로 229, 1~2층(인화동1가)	063-841-6446
	익산시	둥근나래꿈여성홈	익산시 목천로 229. 3층(인화동1가)	070-4099-3934
	익산시	둥근나래꿈남성홈	익산시 목천로 229. 3층(인화동1가)	070-4099-3930
	익산시	참마음	익산시 황등면 황등중앙로 112	063-837-6446
	익산시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익산시 인북로2길 53(인화동2가)	063-857-4031
	정읍시	마음사랑의집	정읍시 벚꽃로 323	063-533-8233
	남원시	성일유엔아이	남원시 사매면 춘향로 822- 129	063-634-2344
	김제시	서로돕는마을	김제시 금구면 낙산1길 46	063-544-3380
	완주군	한사랑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1	063-232-7567
	진안군	소망의집	진안군 진안읍 원반월안길 39-2	063-432-2194
	장수군	장수보건복지센터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400	063-351-7130
	임실군	동행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1716-15	063-643-0764
전남 (3)	순천시	사랑샘	순천시 강변로 977	061-753-7770
	영광군	영광두빛나래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8	061-350-3540
	영광군	새롬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264-4	061-350-3067
경북 (21)	포항시	브솔시냇가	포항시 남구 상공로 204	054-275-0303
	포항시	벧엘의 사닥다리	포항시 남구 중앙로 91번길 12 대명뉴타운 1동 509호	054-293-0924
	경주시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	경주시 북성로 124, 2층	054-741-8805
	경주시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	경주시 동성로 35	054-777-5363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경주시	어울림	경주시 석장1길29-36 캐슬A동 101호	054-777-1988
	경주시	어울림2	경주시 석장1길 29-36,405호	054-777-1988
	김천시	사랑의집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42	054-435-6067
	안동시	대성재활센터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260	054-822-9250
	안동시	징검다리	안동시 경동로1047-1(용상동)	054-823-9250
	영주시	새희망재활센터	영주시 반지미로 275-11	054-635-0044
	영천시	낑알이 공동체	영천시 영화새싹길 2-19	010-4450-2637
	영천시	낑알이공동체2호	영천시 교촌동서길14	010-4450-2637
	영천시	낑알이공동체3호	영천시 쌍계길 104	010-4450-2637
	상주시	그린나래	상주시 만산8길61	054-534-7585
	경산시	희망의집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 841-9	053-854-1888
	경산시	희망의집2	경산시 자인면 북사로1길 31-1 서광빌라 6동 302호	053-854-1888
	경산시	희망의집3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18 서광골든빌라 202호	053)-854-1888
	경산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조형예술대학3호관1층	053-850-5956
	청도군	요셉의집	청도군 이서면 서원길 3-140	054-371-0024
	칠곡군	소중한사람들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60	054-976-0041
	칠곡군	행복자리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28-18 101동 307호	054-976-0405
경남(5)	진주시	사랑마을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30	055-762-3618
	양산시	벧엘클럽하우스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49-94 벧엘클럽하우스	055-387-6127
	양산시	숭인정신재활시설	양산시 모래들 1길 91	055-379-0220
	김해시	DARC 리본하우스	김해시 평전로 93번길 10-19	010-6812-6848
	고성군	주순애원	고성군 고성읍 우산2길 312	055-674-7762
제주 (5)	제주시	제주정진재활센터	제주시 동광로1길 11호 4층	064-742-9500
	제주시	길정신건강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88-17	064-796-7003
	제주시	우리야	신선동길 3-1	064-751-7400
	제주시	볼리션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제주도 제주시 설촌로 2길 30,1층	064-726-8476
	제주시	그루터기	제주시 원당북로 65	064-759-2254

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3)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031-323-5703
	은평구	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02-3156-6400
	종로구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22	031-826-3300
부산(3)	서구	그리스도요양원	서구 옥천로 130번길 40	051-257-0103
	동래구	송원정신요양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 63	055-375-1799
	사하구	자매정신요양원	사하구 사리로 37	051-207-3845
대구(3)	동구	정심수양원	동구 팔공산로 254길 123	053-982-7592
	북구	성부정신수양원	북구 복현로 34길 18-17	053-382-2915
	달성군	성요한의집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053-267-4300
인천(2)	서구	소망의집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	032-562-5101
	강화군	강화정신요양원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20번길 19-3	032-933-4578
광주(4)	동구	진산요양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061-336-1911
	동구	빛고을정신요양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22	061-337-3427
	남구	소화누리	남구 용대로 74번길 27	062-675-4024
	남구	귀일정신요양원	남구 용대로 74번길 21	062-672-9931
대전(4)	동구	대전정신요양원	동구 옥천로 315	042-284-6604
	서구	우리누리	서구 장안로 835	042-585-2778
	유성구	신생원	유성구 진잠옛로 135번길 115	042-822-9215
	유성구	심경장원	유성구 진잠옛로 222-170	042-822-1601
울산(1)	울주군	성애원	울주군 남명리1길 34-48	052-262-7227
세종(1)	세종	방주의 집	전동면 솔티로 293-3	044-862-7000
경기(6)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54	031-333-6881
	화성시	은혜원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94-24	031-351-2772
	오산시	승우정신요양원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9	031-373-3895
	고양시	박애원	고양시 일산동구 상지석길 441	031-977-5280
	동두천시	동두천요양원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43-15	031-867-9820
	가평군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가평군 하면 꽃동네길 60번지	031-589-0210
충북(4)	청주시	상록원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043-253-4760
	옥천군	영생원	옥천군 옥천읍 삼청3길 34	043-731-0601
	옥천군	부활원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109	043-732-5353
	음성군	꽃동네정신요양원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22	043-879-0210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충남 (10)	천안시 동남구	기독성심원	천안시 동남구 성심원길 124	041-553-6031
	천안시 동남구	마음편한집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행암길 44-67	041-523-2531
	공주시	공주벧엘정신요양원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20	041-855-6342
	아산시	파랑새둥지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842번길 111	041-546-8312
	논산시	한울빌리지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041-735-0921
	논산시	성지드림빌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041-735-0307
	논산시	논산정신요양원	논산시 상월면 월오1길 54	041-732-9666
	부여군	오석산요양원	부여군 부여읍 청마로 61	041-835-5900
	홍성군	홍성정신요양원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041-632-3108
	예산군	예산정신요양원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58	041-334-7951
전북 (4)	전주시	참사랑낙원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125	063-288-0484
	익산시	삼정원	익산시 금마면 쌍능길 145	063-836-7021
	남원시	스마일빌	남원시 대면대곡 신계길 397	063-626-8666
	완주군	정심원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343번지	063-243-1212
전남 (4)	목포시	성산정신요양원	목포시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061-280-6530
	순천시	인선요양원	순천시 매봉길30	061-721-0264
	해남군	신혜힐링타운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061-532-4048
	장성군	시일건강타운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445	061-394-3210
경북 (5)	김천시	영남정신요양원	김천시 어모면 작점로 640	054-435-5877
	안동시	대성그린빌	안동시 임하면 진사리길 14	054-822-8870
	영주시	새희망힐링스	영주시 반지미로 275-15	054-634-3220
	영천시	마야정신요양원	영천시 북안면 내서로 55-24	054-333-5006
	상주시	천봉산요양원	상주시 만산 8길 70	054-535-4654
경남 (4)	창원시	마산정신요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055-271-4664
	김해시	생림정신요양원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775	055-323-9511
	고성군	고성정신요양원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268-92	055-672-6659
	함양군	함양정신요양원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	055-962-2071
제주(1)	제주시	무지개마을	제주시 아봉로 449-1	064-723-2256

2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 ' ※ ' 도구는 공공자유저작물(public domain)로 원저작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단, 원저작권자가 제공한 공공자유저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아래에서 (○)로 표시된 도구)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2차 저작권자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참조(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신규> 일반 정신 건강	***한국어판 정신건강 선별도구 (K10)***	· 김용섹(2011). 한국어판 정신건강 선별도구(K10 . K6)의 타당화 연구: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7 2011. 4. pp. 65-88. · www.hcp.med.harvard.edu/ncs/k6_scales.php	성인 (주로 노인)	○	○
	한국어판 정신건강 선별도구-단축형(K6)	· 김용섹(2011). 한국어판 정신건강 선별도구(K10 . K6)의 타당화 연구: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7 2011. 4. pp. 65-88. · www.hcp.med.harvard.edu/ncs/k6_scales.php	성인 (주로 노인)	○	○
우울	역학연구를 위한 우울척도(CES-D)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1), 59-76.	성인 (청소년이상)		○
	역학연구를 위한 우울척도-단축형 (CESD-10-D)	· 신서연(2011). 한국어판 단축형 CES-D들의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맹제,김계희(1993).주요우울증환자예비평가에서CES-D의진단적타당성연구. 신경정신의학32,381-399. · FrankJ.Kohout,etal.(1993). TwoshorterformoftheCES-DDepressionSymptomIndex.J.AgingandHealth5(2). 179-193.	성인 (청소년이상)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우울	※ 우울증 건강설문 -9(PHQ-9)	· www.phqscreeners.com ·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 한글판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의학회지 6, 119-24. (2차 저작권자)	성인		(○)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EPDS)	· Jihyeon Kim, Anne Buist(2005). Postnatal depression: a Korean perspective. Australasian Psychiatry, 13, 68-71.	임산부 및 산후 2년 이내 산모	○	○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 -배우자용(EPDS-P)	· T.E.Moran and M.W.O'Hara(2006). A partner-rating scale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_Partner (EPDS-P). Arch Womens Ment Health. 9: 173-180. ·JihyeonKim,AnneBuist(2005).Postnataldepression:aKoreanperspectiveAustralasianPsychiatry,13,68-71.	임산부 및 산후2년 이내 산모의 배우자	○	○
	노인 우울 척도(GDS)	· www.stanford.edu/~yesavage/GDS : Korean version-long form · Pang,K.(1995).KoreantranslationofGeriatricDepressionScale. ClinicalGerontologist,16,74-76.	노인		○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DS-SF)	. www.stanford.edu/~yesavage/GDS : Korean version-short form .Y.Jang,B.J.Small&W.E.Haley(2001).Cross-culturalcomparabilityoftheGeriatricDepressionScale:comparisonbetweenolderKoreansandolderAmericans.Aging&MentalHealth5(1),31-37.	노인		○
불안과 걱정	한국판 펜스테이트 걱정질문지- 아동용(PSWQ-CK)	· Sung-Goo Kang, Jin-Hee Shin, and Sang-Wook Song(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n Primary School Children. J Korean Med Sci;25, 1210-1216.	8~12세 (6~18세)	○	○
	※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7(GAD-7)	· Spitzer RL, Kroenke K, Williams JB, et al.(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 Intern Med 166, 1092-7 www.phqscreeners.com	청소년이상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자살	자살행동척도 (SBQ-R)	· Osman A, Bagge CL, Gutierrez PM, et al. (2001).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BQ-R): Validation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ssess 8, 443-54.	청소년이상	○	○
자존감	로젠버그 자아존중감척도 (RSES)	· Rosenberg, Morris(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o」Rev.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청소년이상	○	○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척도(PSS)	·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정인과, 한창수(2012).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127-134.	청소년이상		○
공격성	한국판 Buss-Perry 공격성질문지 (BPAQ:구AQ)	· 서수균, 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487-501.	청소년이상		○
충동성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KBIS-11)	·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69-782.	청소년이상		○
중독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도구(AUDIT-K)	· 조근호, 채숙희, 박애란, 이해국, 신임희, 민성호(2009). 위험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한국어판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K)의 최적 절단값.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3(1), 34-40	성인	○	○
	한일알코올 병식척도(HAIS)	· Kim JS et al. HAIS (Hanil Alcohol Insight Scale): Validation of an insight-evaluation instrument for practical use in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8; 59(1): 52-5. ·김종성(2003).알코올환자의병식에대한임상적접근.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추계학술대회.	성인	○	
	한국형 알콜중독 선별검사(NAST)	·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한국형 알콜중독 선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III). 신경정신의학, 1991. 30(3), 569-581.	성인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중독	한국형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KAAPI)	· 김광기, 제갈정, 송선미(2005).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개발 연구.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	
	한국형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단축형 (b-KAAPI)	· 김광기, 제갈정, 송선미(2005).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개발 연구.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	
	Cut down, Annoyed,Guilty, Eyeopener(CAGE)	· Ewing JA(1984). Detecting alcoholism: The CAGE questionnaire. 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2, 1905-1907. · 남종환,강민희,김철웅,이정섭,배재남(2004). 알코올사용장애의 선별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에서 CAGE의유용성	청소년이상	○	○
	<신규> 변화준비도질문지 (RCQ)	· 유채영.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변화전략 수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Nick Heather and Stephen Rollnick.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User's Manual(revised version). 1993.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Technical Report No.19.	성인 (음주문제로 방문하지 않았으나 과음주가 의심되는 사람)	○	○
	<신규> 변화준비도질문지 -치료장면용(RCQ-TV)	· 이태경, 황재연, 김설연, 강웅구. 한국판 치료용 변화준비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1, 50, 139-147. · Nick Heather and Johannes Hönekopp. A revised edition of the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Treatment Version). Addiction Research & Theory, 16(5). 421-433. · http://nrl.northumbria.ac.uk/149/	문제음주로 치료센터를 방문한 사람	○	○
	한국어판 니코틴 의존도 설문 도구(FTND)	안희경, 이화진, 정도식, 이선영, 김성원, 강재헌(2002). 한국어판 니코틴 의존도 설문도구(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 a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3(8), 999-1008.	성인		○

부 록
NON-프로그램 운영자를 위한 참고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중독	니코틴 의존도 설문도구 -단축형(HSI)	· 안희경, 이화진, 정도식, 이선영, 김성원, 강재헌(2002). 한국어판 니코틴 의존도 설문도구(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 a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3(8), 999-1008.	성인		○
	※ 스마트폰중독 측정척도-성인용 (S-scale-성인용)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성인		
	※ 스마트폰중독 측정척도-아동청소년용 (S-scale-아동청소년용)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약 10~19세까지 가능		
	※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 연구.	성인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 연구.	약 10~19세까지 가능		
	인터넷게임중독 선별도구(IGUESS)	· 조선진, 이해국, 임현우, 조근호, 최상욱, 오홍석. 중독 선별검사 도구 및 사용지침 개발. 2013, 가톨릭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초등학생이상	○	
	한국형 도박행동 L척도(KGBS-L)	· 이순묵, 김아영, 권선중, 김종남, 차정은, 김인혜. 전국민 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성인	○	
	한국형 도박행동 H척도 (KGBS-H)	· 이순묵, 김아영, 권선중, 김종남, 차정은, 김인혜. 전국민 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성인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중독	한국어판 병적도박 중상평가척도 (KG-SAS)	· Suck Won Kim, Jon E. Grant, Marc N. Potenza, Carlos Blanco and Eric Hollander. The Gambling Symptom Assessment Scale(G-SAS):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Psychiatry Res. 2009; 166(1): 76-84. ·KimSW,GrantJE,AdsonDE,ShinYC.Double-blindnaltrexoneandplacebocomparision studyinthetreatmentofpathologicalgambling.BiologicalPsychiatry.2001b;49:914-921. · 김현정,김진훈,신영철,신호철,JonE.Grant,이태경. 한국어판 병적도박 중상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JKoreanNeuropsychiatrAssoc.2005;44(6):682-689.	청소년이상	○	○
	병적도박문제 선별을 위한 한국형NODS (K-NODS)	· www.norc.org · 이순묵,김아영,권선중,김종남,차정은,김인혜. 전국민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 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1.	청소년이상		○
	병적도박문제 선 별을 위한 한국형NODS -개정판(K-NODS-R)	. www.ncrg.org ·MariannaToce-Gerstein,DeanR.Gersein,andRachelA.Volberg.TheNODS-CLiP:ARapi dScreenforAdultPathologicalandProblemGambling.JGamblStud.2009Dec;25(4):541 -555. . 이순묵,김아영,권선중,김종남,차정은,김인혜. 전국민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 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1.	청소년이상		○
	병적도박문제 선 별을 위한 한국형NODS -자가보고 (K-NODS-SA)	. www.norc.org · 이순묵,김아영,권선중,김종남,차정은,김인혜. 전국민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 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1.	청소년이상		○
	병적도박문제 선 별을 위한 한국형NODS -CLiP(K-NODS-CLiP)	. www.ncrg.org .MariannaToce-Gerstein,DeanR.Gersein,andRachelA.Volberg.TheNODS-CLiP:ARapi dScreenforAdultPathologicalandProblemGambling.JGamblStud.2009Dec;25(4):541 -555. . 이순묵,김아영,권선중,김종남,차정은,김인혜. 전국민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 점수 타당화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1.	청소년이상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중독	※ 약물 선별 설문조사(DAST)	· www.sbirtoregon.org에서 한국어로 다운로드받아 사용가능	청소년이상		(○)
수면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척도(ISI-K)	· Yong Won Cho, Mei Ling Song, Charles M. Morin(2014).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Insomnia Severity Index. J Clin Neurol 10(3), 210-215	성인	○	○
적응	한국어판 강점.난점설문지 (SDQ-청소년용)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Robert Goodman(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2(1), 141-147.	4~17세		○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 (SDQ-보호자,교사용)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Robert Goodman(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2(1), 141-147.	4~17세		○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HOQOL-BREF)	· 민성길, 김광일, 박일호.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하나의학사. 2002.	청소년이상	○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인용 ADHD 자기보고척도 증상체크리스트 (ASRS-v1.1)	· www.hcp.med.havard.edu/ncs/ftpdir/adhd/adhd에서 다운로드 가능 ·Kessler,R.C.,Adler,L.,Ames,M.,Demler,O.,Faraone,S.,Hiripi,E.,Howes,M.J.,Jin,R.,Secnik,K.,Spencer,T.,Ustun,T.B.,Walter,E.E.TheWorldHealthOrganizationAdultADHDSelf-ReportScale(ASRS):PsychologicalMedicine,200535(2),245-256. · Ji-HaeKim, Eun-HoLee, and Yoo-SookJoung. The WHO Adult ADHD Self-Report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Psychiatry Investig. 2013 Mar; 10(1):41-46. · SimyangHeo,Ji-HaeKim,Yoo-SookJoung,Won-IkLee,Joo-JinKim,SeokHanSohn, andSoonAhChang.ClinicalUtilityoftheKoreanVersionoftheWHOAdult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Self-ReportScaleScreener.PsychiatryInvestig.2018;15(3):325-329.	성인	○	○

구분	척도	척도출처	대상	온라인 사용시 저작권 승인 필요 여부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인용 ADHD 자기보고척도 - 선별(ASRS-v1.1-Screener)	· www.hcp.med.havard.edu/ncs/ftpdir/adhd/adhd에서 다운로드 가능 ·Kessler,R.C.,Adler,L.,Ames,M.,Demler,O.,Faraone,S.,Hiripi,E.,Howes,M.J.,Jin,R.,Secnik,K.,Spencer,T.,Ustun,T.B.,Walter,E.E.TheWorldHealthOrganizationAdultADHDSelf-ReportScale(ASRS).PsychologicalMedicine,200535(2),245-256. ·Ji-HaeKim,Eun-HoLee,andYoo-SookJoung.TheWHOAdultADHDSelf-ReportScale:ReliabilityandValidityoftheKoreanVersion.PsychiatryInvestig.2013Mar;10(1):41-46. · SimyangHeo,Ji-HaeKim,Yoo-SookJoung,Won-IkLee,Joo-JinKim,SeokHanSohn,andSoonAhChang.ClinicalUtilityoftheKoreanVersionoftheWHOAdult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Self-ReportScaleScreener.PsychiatryInvestig.2018;15(3):325-329.	성인	○	○
정신증	한글판 조기정신병 증상검진표(ESI-K)	권준수 외(2006). 정신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단검사의 도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청소년이상	○	○
	<신규> 정신증고위험군 선별도구(KPQ-16)	· Sung-Wan Kim, Young-Chul Chung, Young-Shin Kang, Jae-Kyeong Kim, Ji-Eun Jang, Min Jhon, Ju-Yeon Lee, Jae-Min Kim, Il-Seon Shin, and Jin-Sang Yoon (201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16-Item Prodromal Questionnaire in a Non-Help-Seeking College Population. Psychiatry Investig. 2018;15(2):111-117	성인(청년)	○	○
	<신규> 교정된 정신증 고위험군선별도구 (mKPQ-16)	· Sung-Wan Kim, Young-Chul Chung, Young-Shin Kang, Jae-Kyeong Kim, Ji-Eun Jang, Min Jhon, Ju-Yeon Lee, Jae-Min Kim, Il-Seon Shin, and Jin-Sang Yoon (201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16-Item Prodromal Questionnaire in a Non-Help-Seeking College Population. Psychiatry Investig. 2018;15(2):111-117	성인(청년)	○	○
	<신규> 청년정신건강 선별도구 (CAPE-15)	· Sung-Wan Kim, Jae-Kyeong Kim, Ji Hun Han, Min Jhon, Ju-Yeon Lee, Jae-Min Kim, Hyun Ju Na, Young-Shin Kang, Young-Chul Chung, and Jin-Sang Yoon (202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15-Item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Psychiatry Investig. 2020;17(4):306-311	성인(청년)	○	○
위기 및 응급	*<신규>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 (CRI)*	· 조근호, 윤해주, 장미, 손주영, 남윤영, 김민혁, 송후림, 김신경, 전영서, 황태연(2020). 정신과적 위기 개입을 위한 한국형 위기 분류 평정 척도 개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전 연령	○	

부 록
NCN-정신건강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가 추진 배경

-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참고 1)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 참고3. e나라도움 구성도, 참고4.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조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1)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2)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1) 지자체보조사업

- 지자체보조사업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 지자체보조사업중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은 각각의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비목*이 아닌 유사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2)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 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 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체계로 변경됨(참고 5)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1)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정,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2)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3)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중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참고2의 안내문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
    ※ 매뉴얼 게시 : www.gukgobojo.kr(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단)/자료마당/교육자료/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사용자교육교재
    - 지자체 담당자 : 사용자 매뉴얼 지자체 및 교육청용(다운로드)
    - 민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 사업수행담당자용(다운로드)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방안 등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체 교육 실시도 가능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전문강사가 전담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참고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후 비교

항 목	현 행	개선
■ 보조금 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 보조금 정보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신고인프라	• 신고센터 분산 – 복지분야: 국민권익위 – 비복지분야: 각 부처 • 포상금 한도: 1억원	• 국민권익위로 단일화 • 포상금 한도 증액: 2억원 • 기관 포상제 도입
■ 보조사업 운영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 부처별, 사업별로 기준 상이 • 선정 과정에 제3자의 부당행위 개입	• 선정기준, 절차의 명확화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신설〉	•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시에 보조사업자의 이력, 사업자 정보 등 공개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신설〉	•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 벌칙·책임	〈신설〉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제 • 징벌적 과징금제(수급액의 5배) • 보조사업 참여 영구 금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신설〉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클린카드 개선 * 유사 유흥업소 등 제한 대상 확대
■ 정산 절차	〈신설〉	• 정산 표준화 * 표준 정산지침 마련 •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 정산 의무화 • 미정산 보조사업자 패널티 부과
■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등 사후관리	〈신설〉	• 중요재산 부기등기제 도입 • 중요재산 처분 승인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에 대한 처벌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발 행 2021년 3월
인 쇄 2021년 3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TEL : 044-202-3861~3869 FAX : 044-202-3940
http://www.mohw.go.kr

편집·인쇄 : (주)이문기업 044)866-1610(비매품)